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장애인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Contents

제1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과 근거

13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원칙

- 13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필요성
- 14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
- 16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근거

20 II. 서비스 계획수립 절차

- 21 1. 서비스 요구
- 23 2. 서비스 환경
- 24 3. 서비스 대상
- 24 4. 서비스 운영방향 수립

27 III. 운영계획

- 28 1. 운영규정 제정
- 29 2. 장서관리
- 32 3. 이용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 34 4. 예산계획

35 IV. 홍보계획

- 36 1. 장애인서비스 홍보의 목적
- 36 2. 홍보 대상
- 37 3. 홍보문 작성
- 38 4. 홍보매체 활용
- 41 5. 문화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 42 6. 홈페이지 홍보
- 43 7. 타 기관과의 연계홍보

제2장 이용자 이해와 응대

47 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이해

- 47 1. 장애인 이해
- 49 2. 시각장애인 이해
- 52 3. 청각장애인 이해
- 55 4.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이해
- 59 5. 발달장애인 이해

62 I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 62 1. 장애인 응대
- 62 2. 시각장애인 응대
- 64 3. 청각장애인 응대
- 67 4.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응대
- 68 5. 발달장애인 응대

제3장 도서관 공간과 시설

74 I. 공간과 시설의 구성

- 74 1. 공간구성 및 접근성 일반원칙
- 75 2. 공간구성 및 시설 법적 기준
- 77 3. 공간구성 및 시설 권장 기준
- 80 4. 공간구성 요소 정의
- 82 5. 공간구성 실제



86 II. 편의시설 기준

- 87 1. 매개시설
- 90 2. 내부시설
- 94 3. 위생시설
- 98 4. 안내시설
- 100 5. 기타시설

제4장 대체자료

105 I. 대체자료 개념

- 105 1. 분류
- 106 2. 연혁

107 II.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 108 1. 점자도서
- 109 2. 목·점자통합도서
- 111 3. 아날로그 녹음도서
- 113 4. 큰글자도서
- 114 5. 촉각도서
- 115 6. 화면해설영상자료
- 117 7. 전자점자자료

- 118 8. 디지털녹음도서

- 120 9. 데이지(DAISY) 자료

122 III.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 122 1. 읽기쉬운도서
- 124 2. 한국수어영상도서
- 125 3.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

126 IV.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체자료

- 126 1. 아날로그 녹음도서
- 126 2. 읽기쉬운도서
- 126 3. 큰글자도서

127 V.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 127 1. 읽기쉬운도서
- 127 2. 촉각도서
- 127 3. 큰글자도서
- 128 4. 그림 및 만화도서

129 VI. 대체자료 수서와 활용

- 129 1. 구입
- 131 2. 대체자료 보급기관
- 132 3. 대출 및 열람

제5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137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개요

- 137 1. 정보서비스
- 140 2. 독서 · 문화프로그램

144 II.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44 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145 2. 시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47 3. 시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47 4. 서비스 사례

148 III. 청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48 1.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149 2. 청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1 3. 청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2 4. 서비스 사례

153 IV. 지체 · 뇌병변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3 1. 지체 · 뇌병변장애인 정보서비스
- 154 2. 지체 · 뇌병변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4 3. 지체 · 뇌병변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5 4. 서비스 사례

156 V.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6 1. 발달장애인 정보서비스
- 156 2. 발달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7 3.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8 4. 서비스 사례

159 VI.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9 1.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중요성
- 159 2. 제공 시 고려사항
- 160 3. 서비스 사례

162 VI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

- 162 1. 서비스 이용 평가 방안
- 163 2.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170 3. 서비스 평가 결과보고

제6장 독서보조기기

175 I. 독서보조기기 개념

178 II.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 178 1.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 178 2.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1 III. 청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 181 1. 청각 · 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 181 2. 청각 · 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4	IV. 지체 · 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84	1. 지체 · 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184	2. 지체 · 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8	V. 독서보조기기 추천
188	1. 지역도서관
190	2. 지역대표도서관
191	3.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

191	VI. 독서보조기기 지원 방법
191	1.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193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95	3. 기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7장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201	I. 도서관에서의 웹 접근성
201	1. 웹 접근성 개념
203	2. 웹 접근성 원칙
207	3. 웹 접근성 적용
211	4. 스마트폰 앱(app) 접근성

214	II. 유니버설 디자인
214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및 배경
215	2.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제8장 인적자원

223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력 운용
224	1. 인력 유형
225	2.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230	3. 인력 교육

236	II. 자원봉사자 활용
236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징
239	2.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계획
241	3. 자원봉사자 모집
242	4. 자원봉사자 선발 및 배치
243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245	6. 자원봉사자 지도 및 감독
245	7. 자원봉사자 평가 및 관리
246	8. 자원봉사자 인정 및 보상
249	9. 도서관 자원봉사 서비스 사례

제9장 대외협력

253 I. 도서관과의 협력

- 253 1. 국립장애인도서관
 - 256 2. 장애인도서관
 - 258 3. 공공도서관
 - 260 4. 도서관 전문단체
-

261 II.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 261 1. 장애인단체
 - 265 2. 장애인복지관
 - 267 3. 특수학교
-

269 III. 협력 프로그램 유형

- 269 1. 독서 · 문화프로그램 지원
- 271 2. 자료제작 및 통합검색 지원
- 273 3. 서비스 지원
- 275 4. 도서관-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사례

부록

- 279 1. 전국 장애인도서관 목록
- 282 2. 전국 장애인복지관 목록
- 295 3. 장애인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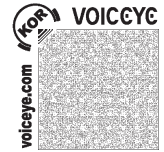


표 Contents

24	[표 1-1]	장애유형별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	153	[표 5-8]	지체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례 (오선경 2015 발췌)
31	[표 1-2]	대체자료의 종류	154	[표 5-9]	지체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례(오선경 2015 발췌)
32	[표 1-3]	장애인도서관 장서구성 기준(한국도서관기준)	155	[표 5-10]	지체 · 뇌병변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33	[표 1-4]	이용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156	[표 5-11]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38	[표 1-5]	장애관련 TV방송과 프로그램	158	[표 5-12]	발달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39	[표 1-6]	장애관련 라디오방송과 프로그램	160	[표 5-13]	장애인 · 비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40	[표 1-7]	온/오프라인 발행 장애인신문	161	[표 5-14]	해외 사례
48	[표 2-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3-56호)	163	[표 5-15]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지표 총괄
50	[표 2-2]	시각장애 등급	176	[표 6-1]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지침에 따른 독서보조기기 분류
53	[표 2-3]	청각장애 등급	177	[표 6-2]	장애 유형별 독서보조기기와 유관 자원 사업 품목의 분류
60	[표 2-4]	발달장애 등급	178	[표 6-3]	전맹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77	[표 3-1]	장애인도서관 면적배분 기준	180	[표 6-4]	저시력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79	[표 3-2]	동선 체계별 유형	181	[표 6-5]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80	[표 3-3]	장애인도서관 공간구성 요소	182	[표 6-6]	난청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81	[표 3-4]	장애인코너 공간구성 요소	183	[표 6-7]	언어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86	[표 3-5]	도서관 편의시설 설치 기준	185	[표 6-8]	조작, 입력 기능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130	[표 4-1]	대체자료의 구입 절차	187	[표 6-9]	휠체어의 접근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145	[표 5-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례	188	[표 6-10]	지역도서관 필수보조기기 목록
146	[표 5-2]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례	190	[표 6-11]	지역대표도서관 공동활용보조기기 목록
147	[표 5-3]	시각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149	[표 5-4]	국립중앙도서관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사례			
150	[표 5-5]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3대 요소와 각급 도서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2013)			
151	[표 5-6]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영역별 개발 방안			
152	[표 5-7]	청각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191	[표 6-12]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목록	249	[표 8-1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자원봉사 사례
192	[표 6-13]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기관별 수행역할 정의	255	[표 9-1]	책나래서비스 소개
195	[표 6-14]	국내 보조기기 지원 사업	258	[표 9-2]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출 협력사례
204	[표 7-1]	인식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259	[표 9-3]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 협력사례
205	[표 7-2]	운용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275	[표 9-4]	도서관-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사례
206	[표 7-3]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207	[표 7-4]	견고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210	[표 7-5]	웹 접근성 평가의 종류와 구성			
211	[표 7-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212	[표 7-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권고사항			
215	[표 7-8]	유니버설 디자인의 4원리			
218	[표 7-9]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3원칙 (문화체육관광부 2014)			
223	[표 8-1]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상 사서인력 배치기준			
224	[표 8-2]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2015)			
231	[표 8-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프로그램 회차별 내용			
233	[표 8-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기준 예시			
239	[표 8-5]	장애유형과 자원봉사 활동분야 (국립중앙도서관 2009)			
242	[표 8-6]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방법 예시			
244	[표 8-7]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지침			
247	[표 8-8]	자원봉사자 인정 · 보상의 요소			
248	[표 8-9]	자원봉사자 인정 · 보상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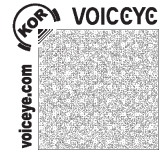


그림 Contents

25	[그림 1-1] 도서관 규모별 정책 운영방향	125	[그림 4-18] 한국수어 · 자막영상자료
65	[그림 2-1] 한국수어 손가락 번호	128	[그림 4-19] 그림책
66	[그림 2-2] 자음지화	143	[그림 5-1] 문화프로그램과 개발모델 (문화체육관광부 2008)
66	[그림 2-3] 모음지화	144	[그림 5-2] 문화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문화체육관광부 2008)
82	[그림 3-1]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공간구성도	193	[그림 6-1]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추진절차
83	[그림 3-2]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194	[그림 6-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절차
83	[그림 3-3]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210	[그림 7-1] 웹 접근성 품질인증
84	[그림 3-4]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213	[그림 7-2] 해밀도서관 -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1
85	[그림 3-5] 해롤드워싱턴도서관센터	213	[그림 7-3] 해밀도서관 -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2
85	[그림 3-6] Sweden - The Apple Shelf	213	[그림 7-4] 해밀도서관 -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3
106	[그림 4-1] 대체자료의 분류	213	[그림 7-5] 해밀도서관 -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4
108	[그림 4-2] 점자도서 읽기	274	[그림 9-1]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 구조도
110	[그림 4-3] 목 · 점자 혼용도서		
110	[그림 4-4] 점자라벨도서		
111	[그림 4-5] 아날로그 녹음도서		
113	[그림 4-6] 큰글자도서와 일반도서의 비교		
114	[그림 4-7] 유아용 촉각도서		
116	[그림 4-8] 화면해설영상도서		
117	[그림 4-9] 전자점자자료		
118	[그림 4-10] 점자정보단말기		
118	[그림 4-11] 점자리더기		
119	[그림 4-12] 디지털 녹음도서		
121	[그림 4-13] 데이지(DAISY) 자료의 멀티 저장 가능성		
122	[그림 4-14] 책마루		
122	[그림 4-15] 빅터		
123	[그림 4-16] 읽기쉬운도서		
124	[그림 4-17] 한국수어영상도서		

13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원칙

- 13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필요성
- 14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
- 16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근거

20

II. 서비스 계획수립 절차

- 21 1. 서비스 요구
- 23 2. 서비스 환경
- 24 3. 서비스 대상
- 24 4. 서비스 운영방향 수립

27

III. 운영계획

- 28 1. 운영규정 제정
- 29 2. 장서관리
- 32 3. 이용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 34 4. 예산계획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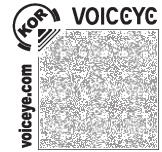
IV. 홍보계획

- 36 1. 장애인서비스 홍보의 목적
- 36 2. 홍보 대상
- 37 3. 홍보문 작성
- 38 4. 홍보매체 활용
- 41 5. 문화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 42 6. 홈페이지 홍보
- 43 7. 타 기관과의 연계홍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1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과 근거



제1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과 근거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원칙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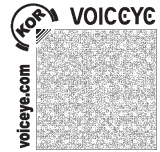
- 2012년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제43조에 도서관의 책무로서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45조에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의 역할을 담당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명시한 이후 비로소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이 장서, 시설,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복지관에 설치된 자료실 및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사립 점자도서관 등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으며,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용자를 직접적인 이용자 계층으로 고려하는 도서관이나 관련 연구 또한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배경재 2016)
- 그러나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출범한 이후 이제는 점차 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동안의 도서관법 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

으로 도서관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 또한 상당부분 확산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계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재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 또한 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반영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설계” (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위키피디아 2016)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도서관 서비스를 특정 이용자 층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 시 예측되는 모든 장애요인(시설, 장서, 서비스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의 영역에서 공동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다.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지체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도서관 이용 그 자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층을 일컫는 유사한 용어로 독서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독서장애인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인지장애, 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인쇄물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물리적 장애

-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이나, 도서관에 올 수 있어도 지체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거나, 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없는 등 물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 물리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입구나 관내의 턱, 서가의 높이나 폭 등과 같은 시설 설비 등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료적 장애

- 도서관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를 의미한다.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있어 눈으로 책을 볼 수 없거나,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거나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문자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책을 읽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자료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의 점자화, 음성화, 문자 확대,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 books)의 확보, 수어·자막영상자료, 화면해설 영상자료, 만지는 그림책(촉각도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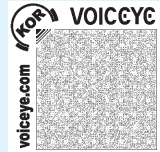
- 대출이나 참고봉사,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서관 직원과의 소통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혹은 통신 중계 서비스, 화상전화기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보조 기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사서가 기본적인 점자, 한국수어와 같은 장애인 의사소통능력이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도서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 IFLA) 산하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분과를 살펴보면, 모두 2개의 분과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첫 번째는 Libraries Serving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Section으로서 이전 명칭은 Libraries for the Blind Section이었다. 이 분과는 “독서장애인(Print disabled people)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 지식, 정보에 비용과 품질 면에서 동등한 접근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UN 헌장의 선언에 따라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접근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지하기 위한 분과로 명시되어 있다.
- 두 번째 분과는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Section으로서 1931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 명칭은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Section이다. 기존의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공동체 내의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관련한 분과로서, 청각장애인, 지체장애, 발달장애, 자택은둔, 환자, 수감자, 요양원에서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해당 분과들의 이력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분과가 독서장애인을 위한 분과로 발전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이외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분과가 특수요구를 지닌 이용자 계층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되어 변화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은 예전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에 의해서만 정의되던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개념이 독서장애인 및 특수요구 이용자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협의의 개념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장애인 전담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로 제한하여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독서장애인을 포함한 특수요구를 지닌 도서관이용자에게 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로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근거

(1) 법적 근거

-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즉, 법 체계에서 제시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숙지하고, 도서관 내부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도서관법, 저작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4가지가 있다.

①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으로는 ‘공공도서관’ 범주에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을 포함시킨 것과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도서관법」 전면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서관이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 도서관법 제43조에서는 도서관의 책무를 통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도서관법 제44조를 통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②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

- 도서관법 제45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에서 관련 직제에 대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률을 근거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그간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담당해오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이제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도서관법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③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배포

-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장애인이 열람 가능한 형태로 재생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33조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도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④ 디지털 파일 납본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해서 대체자료를 제작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가의 제작비용이다. 예를 들어 인쇄본으로 출간된 신간소설을 음성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육성으로 녹음을 하거나 컴퓨터로 텍스트를 인식하여 기계음성을 생성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 출판물의 디지털파일이 제공된다면 제작비용뿐 만 아니라 제작 속도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법에서는 제20조 제2항에 필요시 도서관자료 발행 및 제작자에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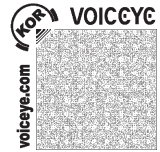
- 2016년 8월부터 온라인자료의 납본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도서관법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9년 개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선별·수집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자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빠짐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납본의무를 확대 적용하게 했다.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비정부기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채택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기관들이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작하여 자국 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체약국 간에는 그러한 포맷 사본의 수출입을 허용하도록 체약국들로 하여금 자국 저작권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약이다.

(2) 이념적 근거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이념적 기초가 된 주요 협약과 선언을 정리하면 UN의 장애인권리협약, UN ESCAP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을 꼽을 수 있다. 이 협약들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이념적 근거를 제공한다.

① UN 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며,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21조와 제30조이다.

☞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

☞ (제30조)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② UN ESCAP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 UN 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켰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다(UN ESCAP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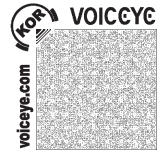
- 또한 인천전략의 전신인 1993년 UN ESCAP의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Agenda for action)에서는 플로피 디스켓, 대활자, 점자, 오디오카세트, 그리고 비디오카세트 포맷으로 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도서관, 정보센터와 장애인관련 단체 간의 협력을 명시한 바 있다.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항이 목표 3에 명시되어 있다.

③ 국제도서관연맹(IFLA)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에서는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1999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II. 서비스 계획수립 절차

-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방향은 소속기관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지역에서의 협력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려 노력해야 한다.
-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 및 소속지역의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상급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 자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요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단계는 지역사회에 거주중이며, 공공도서관 이용요구가 있는 장애인 이용자 계층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요구를 확인하는 일이다.

- 지역에 거주중인 봉사 대상 장애인의 주요 장애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영상물 시청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거나 의사소통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 지역 거주 장애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지역통계 - 주제별 - 장애인현황 메뉴에서 장애인현황 확인
-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주제별 - 복지 - 장애인 메뉴에서 장애인현황 확인

- 대표적인 장애인의 요구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서베이 조사방법은 표본을 대상으로 계획된 주제와 관련된 질문문항 혹은 면접절차를 사용하여 실증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통계적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 중증장애나 지적장애의 경우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인터넷조사는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시간적, 공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응답자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 시에는 질문 내용을 구역화하여 장애인들이 분할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화 인터뷰는 전화 서베이라고도 불리며, 자료 수집에 있어서 준대면적(semi-personal)방법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화 인터뷰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경제적 효율성 또한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화 인터뷰는 대인적 인터뷰 방법에 비해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김영종 2007).
- 대인 인터뷰(personal interview)는 인터뷰 요원이 연구가설에 적절한 대답들을 획득하기 위해, 그에 적절하도록 고안된 질문들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종의 대면적인 상호작용 역할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인 인터뷰에서는 질문, 말 표현, 순서 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인터뷰의 구조화 정도가 결정된다(김영종 2007).
- 장애가 심한 이용자들은 관찰로 요구를 파악하거나, 프로그램 관계자들(도서관 사서, 사회복지사, 봉사자 등)의 간담회, 평가회 등으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요구조사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자 기입방법, 점자 기입방법, 녹음 설문 내용 청취 후 기입방법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 필요시 인편, 우편 및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다.

(2) 청각장애인 요구조사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조사에서 다양한 자료에 대한 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선정을 할 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희망하는 비치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복지관에 자료 선정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비치하다보면 일부 청각장애인만의 시각과 기준으로 1차 선정된 도서를 청인중심의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강창옥 외 2012).
- 성인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서비스 이용 시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한국수어통역사^(34.1%), 문자제공 등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23.1%), 정보접근을 위한 서비스^(15.4%)라고 응답하였다. 학생 청각장애인 역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24.6%), 정보접근을 위한 서비스^(20.2%), 문자제공^(18.1%) 등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를 상위로 응답하였다^(강창옥 외 2012).
-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의사소통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요구조사 시에도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음성 또는 문자 정보를 한국수어로 제공, 질문안을 문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차용한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거점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대상 청각장애인의 문식성 수준,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 컴퓨터 사용 수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그 요구가 달라짐은 물론이고, 지원 서비스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형태도 다르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3) 지체·뇌병변장애인 요구조사

- 지체·뇌병변장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는 서면 활용,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활용, 의사전달자 활용 등을 통하여 이용자 요구조사를 진행한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중복 장애인의 경우 부모님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4) 발달장애인 요구조사

-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증의 경우는 직접 요구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법적 대리인이 대리응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언어활동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교사, 봉사자 등의 요구까지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환경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요구를 확인한 뒤에는 도서관의 서비스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서비스 환경은 공간과 예산, 인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장애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요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해서 청각에 의존적이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국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구분된 공간에서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을 설치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비스 대상

- 장애인 이용요구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핵심서비스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 장애 유형에 따라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와 같이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 또한 달라지므로, 핵심서비스 대상 이용계층에게서 예상되는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를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및 이용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제공 이전에 도서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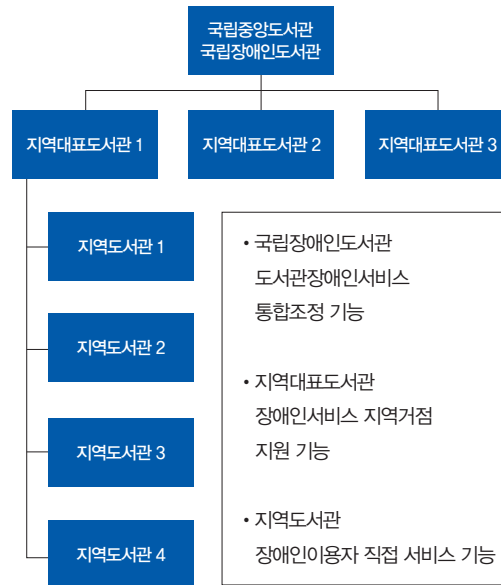
[표 1-1] 장애유형별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도서관 이용 상의 장애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지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	×	○
시각장애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청각장애	×	○	○
발달장애	발달장애	×	○	○

4 서비스 운영방향 수립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실행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서비스 운영방향을 먼저 정립하여야 한다.
- 서비스 운영방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적 위계체계 내에서 해당 도서관의 기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지역 단위 도서관 네트워크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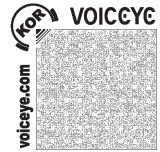
[그림 1-1] 도서관 규모별 정책 운영방향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직원 교육, 중앙단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정책업무를 담당한다.
- 종합적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각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이 그 규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서비스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맞게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특히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의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각 지역도서관의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 비치여부와 수량, 지역별 공동활용자원의 확보 수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각급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책적 계획에 따라 수행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실적을 지역대표 도서관을 통해 취합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대표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다.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수행 업무는 시·도 단위의 총괄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제23조 제2호와 제6호에 의거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필요한 업무 수행, 제5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5조)하고 있다.
- 따라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의 협조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우선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 권역 내 지역도서관^(공공도서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체결을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을 총괄한다. 그리고 지역도서관과 지역 내 장애인 도서관 및 장애인 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 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원 하에 각 지역 내 협력 가능한 외부 기관들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자원의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지역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 매뉴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



(3) 지역도서관

- 지역도서관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역 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에 비해 운영 규모가 작고 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공간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
- 한편, 지역도서관은 도서관 조직의 위계체계나 설치 지역 등을 감안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에 비해 장애인 이용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가장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상당수의 장애인은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 방문에 제약을 받아 이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관련 업무는 기존 인력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III. 운영계획

-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계획은 지역 내 다른 도서관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고르게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계획의 실체는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인 장서관리, 이용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예산계획, 인력 및 업무배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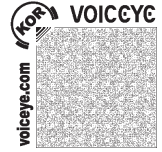
1 운영규정 제정

(1) 일반사항

- 일상화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도서관 내부 운영규정 또는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규정은 도서관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 운영규정은 도서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작성하되,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 규정의 내용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반행정 관련 규정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사무의 전결사항: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업무 결정의 결재권자를 규정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인사사항: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담당자의 배치, 근무기간, 전문성 등에 대한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도모한다.
 - 시설물 운영 및 관리사항: 대여 가능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한 사항, 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 시설 및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 도서관업무 관련 규정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사항: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이용사항: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제반 이용에 관한 사항(이용시간, 휴관 일, 입관 및 퇴관, 시설 이용 및 이용료, 열람 및 대출, 자료실 내 행동에 대한 사항)



- 장서관리에 대한 사항: 대체자료의 수집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체자료 관리를 위한 규정(대체자료의 선정·수집·정리·점검, 대체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 이용자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목록, 운영 방법 제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홈페이지 등)
- 위원회 관련 규정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결과보고)

2 장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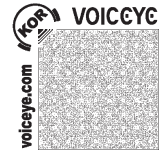
(1) 일반 원칙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정서함양과 지식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장서관리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주기로 개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장서개발정책에는 자료의 유형별 및 주제별 구성, 선택기준과 우선순위, 특수자료 형태의 결정, 복본수, 자료구입과 제작에 관한 예산배정 기준, 자료보존 및 폐기기준, 디지털화 및 웹정보자원 제공의 범위, 장서관리의 지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자료의 내용적 가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장서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당해 지역 내의 여러 도서관과 협력하여 이용자의 자료접근 편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료 특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대체자료의 제작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상호간의 지속적 교류와 적극적 협조를 통하여 대체자료의 중복 제작을 지양하여야 한다.

(2) 자료 구성 및 기준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아래 표에 제시된 다양한 대체자료 중에서 자관의 서비스 대상 이용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체자료를 구입, 제작, 기증, 교환, 라이선스 협약, 링크, 다운로드 방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1-2] 대체자료의 종류

구분	대체자료	설명
비전자 유형	점자도서	인쇄자료를 한국점자규정 및 점역출판매뉴얼에 따라 점역한 것으로서, 전맹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이 촉독할 수 있는 대체포맷을 말한다.
	목·점자 통합도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자(활자자료)와 점자를 한 지면 안에 표현한 도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대체자료이다.
	아날로그 녹음도서 (카세트 테이프)	일반적인 도서가 활자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한 도서로서 음성도서라고도 한다.
	큰글자도서	확대도서, 대활자도서, Large Print Book이라고도 하며 문자나 도표가 작아 그대로는 읽을 수 없거나 혹은 읽기 어려운 자료의 장애인 이용을 위해 이를 보통의 문자 크기보다 큰 문자로 제작한 도서를 말한다.
	촉각도서	그림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촉각적인 요소로 대체하여 새로이 기획하여 제작한 도서를 말한다.
	읽기 쉬운 도서	원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 도서를 말한다.
	화면해설영상자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출시된 영화 등에 내용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시각적 요소에 대한 해설을 삽입한 것이다.
	수어·자막영상자료	음성 중심의 영상물을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로 번안하거나 자막을 삽입하여 제작한 청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이다.
전자유형	전자점자자료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서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점역된 디지털 자료이다.
	디지털 녹음도서	디지털 파일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말하며, CD/DVD가 대표적이다.
	데이지자료(DAISY)	스웨덴 녹음점자도서관(Talking Books and Braille)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디지털 음성도서(DTB : Digital Talking Books)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도서를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 발전시킨 것이며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그 개발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장애인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은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 장서구성의 최소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장서 1,500권 이상, 녹음테이프 500점 이상이다.
- 장서구성의 권장기준은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기본 장서수와 연간 증가수를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도서관은 이와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자관의 사정에 맞게 장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은 장서구성에 대해 별도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역 거주 장애인 이용자의 규모 및 이용률을 고려하여 장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 문학자료는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1-3] 장애인도서관 장서구성 기준(한국도서관기준)

자료종류	기본 장서수	연간 증가수
특수한 형태의 단행본 자료	5,000종	500종 이상
특수한 형태의 연속간행물	40종	-
기타 자료	200점	100점 이상

3 이용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장애인에게 가까이 존재하는 정보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정보요구를 이해하고, 자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대출서비스, 정보서비스, 정보화교육,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유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표 1-4] 이용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

구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설명
참고정보서비스	대출반납서비스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직접방문서비스, 이동도서관 운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대출반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역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의 유형이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차량에 책을 싣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이동도서관은 기존의 대출반납 기능 외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책읽기프로그램, 이동영화관, 녹음기기 대여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 대체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기능 외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검색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이용자의 대출 및 상호대차 신청을 용이하게 한다.
	상호대차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체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대차를 실시한다.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긴급자료 절판자료, 고서 등을 장애인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독서지도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독서지도서비스는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건강한 정서 및 인격형성, 내면의 치유를 목적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도서관독회, 독서클럽, 독서캠프, 독서치료 등이 대표적이며, 책 읽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대면낭독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문화프로그램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공간적·신체적 제약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은 중요하다. 문화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전 연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프로그램의 예로는 교양강좌(생활스포츠, 영화상영, 북아트, 생태체험프로그램, 문화유적답사),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장애체험교육, 장애이해교육), 부모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새로운 배우고 학습을 통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대체자료, 독서보조기기 활용교육, 도서관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정보활용 및 도서관 활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제공한다.

4 예산계획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그 운영비의 전액을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한국도서관기준), 지속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 확보를 위한 후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크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및 자료제작비, 운영비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1) 인건비

- 인건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상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내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체 예산 중 60%의 배정비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건비에는 급여와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며, 지원인력에 대한 인력 운영비용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지만, 위탁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정확한 보수 지침이 따로 없으므로, 개관 이후 위탁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이 적절한 보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자료구입비 및 자료제작비

- 자료구입비 및 자료제작비의 산출은 각 도서관의 대체자료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계획하되 전체 예산 중 20~30%의 배정비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구입 및 자료제작 시 자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 이용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되, 자



료구입 및 자료제작 사전에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참고하여 가능한 복본의 구입 및 제작을 피하도록 한다.

- 대체자료는 관리 중 파·오손되는 자료에 대한 대체비용도 감안하여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3) 운영비

-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제 비용은 운영비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서 운영비에 포함시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프로그램(문화행사, 강좌 등) 운영비: 강사료, 행사에 따르는 홍보비, 자료 제작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
 - 홈페이지, 전산기기, 네트워크 등의 S/W 및 H/W 유지관리비: S/W 업그레이드, 정기적인 유지보수, 보안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비품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 운영위원회, 특정 사업추진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 독서보조기기 등의 유지보수비용
 -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비 등의 공공요금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 직원, 자원봉사인력 등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편성될 필요가 있다.

IV. 홍보계획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계획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의 대다수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등의 여타 문제로 인해서 실제 이용단계로 옮겨가기까지에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장애인서비스를 준비하는 도서관에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서비스 홍보계획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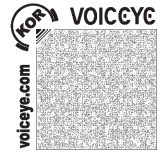
- 장애인서비스 홍보의 목적
- 홍보대상자 발굴
- 홍보문 작성
- 홍보매체 활용
- 홍보대상 이용자세분화
- 문화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 홈페이지 홍보
- 타기관과의 연계홍보
- 타기관과의 연계홍보

1 장애인서비스 홍보의 목적

- 많은 장애인이 도서관을 책을 대출하는 단순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홍보의 초기 목적을 도서관서비스 인식 개선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즉, 도서관 역할 및 기능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도서관을 책을 대출하는 기관을 넘어, 정보서비스를 하는 기관,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도록 도서관 서비스 인식 개선을 홍보의 목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홍보 대상

- 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홍보매체와 장애인관련 단체와 연계를 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중도 장애가 되는 경우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부터 재활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 또한 지역 내 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동아리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학사지원, 학교생활지원, 취업정보 지원을 체계화 할 수도 있다.
- 홍보용 행사로서 20대를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다.
- 30-40대를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한다.
- 50세 이상의 노년층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 노년생활, 경제문제, 여가활동, 종교생활, 장애극복기 등의 주제 분야가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등에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홍보, 장애노인을 위한 홍보,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홍보 등 이용자 세분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학교수업자료, 학술자료, 취업자료, 건강정보, 생활편의 및 복지정보, 장애극복정보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홍보문 작성

- 홍보용 문장과 도서관 홈페이지 및 관련 데이터는 이용자의 지적 수준에 맞도록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여야 한다.
- 특히, 홍보문을 작성할 경우 알기 쉽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홍보매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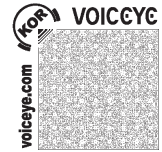
-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으로는 언론홍보, 각종 매체홍보, 행사홍보를 들 수 있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홍보방법으로는 행사나 이벤트보다는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언론(라디오, TV, 신문, 녹음신문 등), 소식지 및 팸플릿, 기타 이메일 및 일대일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다.

(1) 언론홍보: TV

-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이며, 설득력이 가장 좋다. 특히 TV는 거의 하루 중 일 방송하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문자방송, 케이블방송 등)이 많이 향상되었다.

[표 1-5] 장애인관련 TV방송과 프로그램

방송및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방송일	방송시간	비고
KBS2TV 사랑의 가족	- 장애인전문 프로그램 - 장애인이 당당히 자신의 삶을 일구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조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만들기 - www.kbs.co.kr/2tv/sisa/lovetfamily	매주 월~금	오후 5시~ (30분)	정규방송
MBC 함께 사는 세상	- 장애인이야기, 돕는사람들, 직업재활시설소개 - www.imbc.com/broad/tv/culture/livingtogether	매주 월	낮 12시 15분~ (43분)	정규방송
jnettv	- 장애이슈 및 장애전반 (문화, 건강, 생활, 정책, 교육 등)보도 - www.jnettv.co.kr	상시	상시	인터넷 방송
한국 농아방송	- 청각장애인중심의 이슈보도 - 어린이를 위한 손으로 읽어주는 동화프로그램 - http://www.deafkorea.com/ver/_deaf/dbna.html	상시	상시	인터넷 방송
희망방송	- 장애계 행사, 정보, 문화계 소식, 이슈 전달 - www.hmn.or.kr	상시	상시	인터넷 방송
HMBC 장애인 선교방송	- 장애인 선교행사 - 인식개선, 아동지원캠페인, - 청각장애수어프로그램 - http://www.장애인선교방송.kr/	상시	상시	인터넷 방송



WBC 복지TV WBC 뉴스	-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련된 새소식, 문제제기 등 - www.iwbc.co.kr	매주 수,토	35분	케이블 방송
KBS able	-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 방송 - 드라마, 장애계 소식, 일반, 연예, 생활 소식 매 1회 이상 업데이트 - www.able.kbs.co.kr	상시	상시	장애인을 위한방송 서비스 사이트

(2) 언론홍보: 라디오방송

- 장애인일자리 및 경기도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경기장애인방송' 등에 사업홍보, 후원 개발, 자원 봉사자모집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 그 외에 장애인 전문 인터넷 방송, 케이블방송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디오방송의 경우 고연령 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홍보매체이다. 장애인의 50% 이상이 50대 인 점을 감안하면 라디오 매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KBS 제3라디오는 30년이 넘도록 방송하고 있고, 2010년부터 FM 104.9MHz로 방송되어 가시청권이 매우 확대되어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표 1-6] 장애인관련 라디오방송과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방송일	방송시간	비고
KBS 3라디오 내일은푸른하늘	장애인가게 소식, 화제, 인식개선 등 - www.kbs.co.kr/radio/3radio/bluesky/	매일	오후6시~ (1시간)	정규방송
KBS 3라디오 우리는 한가족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화제건강 등) - www.kbs.co.kr/radio/3radio/family	매주 월~토	오후1시~ (1시간)	정규방송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장애 복지계의 소식소개, 장애정책, 이슈 관련 된 사건, 사고들을 조명 - www.kbs.co.kr/radio/3radio/together	매일	오전9시5분 (55분)	정규방송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방송	음악 및 정보공유, 신청곡 수렴 - kbic.info	매주 월~토	2시간	인터넷방송

(3) 언론홍보: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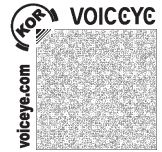
- 신문의 기록성은 매우 좋은 홍보효과를 낸다.
- 주요일간지에 사회공헌 전문섹션지가 발간되며, 이와 같은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터넷 장애인신문 중 ‘에이블뉴스’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포털사이트로 많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표 1-7] 온/오프라인 발행 장애인신문

신문사명	사이트	오프라인신문 동시발간 유무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장애인신문	www.welfarenews.net	유
e장애인신문	www.ednews.co.kr	유
대한장애인신문 온뉴스	www.onnews.or.kr	유
KJB방송(한국장애인신문)	www.kbj.or.kr	유
장애인생활신문	www.handicapi.com	유
함께걸음	www.cowalknews.co.kr	
비마이너	www.beminor.com	
복지뉴스	www.bokjineews.com	유
장애인뉴스	www.welvoter.co.kr	
위캔뉴스	www.wecannews.com	유
한국복지뉴스	www.hwnews.co.kr	유
인뉴스	www.in-news.co.kr	유
생활신문, 시도 신문, 시군구신문 등		유

(4) 언론홍보: 생활정보지, 대중교통광고

- 장애인이용자 집단은 도서관홍보를 접하는데 생활정보지와 대중교통광고를 최다 사용함에 따라 이 점을 착안하여 홍보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서비스 사서 및 관련 기관담당자들은 인터넷, ARS 서비스, 도서관게시판, 현수막, 인터넷 방송과 같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무료 지역 생활신문이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 예를 들면 서초구청에서 발행하는 월간서초 등의 신문들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도서관 자체홍보물: 정기간행물, 비정기적 홍보물, 리플릿

-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웹진, 행사리플릿을 확대하고, 배포 확대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6) 직접홍보

- 외국의 경우 이메일 홍보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메일과 같은 직접적인 홍보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복지기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며, 도서관에서도 사서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불특정 다수가 관심을 가지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문화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 운영방안 : 지속적인 욕구조사와 지역조사 및 자원조사를 통해 기획한다.
- 서비스 대상을 여성장애인, 시설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획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한다.
- 장애인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 분야의 신간, 즉 건강정보, 장애극복기 등의 자료를 확

보하고, 신간안내를 통하여 홍보한다.

- 장애인이 정보검색에 관심을 가지도록 정보검색대회, 정보검색 사례 등을 준비한다.
- 또한 도서관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도서관활용교육 자료를 온라인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
- 컴퓨터교육과 공학기사용법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웹 접근을 위한 기술교육도 필요하다.

6 홈페이지 홍보

- 이용자구분 : 장애어린이, 부모를 위한 웹서비스, 가족을 위한 웹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 정보제공서비스 : 웹 안내 서비스, 건강정보, 연구자원^(장애관련 연구보고서), 1:1문답형식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 장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내 특수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이 보다 편리하도록 구축하고, 쉽고 간략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한다.
-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책임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음성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로 이동, 직접 PC에서 음성도서를 실시간으로 듣거나 또는 컴퓨터로 음성도서를 다운받아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다.



7 타 기관과의 연계홍보

- 복지기관, 장애인협회, 장애인가족협회, 한국수어통역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점자도서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도서관서비스를 홍보하고 행사 진행시 연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시각장애인의 유관기관으로는 호산나복지재단의 시각장애인 종합정보센터, 아이프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온소리^(하상장애인복지관), 웰북^(경북점자도서관), 소리책^(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국립특수교육원의 이압^(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전용사이트) 등의 기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청각장애인의 유관기관으로는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이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농영화, 수어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기관들, 한국농아인협회, 농인독립영화제작단 데프미디어, 장애인선교방송, 남서울은혜교회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지체 장애인의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이 있다.
- 장애인이 전입신고 시 장애인을 위한 지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7

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이해

- 47 1. 장애인 이해
- 49 2. 시각장애인 이해
- 52 3. 청각장애인 이해
- 55 4. 지체·뇌병변장애인 이해
- 59 5. 발달장애인 이해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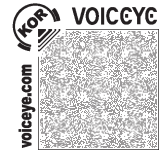
I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 62 1. 장애인 응대
- 62 2. 시각장애인 응대
- 64 3. 청각장애인 응대
- 67 4. 지체·뇌병변장애인 응대
- 68 5. 발달장애인 응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2장 이용자 이해와 응대



제2장 이용자 이해와 응대

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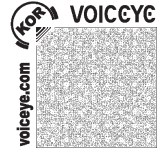
1 장애인 이해

- 모든 사람들에게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라는 개념은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점차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발전해오고 있다. 장애는 비단 신체적 손상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장벽^(barrier)을 의미하게 되었다^(권선진 2007).
- 이와 같이 장애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처럼, 도서관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이 되는 ‘장애인’ 역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장애인은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정연경, 김성진 2008)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환경 요소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정보소의 집단, 정보빈곤 집단을 포괄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실무가 법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권선진 2007), 본 매뉴얼은 법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를 신는다.

- 국내의 장애인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며, 이 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2012.10.22. 일부개정〉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3-56호)은 장애등급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세분하여 나타내었다.

[표 2-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3-56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 명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2 시각장애인 이해

(1) 정의

- 시각장애는 “시(視)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 (권선진 2007 107)로 정의된다.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최대교정시력이 기준이 되며,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표 1-2]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표 1-2]

3. 시각장애인

- 가. 나쁜 눈의 시력 (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10조 관련 [별표]에 [표 1-1]에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표 1-1]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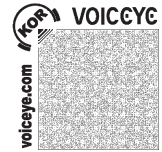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유형

- WHO는 시각장애를 시력상태별 과제수행의 정도에 따라 전맹(완전실명), 광각, 수동, 지수, 저시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맹 (totally blind, 완전실명이라고 함):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
 - 광각 (light perception): 암실에서 광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수동 (hand movement): 눈앞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
 - 지수 (finger counting): 자기 앞 1m 전방에서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 상태
 - 저시력 (low vision): 일반 활자를 읽지 못할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상태로 한계는 일정치 않으나 다각적으로 변화를 발견 못하는 시력감퇴 상태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표 2-2]와 같이 시각장애의 등급을 1~6급으로 정의한다. 1급은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이다.

[표 2-2] 시각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3) 원인

- 시각장애의 원인은 외상, 중독, 질환^(안질환, 전신질환, 감염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 대표적이다.
- 최근에는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성/미숙아 망막증 등의 영향으로 중도 실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특성

-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명암을 구분 할 수 있거나 희미하게 색상을 구분하거나 또는 여러 형태의 잔존 시각기능으로 생활한다.
- 시각장애인의 주요 특성으로는 장애로 인한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환경과의 현실적 접촉 능력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이동 능력의 상실, 개인적 독립성의 상실 등을 보인다^(권선진 2007).
-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는 시각적 경험의 범위가 제한되어 학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능의 차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각장애아들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통합시키는 능력이 낮다. 어휘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반면, 수리적 능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권선진 2007).

(5) 정보행태

-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은 시각을 제외한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청각을 활용하여 거리와 방향의 개념을 발달시키나 크기나 형태의 인지는 어렵다.
- 시각정보의 인지, 위치 확인, 조작 등 시각적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어 피드백과 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시각장애인은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건강안정’^(30.7%), ‘복지혜택’^(20.0%), ‘노후

대책^{16.0%}, '취업사업'^{8.0%}의 순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선경 2010).

- 시각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48.0%}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해결'^{44.0%}, '기타'^(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해결, 2.7%)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오선경 2010).
-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매체정보원은 '텔레비전'^{33.8%}, '인터넷'^{23.0%}, '라디오' (18.9%) 순이다^(오선경 2010).
-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기관정보원은 '장애인 관련기관·단체'^{48.6%}와 '도서관' (28.6%), '행정기관'^{15.7%}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시각장애인이 정보입수를 위하여 선호하는 기관에 도서관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선경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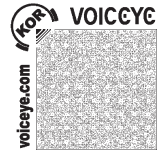
3 청각장애인 이해

(1) 정의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표 1-2]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표 1-1]에서는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



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2) 유형

- 청각장애인은 크게 농인과 난청인으로 나눌 수 있다.
- 농인(deafperson)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일반적으로는 70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 (일반적으로 35-69dB ISO 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청력장애의 등급기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청각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청각의 기능이 평형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평형기능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등급은 평형기능을 시험하는데 3급이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을, 5급은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3)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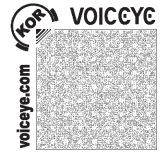
- 유전적인 원인 : 부모가 유전성 인자를 가졌어도 청각장애는 10%정도만 유전된다.
- 비유전적 원인 : (출생 전) 임신 중 질환,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임신 중 약물복용
(출생 시) 미숙아, 출산 시 외상
(출생 후) 감염성 질환, 외상, 중이염 등의 질환과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 노인성 난청

(4) 특성

-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가장 흔하다.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언어장애를 겪게 된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구화, 수어, 필담 또는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인지기능은 건청인과 차이가 없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문적 성취도가 낮다.
- 정서불안이나 미숙, 자기중심성, 내향성, 의존성, 냉담성, 공격성 등의 정신적 특성이 보이지만,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권선진 2007).
-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아동이 지능은 양적인 면에서 일반아동과 비슷하며, 언어와 관련된 검사의 추상적인 사고를 요하는 영역에서는 일반아동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인지기능은 정상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적응은 환경문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회부족 등에 의해 적응도가 낮다.^(정무성 외 2004)

(5) 정보행태

- 청각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보다 높았으며, 지체장애보다 낮다. 스마트폰 보유율 역시 동일하다. 즉 청각장애인들은 타 장애인보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정보요구 및 정보 탐색·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장보성 2015).

-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원하는 지원은 수어통역사 배치^(21.6%),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16.6%), 수어 동영상 제공/홈페이지에 필요 정보 제공^(11.7%),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11.2%), 문자 전광판 제공^(10.7%) 순으로 나타났다^(최상배, 홍성은, 허일, 이미혜, 안영희 2015).
- 도서관서비스 이용 시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한국수어통역사배치^(34.1%), 문자제공 등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23.1%), 정보접근을 위한 서비스^(15.4%), 자료이용을 위한 안내 및 다양한 자료 확충^(11.0%), 기타, 전문도서관 인력 지원서비스, 시설접근을 위한 서비스가 각각 3.3%, 전용공간확보^(2.2%)라고 응답하였다^(강창욱 외 2012).
-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농학교 출신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학교 출신자는 주변의 정보원 부족을 꼽았다. 2급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는 정보기술 및 능력부족을, 3급은 정보를 찾을 시간 부족, 4급은 정보 제공처 모름을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꼽았다^(장보성 2015).
-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농학교 출신자는 정보수집과 여가시간 활용으로 일반학교 출신자는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높게 꼽았다.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이용은 2급의 경우 정보수집, 3급은 도서대출, 4급은 열람실 이용 순으로 꼽았다^(장보성 2015).

4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이해

(1) 정의

- 지체장애란 사지^(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 장애를 의미하는데,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종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유형과 종류를 나타내며, 인구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이다^(권선진 2007).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표 1-2]에서 정의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표 1-2]

①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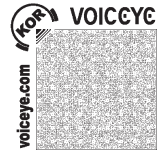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표 1-1]은 좀 더 포괄적으로 움직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체·뇌병변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유형

- 지체장애의 종류는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장애, 변형장애로 구분된다^(권선진 2007).



- 첫째,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 척추장애로 구분되는데,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이며,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 둘째, 관절장애는 신체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나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이 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강직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고 하며, 그 정도는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 셋째, 절단장애에서 절단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절단부위에 따라 상완절단^(어깨와 팔꿈치 사이), 전완절단^(팔꿈치와 손목 사이), 수지절단^(손가락), 대슬절단^(무릎 위), 하슬절단^(무릎과 발목 사이) 등으로 다시 세분되어진다^(권육상 외 2005). 서구에서는 하지절단이 약 80%로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양은 서구에 비해서 상지절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 넷째, 변형장애에서 변형은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3)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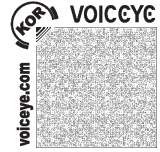
-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으로 생기게 된다.
- 선천적 원인 :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등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 만성질환
- 후천적 원인 : 대부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산이나 화재 등과 같은 사고

(4) 특성

- 신체적 특성 : 지체장애의 경우 요인이 되는 질환, 장애부위, 부수적 장애 등에 의해 신체적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불규칙적인 발달을 한다. 운동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동작을 포함한 사지의 곤란을 야기한다.
- 지능적 특성 : 본질적으로 지능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기의 탐색활동을 제한시키고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활동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동 공간이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정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많아진다. 그 결과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두뇌 활동을 함으로써 비장애인보다 탁월한 지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행동적 특성 : 감각을 통한 학습의 제한과 지각장애에 의한 인지부족으로 행동발달이 비장애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체장애는 질환의 원인, 장애의 정도, 부위, 장애 발생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접촉하는 사람의 수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견문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목표를 잘 이해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과감한 결단과 꾸준하고 성실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 심리적 특성 : 대개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감, 불안, 공격성 등이 높게 나타나거나 비현실적인 요소가 자아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에게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특성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애 그 자체가 건전하고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과보호, 과도한 요청, 부모와 사회에 대한 적의, 만족할 만한 사회참여의 결여, 이에 따른 좌절감, 사회의 차가운 반응 등이 부정적 특성을 구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정무성 외 2004).

(5) 정보행태

-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도서관 위치, 접근성 관련 문제가



부각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부족, 보조기기의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지체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및 접근성,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독서관련 서비스(방문 및 택배 서비스, 모바일 활용 서비스, 책대여 및 검색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도서관에서의 이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주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표윤희 외 2013).

5 발달장애인 이해

(1) 정의

-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발달장애가 정신적 장애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증으로 나뉜다. 동법은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 정의하며, 자폐성 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한다(손지영, 이정은, 서선진 201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표 1-2]에서는 발달^(자폐)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자폐성장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

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표 1-1]의 발달장애인은 제한적이며 반복적인 활동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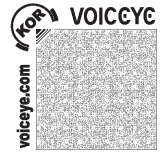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2) 유형

-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발달이상이 3세 이후에 나타나거나 자폐증의 진단 기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으로 나뉜다.
- 발달장애의 등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4] 발달장애 등급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원인

- 자폐가 발생하는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했다. 자폐증상이 영유아기 때 부터 발견된다는 점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떤 유전인자에 의해 자폐가 발생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이 영유아기 때 다른 사람들과의 애정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들이 냉담하거나 억압하는 경우 자폐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다.

(4) 특성

- 인지발달 : 발달장애^(자폐증)를 범주화하는 하나의 요인은 인지발달의 지체이다. 전형적으로 인지발달이 지체된 장애아들은 또래들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래들보다 기억, 주의집중, 일반화와 전이, 초인지와 같은 인지기술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 언어발달 : 언어발달지체는 발달기간 전체를 통해 지속되며, 일반학생들보다 더 느린 비율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되며, 제한된 수의 문장을 이용한다. 또한, 발달장애아들은 회화에도 발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 이들은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하며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 사회정서발달 : 발달장애아들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지니고,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며, 동기에 결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의사소통·자조·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지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사회적 수용의 발달을 방해하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몸 흔들기나 손 흔들기부터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행동까지 다양하다^(정무성 외 2004). 자폐아에게 나타나는 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일성에 대한 고집 또는 고집스러운 행동이다. 일상생활을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며,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분노한다. 예를 들어 식사 때 같은 음식만 먹거나, 같은 색깔로 된 옷만 입거나,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박옥희 2006).

(5) 정보행태

- 발달장애아의 가족은 발달장애와 관련한 의학적 정보, 육체적/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용한 정보, 교육적 기회와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보조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진로/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서옥연, 장덕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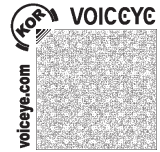
II.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1 장애인 응대

- 도서관은 사회 공공시설이며, 모든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람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2 시각장애인 응대

-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 시각장애인 안내보행법 : 안내 자세
 - 시각장애인을 안내해 함께 보행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반보 앞에 서서 팔을 내어 팔꿈치 윗부분을 잡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안내보행법 : 계단을 오르내릴 때
 -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잠깐 멈춰선 다음, 계단의 방향 (오름/내림)을 설명한다.
 - 계단 난간을 잡도록 안내하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안내보행법 : 비좁은 길, 출입문 이동
 - 좁은 길에서는 안내하는 팔을 뒤로하여 잡게 하고, 길이 좁아진다고 알린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안내자가 문을 연 다음 시각장애인의 다른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여 달게 한다.
- 의자에 앉힐 때
 -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혀줄 때는 몸을 돌려 앉히려 하지 말고, 한 손은 의자 등받이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달게 해주면 스스로 앉을 수 있다.
- 길 안내할 때
 -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알려줄 때는 '저기', '여기'라는 표현 대신에 숫자나 방향(동서남북)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 안내하다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가까운 의자에 앉히거나 벽 또는 기둥 곁에 편안히 서 있도록 한다.
 - 주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자리를 잠시 비우겠다고 덧붙인다. 돌아온 다음엔 돌아왔다고 말한다.
- 안내견을 동반했을 때
 -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하네스(Harness : 안내견이 맹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의 반대편에 서서 팔을 내밀어 팔을 잡도록 하고 안내한다.
- 책 등 물건을 건네거나 장애물을 가리킬 때
 - 작은 물건을 건넬 때에는 손에 물건을 쥐어주거나, 책과 같이 큰 물건의 경우 손을 끌어다가 물건 위에 놓아준다. 물건을 가리킬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에 ○○이 있어요."라고 말해 준다.
- 화장실을 이용할 때
 - 시각장애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이 안내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이 안내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에 도착한 다음에는 양변기 여부를 알려주고, 변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화장지와 물 내리는 레버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려준다. 화장실에서 나오면 손 씻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

3 청각장애인 응대

-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은 한국수어이다. 각 도서관은 한국수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서를 채용하거나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해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이용을 확대한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확인한다. 메모나 입모양으로 보고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도 있다. 또한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 최근에는 다양한 의사소통법이 개발되고 있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끈다.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한다. 천천히 명확하게 말한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함을 피한다.
- 메시지를 이해하였는지 물어가며 대화한다.
- 한국수어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한국수어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한다.
- 청각장애인이 함께 한 가운데 비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대화 내용을 청각장애인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여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 무언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한다.
- 청각장애인과 회의를 할 경우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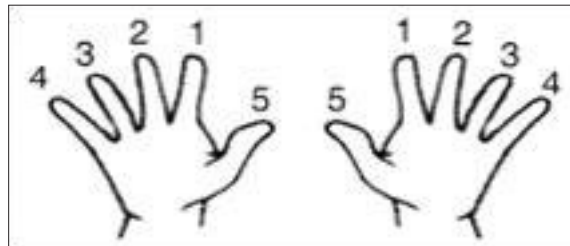
-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도서관 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1) 한국수어의 이해

- 한국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수어의 기초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한국수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음 지화, 모음지화로 구성된 지문자를 익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문자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것으로서,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표현이나, 한국수어어휘로 표현되지 않은 신조어의 표현, 그리고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표현에 주로 사용한다. 처음 한국수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문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① 한국수어·지문자·지숫자의 설명에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

- 한국수어·지문자·지숫자의 설명에 손가락을 사용할 경우 손가락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의 번호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한국수어 손가락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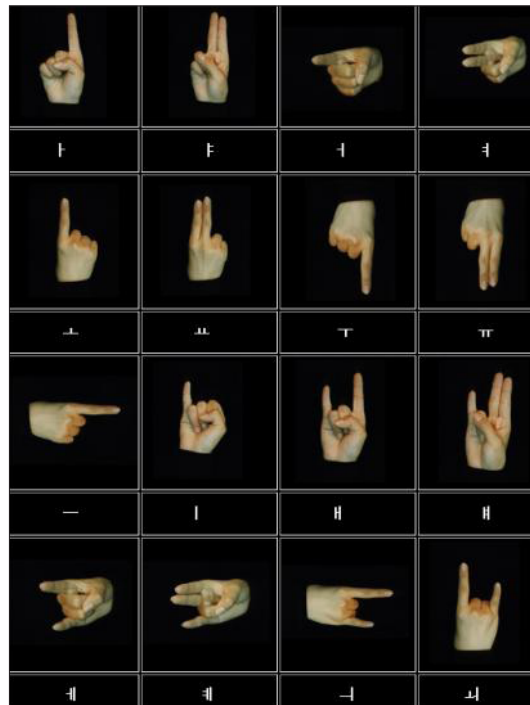
- 엄지손가락 : 5지, 집게손가락 : 1지, 가운데손가락 : 2지, 약손가락 : 3지, 새끼손가락 : 4지

② 자음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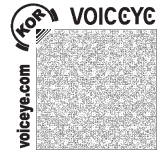


[그림 2-2] 자음지화

③ 모음지화



[그림 2-3] 모음지화



④ 한국수어배우기(도서관서비스 관련 어휘)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000 입니다.
- 저는 000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저는 한국수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한국수어배우기 동영상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nlid.nl.go.kr>) '도서관이용안내(수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응대

- 지체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및 접근성,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독서관련 서비스(방문 및 택배 서비스, 모바일 활용 서비스, 책대여 및 검색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도서관에서의 이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주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표윤희 외 2013)
- 지체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이 불편해하고 그들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중압감도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사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표윤희 외 2013)
- 하지 장애인의 경우 도서관에서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주차장에서 도서관으로의 이동, 도서관 서가 공간 및 열람실 설계 시 충분한 공간과 동선을 확보한다. 또한 대출/반납 데스크를 휠체어를 탄 상태로 사서와 대화하고 책을 건네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손잡이 및 각종 편의시설들이 가능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조작 가능하여야 한다.
- 상지 장애인은 도서 검색 및 독서 등의 행위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구비 및 도서관 이용보조서비스(도서검색을 위한 검색 대행 및 대출·반납 보조)를 제공한다. 손가락 또는 손 전체, 팔 전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서가에서 책을 집거나 도서의 페이지를 넘기고 덮고 돌려놓는 일 또한 지체장애인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서 및 보

조 인력의 도움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 중증 장애인: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도서관 접근 및 독서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서비스 보조 이상의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방문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거나,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 및 오디오북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발달장애인 응대

- 발달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다. 필요시 사전에 도서관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출 반납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별도의 안내자가 동반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기대 혹은 예측과 다른 상황이 생길 경우 가능한 자세히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폐 아동의 경우는 의사표현을 언어보다는 신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언어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언어활동을 하더라도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한다.



74

I. 공간과 시설의 구성

- 74 1. 공간구성 및 접근성 일반원칙
- 75 2. 공간구성 및 시설 법적 기준
- 77 3. 공간구성 및 시설 권장 기준
- 80 4. 공간구성 요소 정의
- 82 5. 공간구성 실제

86

II. 편의시설 기준

- 87 1. 매개시설
- 90 2. 내부시설
- 94 3. 위생시설
- 98 4. 안내시설
- 100 5. 기타시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3장 도서관 공간과 시설



제3장

도서관 공간과 시설

- 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 접근성을 갖추는 것은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 장애인 권리로서 이동권과 접근권이 주창되는 근거는 현대국가의 복지원리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해서이다. 편의증진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권(이동권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 이 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편의증진법」 제4조).
-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나아가 일반인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 공간과 시설의 구성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은 자관의 규모 및 사정에 맞추어 그 면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도서관은 아래의 법적 최소 기준과 권장기준을 준수하여 그 공간을 구성하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은 가능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영역에 장애인 자료실을 설치하여 장애인도서관의 면적배분기준(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실적으로 장애인자료실을 별도로 독립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코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간구성 및 접근성 일반원칙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공간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를 위해 국가 및 지역의 표준지침을 충족시키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내부공간은 자료확충, 서비스 확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모든 시설과 장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외부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공간별로 적절한 조명, 환기, 방음, 방습, 냉난방, 운송, 자료 분실방지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각종 시청각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을 충분히 확보·활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유효수명과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3~5년을 주기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2 공간구성 및 시설 법적 기준

- 장애인 공간구성 및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3조와 시행령^(별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43호) 및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도서관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면적을 66㎡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전체 도서관 면적의 45퍼센트 이상이 될 것을 제시하였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인의 요구와 흥미를 적절히 반영하는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구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도서관법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3조 관련)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43호)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사. 교육연구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간구성 및 시설 권장 기준

- 장애인도서관 공간구성 및 시설에 대한 권장기준은 한국도서관기준을 활용하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은 가능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영역에 장애인 자료실을 설치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장애인도서관의 면적배분기준(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 및 시설 및 가구, 조명의 구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시설기준(한국도서관기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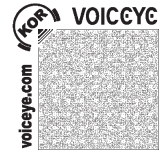
- 장애인도서관은 최소 49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공간은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으로 나누어 계획하여야 한다. 공간요소별 적정 면적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장애인도서관 면적배분 기준

공간요소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37	35
이용자공간	12	11
직원공간	38	34
공유공간	13	20

- 장애인도서관의 자료보관 및 열람공간은 연면적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자료공간의 경우, 서가 1개당 폐가제는 3.24~3.63㎡, 개가제는 3.24~5.4㎡를, 독서장애인공간은 좌석당 2.8㎡를, 시청각자료의 시청용 및 PC용 공간은 좌석당 3.5㎡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장애인도서관은 이용자의 특성상 폐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도서관의 직원 1명당 면적은 업무특성과 직급 및 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평균 10㎡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도서관의 공유공간(이용자·자료·직원공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기타 창고 등)은 독립건물의 경우 연면적의 20%(이용자·자료·직원공간을 합산한 면적의 25%)를, 복합건물은 연면적의 13%(이용자·자료·직원공간을 합산한 면적의 15%)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도서관은 각 부서나 구역, 공간의 기능을 알리는 점자 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 방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은 각 부서나 구역, 공간의 기능을 알리는 점자 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 방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출입구는 문턱이 없어야 하며, 출입문은 자동문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도서관의 서고는 일정한 적재하중(개가제 700kg/m², 폐가제 1,000kg/m²)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가구는 비반사율이 30% 정도인 중간명도의 색상(황도색, 진한 베이지색, 황갈색, 벽돌색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도서관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가구는 인간공학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의자와 VDT는 각각의 중심부가 직선상에 놓이도록 배치하고, 눈과 VDT의 거리는 45~66cm 정도를 유지하며, VDT화면은 휘광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명등이나 채광창과 직각을 형성하도록 배치하고, 화면의 입사조도는 100~500룩스(고령자는 200~500룩스), 주변(키보드, 서류면)의 수평면 조도는 500~1,000룩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키보드의 높이는 테이블 표면에서 5~6cm 이하를, 키보드의 경사각도는 7~11°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이용자공간에는 직접조명을 설치하고, 업무수행 및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공간에는 중간조명을 선택하되 테이블 또는 좌석당 부분조명으로 보광하며, 공유공간에는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료 및 이용자공간 중에서 일반열람실 및 개가제 서고는 300~500룩스, 폐가제 서고는 100~200룩스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 사인시스템(공간배치도, 서가배치도 등)의 서체와 표기, 픽토그램, 번호배정, 공간표시는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의 모든 공간은 표준 온습도의 범위(온도 $20 \pm 3^{\circ}\text{C}$, 습도 $50 \pm 1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동선체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2013)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전체동선체계를 대별하면 사용자동선, 자료의 동선, 차량동선으로 이루어진다. 아래 동선체계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동선체계 구성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의 동선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용자 동선은 성격에 의해 열람자와 직원으로 세분되며 차량동선은 옥 내/외로 세분된다. 동선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동선 체계별 유형

동선의 유형		
사용자 동선 사용자 동선	열람자 동선	• 이용자 동선: 주접근 → 주진입 → 도서실/교육공간 등의 이용자 서비스 공간 → 출구 • 방문객들이 혼돈 없이 주출입구홀로부터 가고자 하는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 휴게공간의 적정 간격 배치가 필요하다.
	직원 동선	• 직원 동선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선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 일반관리 동선과 사서의 동선으로 구별된다. • 소규모일 경우는 자료의 동선과 상당한 부분을 겸할 수도 있다. • 직원 및 사적응무방문자의 출입구는 도서관의 공공출입구와 분리되어야 한다.
자료 동선	반입/반출	• 자료의 동선: 하역장 → 수서 및 정리 → 서가 • 자료는 사용자의 출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부출입구를 통해 사무실, 서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주차 동선	옥내/옥외	• 주차동선은 옥, 내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열람객과 직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직원 및 사적응무방문자의 동선 역시 주차공간으로부터 사무공간의 입구로비로 직접 연결되어 통제 하에 사무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선의 원칙		• 동선교차금지(일반인, 직원, 물품의 이동경로)

4 공간구성 요소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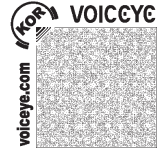
- 장애인도서관 및 자료실은 이상과 같은 법적 최소 기준과 권장기준을 준수하여 그 공간을 구성하되,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공간구성을 계획할 수 있다.
-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 장애인코너로 구분하여 각 공간구성 요소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소를 참고하여 자관의 공간 구성을 설계할 수 있다.

(1)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

-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의 공간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은 아래 공간구성 요소 중 자관의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표 3-3] 장애인도서관 공간구성 요소

공간요소	내용	비고
대체자료 제작실	- 점자자료 제작에 필요한 출판시설(점자도서 제작실 등) - 녹음자료 제작용 녹음스튜디오 및 편집실(코너) - 영사자료 제작용 스튜디오 및 시스템	
열람실 및 서가	- 장애인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 시각장애인 : 독서확대기 · 지체장애인 :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낮은 서가 등	열람실은 열람기능과 휴식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구성
대면상담실	-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대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방음시설, 조명장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무소음PC, 고성능마이크, 믹서기, 이어폰, 스캐너, 관련소프트웨어, 책상, 의자 등	다기능공간으로 활용가능 (정보검색장비, 녹음장비, 독서보조기기 등을 함께 구비)
영상실 (멀티미디어실)	- 청각장애인은 수어영상 및 자막삽입자료를,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공간(제공 콘텐츠: 각종 학습자료,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자료 등) - 장비 및 시설: 대형스크린, 진동의자, 자막수신기, 화면해설수신기, 스피커, 골도헤드폰, 헤드폰, 정보안내 전광판, DVD, 비디오, 컴퓨터 등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영상실 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정보검색실	- 대체자료 종합목록 및 인터넷 자료, 각종 영상자료 등을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 장애유형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안배하여 설치 - 장비 및 시설 ·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 화면확대프로그램, 헤드폰 등 · 청각장애인: 화상캠, 골도헤드폰 등 · 지체장애인: 특수키보드/마우스, 화상키보드, 터치스크린,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등	저시력인은 빛에 민감하므로 정보검색대 배치 시 빛의 방향 및 밝기 등 고려
안내데스크	- 도서관 이용안내 및 참고상담, 보조기기 대여 공간 장비 및 시설 ·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 청각장애인: 소리증폭장치, 통신중계서비스 장비, 화상전화기, 전자사전 등	- 안내데스크 책상은 반쪽은 높게, 반쪽은 낮게 설치 - 주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

(2) 장애인코너

- 공공도서관에서 공간 및 운영상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코너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공간구성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영상실(멀티미디어실), 정보검색실, 안내데스크는 비장애인이 활용하는 공간을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비장애인과 독립된 이용자 공간으로 최소한 1실 이상의 대면낭독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표 3-4] 장애인코너 공간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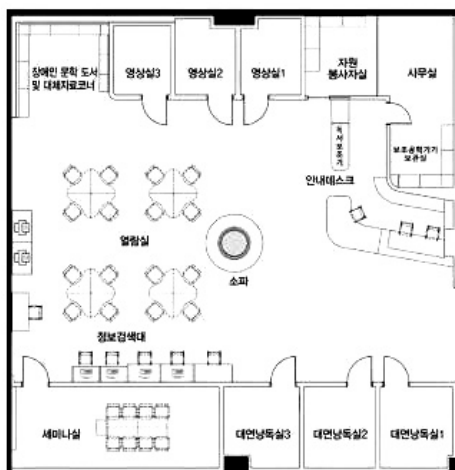
공간요소	내용	비고
열람코너 및 서가	- 장애인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하는 공간 · 열람석은 최소 2석 이상으로 구성 - 장비 및 시설 · 시각장애인: 독서확대기 · 지체장애인: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낮은 서가 등	- 도서관의 특화된 대체자료로 구성된 장애인전용 서가를 구비한다. - 도서관 특화 대체자료 이외의 일반적인 주제의 대체자료는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활용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nlid.nl.go.kr/)에서 제공중인 디지털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면낭독실	-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방음시설, 조명장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무소음PC, 고성능마이크, 믹서기, 이어폰, 스캐너, 관련소프트웨어, 책상, 의자 등	다기능공간으로 활용가능 (정보검색장비, 녹음장비, 독서보조기기 등을 함께 구비)

5 공간구성 실제

- 위에서 제시한 공간구성의 기준 및 구성요소를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실제 공간구성 사례를 참고하여 자관에 적합한 공간구성을 계획할 수 있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는 2009년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이용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정보누리터의 공간구성은 대면상담실^(3셀), 영상실^(3셀), 세미나실^(1셀), 정보검색대^(4석), 열람석^(18석), 보조공학기기 보관실^(1셀), 자원봉사자실, 안내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조기기 역시 장애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촉지도, 유도블럭, 점자안내판, 낮은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도서관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등
 - 청각장애인: 진동의자, 화상전화기, 보청기, 골도무선헤드셋, 화상캠, 정보안내전광판 등
 - 지체장애인: 높낮이조절책상,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페이지터너, 승강형 전동휠체어 등



[그림 3-1]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공간구성도



대면낭독실



열람석



영상실



대체자료 전시

[그림 3-2]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2)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는 도서관 1층에 위치해있으며, 대면낭독실^(2실), 영상실^(1실), 컴퓨터^(4대), 터치모니터^(2대), 특수마우스^(2개), 점자정보단말기^(2개), 독서확대기^(2개), 점자프린터^(1대)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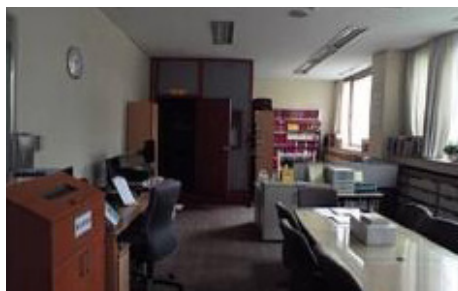


대체자료 전시

[그림 3-3]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3)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시각장애인실

-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은 1996년부터 시각장애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사서를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실은 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색 PC^(2대), 녹음기^(1개), 점자정보단말기^(1개), 점자프린터^(1개), 독서확대기^(1개), 보청기^(1개), 점자타자기^(2대)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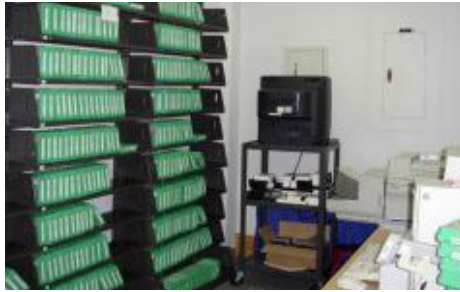


대체자료

[그림 3-4]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4) 해롤드워싱턴 도서관센터(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http://www.chipublib.org/locations/15/>)

-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1991년 해롤드워싱턴 도서관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 5층에 일리노이즈 주립도서관의 음성/점자도서 서비스의 지역서비스 도서관인 시카고 공공도서관 음성도서센터(TBC: The Chicago Public Library Talking Book Center)가 위치하고 있어, 시각/신체장애인을 위한 국립 도서관 서비스(NLS: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와의 협력 하에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기기로 문서인식스캐너, 확대독서기, 점자생성기, 자가플레이디지털북, 스크린 인식 소프트웨어, TTS 소프트웨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점자도서



audiobooks-playaway

[그림 3-5] 해롤드워싱턴도서관센터

(5) Sweden – The Apple Shelf (appelhyllan.se)

- 대부분의 스웨덴 공공 도서관에는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는 Apple Shelf라고 불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서가가 있다. Apple Shelf는 독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pple shelf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오디오북, 농어를 위한 수어영상, 촉각도서, 점자도서 등을 구비해놓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림 3-6] Sweden – The Apple Shelf

II. 편의시설 기준

- 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교육연구 복지시설의 도서관은 학교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규정된다.
- 도서관의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3-5] 도서관 편의시설 설치 기준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대상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도서관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
	장애인전용주차구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내부시설	출입구 · 문		●	●
	복도		●	●
	계단 또는 승강기		●	●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	●
		소변기	○	●
		세면대	○	●
	욕실			
	샤워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
	경보 및 피난설비		○	○
기타시설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	●
	접수대 · 작업대		○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범례: ● 의무사항, ○ 권장사항

주) 1.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참조

2. 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사항임



1 매개시설

(1) 진입로 및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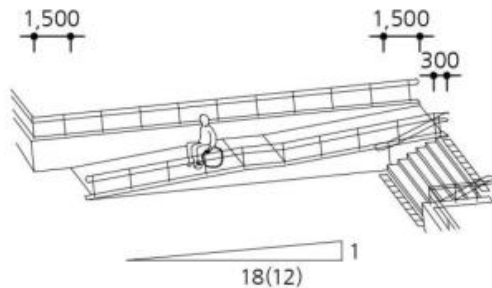
- 건물의 진입로는 가능한 짧아야 하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노면의 요철과 가로수, 전주, 노점 등의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정성과 접근성,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울기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③ 경계

-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cm~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 등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④ 재질과 마감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행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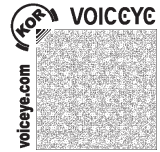
- 보도 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⑥ 턱낮추기

-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⑦ 연석경사로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 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점자블록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기타 설비

-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 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장애인용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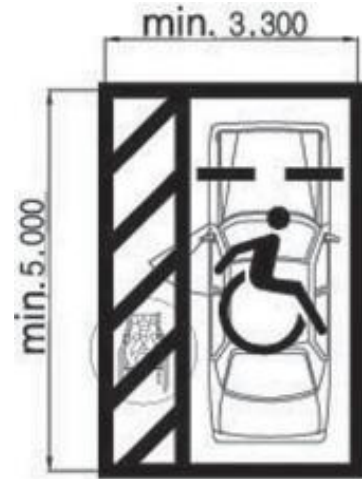
-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이용이 편리한 위치라 할 수 있는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에서 휠체어를 꺼내 입구까지 접근할 때 양손을 사용해 우산을 쓸 수 없으므로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차장입구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안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① 설치장소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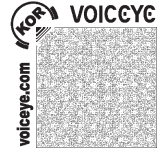
③ 유도 및 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부시설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도서관건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단차가 72cm 이상일 경우 경사로보다는 승강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 주출입구의 문이 자동문인 경우 문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폐기의 감지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문이 있는 경우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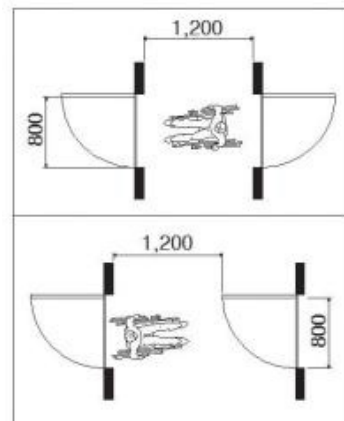


문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문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호출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해야 한다.

- 출입문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출입구와 건축 물안의 시설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거나 낮추어야 한다.
- 보안검색대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과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 또는 휠체어의 이동을 돕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한 검색 절차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 출입문을 유리로 설치한 경우는 유리문의 1.2~1.4m 높이에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의 약 5센티미터 폭의 색띠(라인테이프)를 붙여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나 휠체어이용자들 위해서는 낮은 위치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각장애인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여닫이문의 모서리는 색상으로 구별하고 자동닫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 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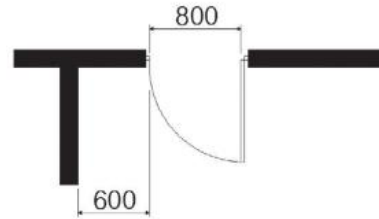
①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출입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② 문의 형태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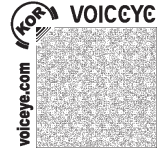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설비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의 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1대 이상의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로서 층수에 대한 조작버튼에 점자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아울러 녹음방송을 통해 정지된 층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승강기 버튼은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서 멈추었을 경우, 인터폰으로 직원과 대화를 할 수 없기에 문자나 화상전화 등 시각으로 알 수 있는 연락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이 보이도록 문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①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의 전면에는 가로1.4m, 세로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크기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위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1.4m × 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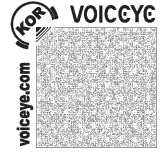
④ 기타 설비

-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위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3 위생시설

(1) 장애인용 화장실

-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변기 및 세면대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접근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손잡이는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세면대와



거울도 접근이 가능한 높이에 있어야 한다.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그림문자는 명확해야 하며 화장실 문은 청각장애인이 화장실 사용유무를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일반사항

- 설치장소

-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 문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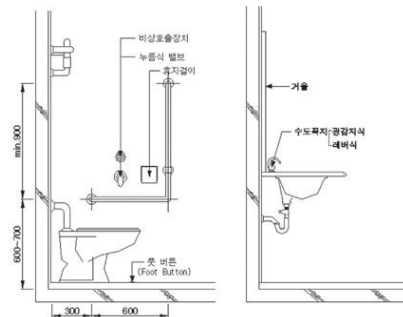
- 기타 설비

- 화장실의 출입구 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변기

- 활동공간

-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길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구조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설비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얹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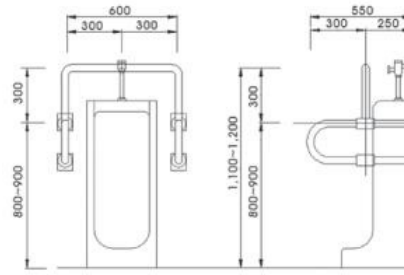
③ 소변기

-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이상 1.2m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세면대

-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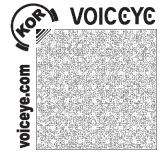
4 안내시설

(1) 유도블록

- 유도블록이란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할 때 방향이나 도로의 상황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점형블록과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 두 종류가 있다. 저시력자들이 블록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부터 도서관까지 시각장애인이거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가 수월하게 접근하는 것을 돕는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관내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대상건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식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등의 안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에 대해서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내표시는 도서관 건물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며, 관내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시설물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시설의 출입구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일반 안내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안내데스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은 직원이 필답해드립니다.’라고 게시하거나 한국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한국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



이 있으므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오.’, 혹은 ‘화상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방 이름이나 서가에 대한 안내로 점자 및 저시력 인들을 위한 큰 글씨의 명암 있는 색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전자식 신호장치와 같은 특수한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시각,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소리를 냄으로써 쉽게 주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서관의 위치를 알려준다. 도서관 입구나 도서관 가까운 정류장 주변 건널목에 설치하도록 한다.

③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공중전화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전화기, 큰 문자 버튼 전화기, 음량 증폭 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 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화상전화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준다.

④ 경보·피난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으로 유도하는 설비를 말한다.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각장애인이 비상시에 소리나는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출입구 혹은 외부로 직접 통하는 홀이나 비상계단으로 유도가 가능하도록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등을 설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비상벨이 울려도 들을 수가 없으므로 비상벨과 함께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5 기타시설

(1) 장애인용 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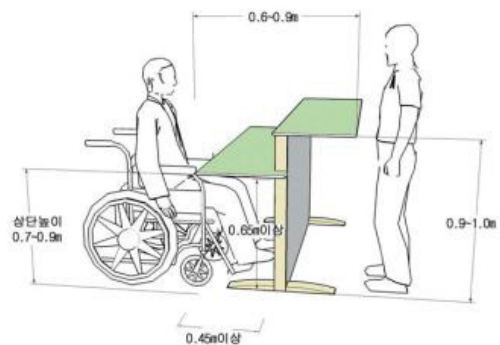
- 열람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열람석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는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고,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그리고 전체 열람석의 10%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자공간의 시각장애인용 1좌석당 면적은 2.8㎡, 이동자료실의 시각장애인용 공간은 2.3㎡씩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휠체어용 테이블

- 휠체어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어깨 및 팔꿈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테이블을 갖추어야 한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면 더욱 좋다.

(3)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안내데스크와 대출데스크

- 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대출데스크의 전면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한다. 데스크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서가

- 휠체어를 탄 사람이 서가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서가사이는 휠체어 등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배치한다. 서가와 서가 사이의 간격은 180cm정도, 서가열과 서가열 사이의 간격은 240cm정도가 적당하다. 이보다 좁으면 이용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하다.

105

I. 대체자료 개념

- 105 1. 분류
- 106 2. 연혁

107

II.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 108 1. 점자도서
- 109 2. 목·점자통합도서
- 111 3. 아날로그 녹음도서
- 113 4. 큰글자도서
- 114 5. 촉각도서
- 115 6. 화면해설영상자료
- 117 7. 전자점자자료
- 118 8. 디지털녹음도서
- 120 9. 데이지(DAISY) 자료

122

III.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 122 1. 읽기쉬운도서
- 124 2. 한국수어영상도서
- 125 3.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

126

IV.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체자료

- 126 1. 아날로그 녹음도서
- 126 2. 읽기쉬운도서
- 127 3. 큰글자도서

127

V.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 127 1. 읽기쉬운도서
- 127 2. 촉각도서
- 127 3. 큰글자도서
- 128 4. 그림 및 만화도서

129

VI. 대체자료 수서와 활용

- 129 1. 구입
- 131 2. 대체자료 보급기관
- 132 3. 대출 및 열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4장 대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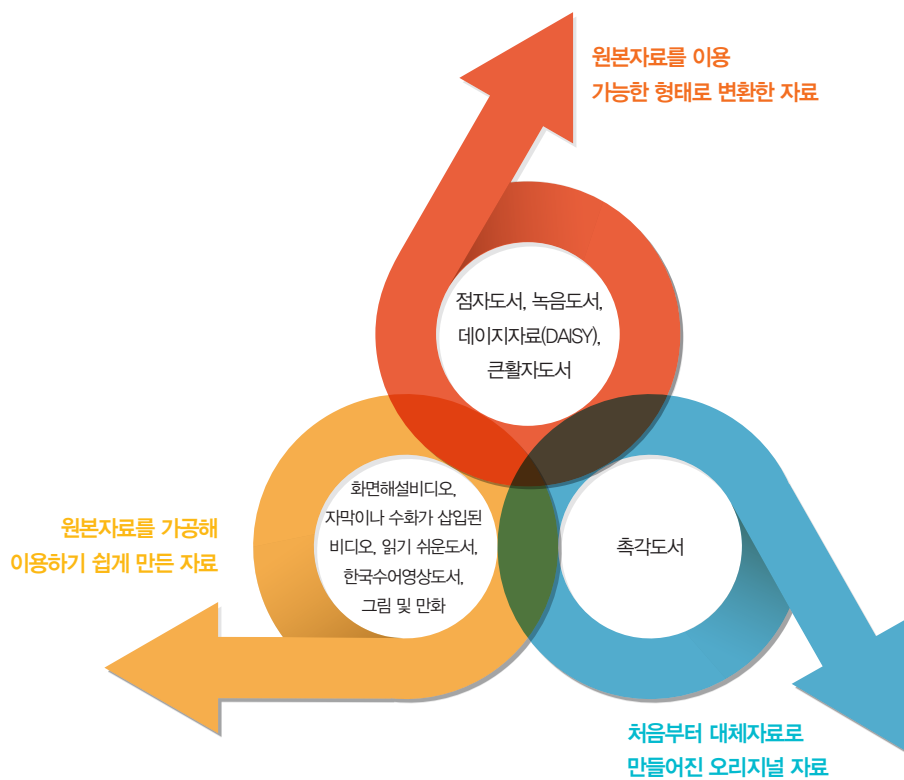
제4장 대체자료

-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가능하게 변안하여 제작한 자료를 대체자료라 한다. 보통 시각장애인의 독서는 이런 대체자료를 기반으로 소리를 통한 방법, 촉각을 통해 점자를 손끝으로 읽는 방법, 저시력인의 경우 글자를 확대해서 보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I. 대체자료 개념

1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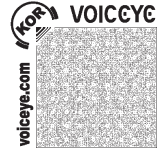
- 대체자료를 크게 분류하자면 점자도서, 녹음도서, 데이지자료, 큰글자도서,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도서, 전자도서 등 자료형태 그대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원본자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자료가 있고,
-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어를 삽입한 자료, 화면해설 영상자료 등 원본자료를 가공해 이용하기 쉽게 만든 자료가 있으며,
- 촉각도서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부터 대체자료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



[그림 4-1] 대체자료의 분류

2 연혁

- 오래 전부터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상실한 시각기능을 대체해 청각, 촉각 등의 잔여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왔다.
-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한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이었던 홀^(R. S. Hall) 여사가 1898년에 뉴욕 점자를 기초로 한글점자^(평양점자)를 창안하고 맹여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평양점자는 4점 점자였고,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자모 중 일부를 2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점자로 정착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점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점자이었고, 약 28년 동안 맹인용 문자로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 조선총독부는 1913년에 제생원을 설립하고 일본의 6점 점자인 ‘훈맹점자’를 가르쳤고, 이를 배운 맹인들은 6점 점자가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 박두성과 그의 제자들은 1920년에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하여 1923년에 ‘3-2점자’(자음 3점, 모음 2점)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3-2점자는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다시 연구를 계속한 결과, 박두성은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하여 발표하였다.
- 한글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사용하여 쉽게 인지하고 읽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녹음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는 음성정보로 변환한 아날로그 녹음도서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녹음도서로 제작·유통되고 있다.
- 따라서 현재는 점자도서에 이은 녹음도서(테이프, CD, 파일)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II.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유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구분 및 범주화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 본 절에서는 대체자료의 유형을 장애인 유형별로 나누고, 그 특징 및 활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각장애인의 독서는 이러한 대체자료를 기반으로 소리를 통한 방법, 촉각을 통해 점자를 손끝으로 읽는 방법, 저시력인의 경우 글자를 확대해서 보는 방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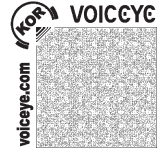
1 점자도서

(1) 정의

- 인쇄자료를 한국점자규정 및 점역출판매뉴얼에 따라 점역한 것으로서, 전맹 또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촉독할 수 있는 대체포맷을 말하며, 지금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대체자료에 해당한다.
- 점자도서는 12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종이에 6개의 돌출된 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타공방식이나 약품처리를 통해 점자를 입혀 제작된 도서를 말한다.
- 점자도서가 모형, 도표, 시각적 정보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상적인 대체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점자는 특수장비와 점자코드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체포맷 중에서 가장 제작하기 어렵고 고가의 매체에 속한다.
- 일반도서에 비해 부피가 커서 소장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파손율이 높다. 또한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림 4-2] 점자도서 읽기



(2) 특징

- ① 부피가 커 휴대가 어려우며 소장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 ② 점역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작비가 많이 든다.
- ③ 촉각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책의 파손 비율이 높다.
- ④ 도서대출시 파손 및 분실이 잦다(우편대출 등).
- ⑤ 타 매체에 비해 읽기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 ⑥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가 불가능하다.
- ⑦ 대출반납이 불편하고, 컴퓨터의 등장으로 점자 사용층이 감소함에 따라 점자도서 이 용자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3) 점자도서 주요 제작기관

- 일반도서 점자출판 : 한국점자도서관
- 교과서 점자출판 :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 어학 및 전문도서 점자출판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학습서 및 전문도서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학습서 :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2. 목 · 점자통합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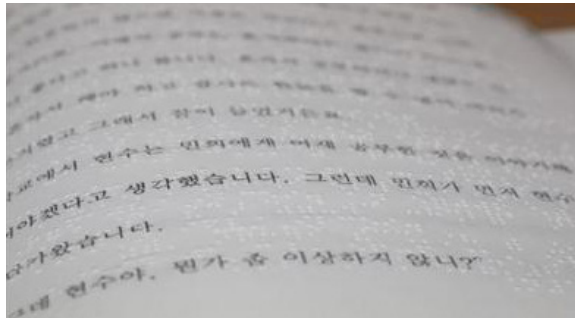
(1) 정의

- 목·점자통합도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목자(활자 자료)와 점자를 한 지면 안에 표현하여 제작된 대체자료이다.
- 최근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독서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장애 아동 간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 현재는 전국의 시각장애어린이뿐 아니라 독서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읽혀지고 있다.

- 목·점자 통합도서는 제작방법에 따라 목·점자 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로 구분된다.

- ① **목·점자혼용도서**: 목자가 인쇄된 종이에 타공방식, 약품처리 등으로 점자를 입혀 제작한 도서
- ② **점자라벨도서**: 일반도서(동화책 등) 위에 본문내용을 점자로 인쇄한 라벨을 붙여 제작한 도서



[그림 4-3] 목·점자 혼용도서

(2) 특징

-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일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 ② 자료관리가 수월하고, 점자의 손상이 적다.
- ③ 점자 미해독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④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및 교재 등에 적합하다.
- ⑤ 점자라벨도서의 경우, 별도의 원고 편집 없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림 동화책을 이용 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4] 점자라벨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1) 정의

- 녹음도서는 일반적인 도서가 활자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도서의 내용을 육성으로 녹음하여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한 도서로서 녹음도서 혹은 음성도서라고도 한다.
- 녹음도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독서장애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대체자료로서 1980년대에 활발하게 제작·보급된 대표적인 대체자료이며, 제작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녹음도서, 디지털 녹음도서로 구분된다.
- 아날로그 녹음도서(Analog audio book)는 인쇄자료의 콘텐츠를 테이프에 녹음한 것으로서 점자도서와 함께 대체자료를 대표한다. 이것은 녹음도서(talking books)로 통칭되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카세트테이프에 수록된 것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 그 유형은 다시 2트랙과 4트랙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대다수 플레이어에서 작동하는 반면에 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이기 때문에 특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림 4-5] 아날로그 녹음도서

(2) 특징

- ① 단시간에 대량제작이 가능하며 부피가 작고 제작비가 적게 소요된다.
- ②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도서가 녹음도서로 제작되었다.
- ③ 시각적으로 독서가 어려운 경우, 기능적으로 책을 들거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는 등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자료라서,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
- ④ 낭독자에 따라 해석, 간격, 속도 등의 읽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듣기 쉬운 것과 듣기 어려운 것이 생길 수 있다.
- ⑤ 장애인 독자의 속도나 리듬으로 독서하는 것이 어려워 녹음자 위주로 독서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 ⑥ 특정 부분을 검색하거나 도표 및 사진을 음역하기가 어렵고, 표나 계도, 화학식, 구문 등을 음역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⑦ 아날로그적 방식의 녹음은 자기테이프에 전기적 신호를 주어 소리를 저장 또는 재생하는 방식으로 자기테이프와 헤드가 직접 접촉함에 따라 음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 ⑧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디지털로 제작하여 mp3 파일, CD, 인터넷과 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3) 녹음도서 주요 제작기관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하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 한국점자도서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4 큰글자도서

(1) 정의

- 확대도서, 대활자도서, Large Print Book이라고도 하며 통상적인 활자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혹은 노인을 위해 원본자료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폰트를 인식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한 도서를 말한다.
- 큰글자도서는 보통 크기의 활자로 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저시력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저시력인은 잔존시력이 있기 때문에 점자를 배우기 어려운 반면에 작은 글자는 읽을 수 없거나 글자를 읽기 위해 눈을 사용하면 대단히 피로하기 때문이다.
- 자료 자체가 큰글자로 인쇄된 큰글자책을 비롯하여 확대복사기나 워드프로세서의 확대문자로 제작한 것, 손으로 문자를 확대한 확대복사본 등이 있다.
- 보통 크기의 글자로 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저시력인 또는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시점을 고정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거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6] 큰글자도서와 일반도서의 비교

(2) 특징

- ① 보통 크기의 활자로 된 인쇄물을 읽을 수 없거나 읽기 어려운 저시력인에게 유용하다.

- ② 보통의 문자 크기보다 큰문자(보통 18point활자)로 제작한다.
- ③ 일반도서보다 색깔이 짙으며 줄과 줄 가격사이를 넓게 띄운다.
- ④ 제작에 있어서 활자의 최적크기, 종이의 불투명성과 조직, 사용되는 잉크의 색깔과 종이 색깔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5 촉각도서

(1) 정의

- 촉각도서는 책의 내용 중 그림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촉각적인 요소로 대체하여 제작한 도서를 말한다.
- 문헌을 전달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점자도서와 녹음도서에 비해 학습 이해도를 향상시켜준다.
- 주로 통합교육 교재나 시각장애 유아용 교재, 지도, 도감 등 그림과 같은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인식의 부재와 더불어 양장본 인쇄자료보다 제작시간이 2배 내외 비용도 4~5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간적, 경제적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되는 종수는 극히 적다.



[그림 4-7] 유아용 촉각도서



(2) 특징

- ① 점자로 그림을 표현하거나 다양한 재료로 물체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유용하다.
 - 물체의 개념 및 단어, 의성어, 의태어 등의 개념 이해 증대
 - 인지감각 발달, 창의력 및 상상력 향상
 - 독서 흥미도 향상 등
- ② 다른 대체자료에 비해 파손이 되기 쉽다.
- ③ 인쇄자료에 비해 제작시간이 2배 내외, 제작비용이 4~6배 가량 소요되는 등 시간과 제작비가 많이 든다.
- ④ 시간적, 비용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제작되는 종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⑤ 안내서나 소식지 또는 유아 및 아동 교재 등이 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일반 그림책에 점자라벨을 붙인 통합 그림도서도 제작되고 있다.
- 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재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6 화면해설영상자료

(1) 정의

- 시각장애인들이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표현되는 배경, 사람의 행동, 몸짓, 의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풀이한 음성어 해설을 삽입하여 제작한 영상자료이다.
-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인 요소, 예를 들어 주요 인물의 움직임이나 영상의 배경과 같은 내용을 해설해 주는데, 낭독자가 대화를 제외한 화면 속 장면(액션, 배경, 바디랭귀지, 그래픽 등)을 설명해주는 기법으로 제작된다.
- 화면해설 서비스의 제공은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정보접근 수단의 하나이며 단순히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보조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핵심적 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

- 제작방법에 따라 크게 화면해설영상물, 소리영화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화면해설영상물** : 낭독자가 대화를 제외한 화면 속 장면(액션, 배경, 바디랭귀지, 그래픽 등)을 설명해주는 기법으로 제작한 영상자료
 - ② **소리영화** : 화면해설영화 중 비디오부분을 제외하고 오디오부분만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소리영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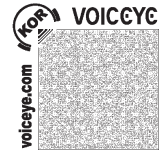
[그림 4-8] 화면해설영상도서

(2) 특징

- ① 전문 성우와 엔지니어의 협업으로 녹음이 이루어지는데, 배우의 대사 또는 중요한 음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디오 트랙에 더빙을 입력한다.
- ② 화면해설마스터 트랙이 완성되면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오리지널 오디오는 1채널을 통해, 화면해설은 2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시각장애인은 SAP(Second Audio Program) 수신기를 통해 청취하게 된다.
- ③ 최근 들어 대다수의 화면해설 자료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제작 방법이 전문화되고 품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3) 화면해설영상자료 주요 제작기관

- 화면해설영상물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등
- 소리영화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등



7 전자점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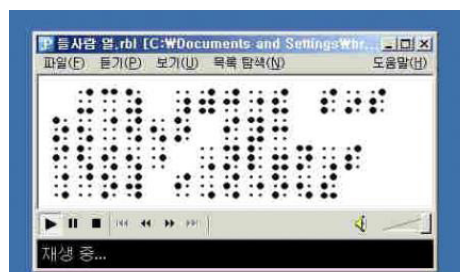
(1) 정의

- 전자점자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서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점역된 디지털 자료이다.
- 전자점자자료는 확장자가 .brf, .brl, .bbf 등으로 된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
- 필요시에 점자프린터로 출력하여 점자도서화 시키거나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손으로 읽어볼 수 있다.
- 통상 'Electronic-Braille'로 지칭되는 전자점자자료는 상하로 이동하는 편이 점자의 도트를 보여주는 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점자의 일종이다.

(2) 특징

- ①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일반 텍스트로의 변환도 가능하다.
- ② 스크린리더로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 ③ ASCII 방식의 텍스트 파일로 제작된 전자점자자료의 경우, 필요시 점자프린터로 출력하여 점자도서화 시켜서 이용이 가능하다.
- ④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전자점자자료를 읽기 위해서는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하다.

(3) 전자점자자료 주요 독서장비



[그림 4-9] 전자점자자료



[그림 4-10] 점자정보단말기



[그림 4-11] 점자리더기

8 디지털녹음도서

(1) 정의

- 디지털 파일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말하며, CD/DVD가 대표적이다.
-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형식의 디지털 오디오도 있으며, MP3 형태가 이를 대표한다.
- MP3 CD/DVD도서는 일반 오디오 도서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일반 오디오 도서 50배 분량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녹음도서이다. CD 및 파일형태로 저장·서비스되고 있어 MP3 플레이어, PC 이외에 휴대용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들을 수 있다.
- 서비스방식에 따라 일반 MP3 녹음도서와 전화도서로 구분된다. 최근에 많은 도서관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① MP3 녹음도서: 낭독자(성우 또는 TTS 프로그램)가 낭독한 도서내용을 MP3 파일로 저장된 디지털 녹음도서



- ② ARS 전화도서: 일반도서 및 신문(일간지 등) 등의 내용을 낭독자가 낭독하거나 TTS (Text to Speech)를 통해 음성으로 변환된 음성파일(MP3)을 전화를 활용한 ARS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작함

(2) 특징

- ① 책갈피 기능이 한정된 포맷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② 교육용보다는 소설이나 픽션 장르가 많이 제작된다.
- ③ 음성속도 변화 시 일정한 피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 ④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검색기능이 없다.



[그림 4-12] 디지털 녹음도서

(3) ARS 전화도서관 제공기관

- ARS 전화도서를 이용한 각종 음성정보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AR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음성정보로 제공하며 동아리 및 사서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통화료는 전화료만 부담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다.
 - 실로암음성정보서비스(02-880-0900)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샘(1577-6655)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전화도서관(02-440-5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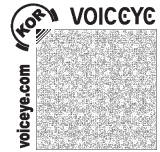
- 종달새 전화도서관(02-2022-4800)
- 경남점자정보도서관(055-245-0047)
- 부산맹인복지관 음성정보서비스(051-338-5200)

9 데이지(DAISY) 자료

(1) 정의

- 스웨덴 녹음점자도서관(Talking Books and Braille)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디지털 음성도서(DTB : Digital Talking Books)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도서를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 발전시킨 것이며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그 개발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현재 인쇄자료를 읽기가 곤란한 모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국제표준 포맷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데이지(DAISY) 자료는 시각, 청각, 신체, 학습 등의 장애인을 비롯하여 인쇄자료를 독서하기 곤란한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편집한 전자파일 자료를 말한다.
- 데이지(DAISY) 자료의 유형은 텍스트형, 오디오형, 절충형(텍스트+오디오)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DAISY 컨소시엄은 다음의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 ① **음성전용 DTB(타이틀 요소 포함)**: 이 유형은 인쇄자료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구성하되 타이틀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타이틀 뿐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구조를 제공하지 않아 특정 위치로의 직접적 이동이나 접근은 불가능하다.
- ② **음성전용 DTB(Navigation Control Centre 포함)**: 연속적이고 계층적인 내비게이션을 허용하는 2차원 구조로 제작된 DTB를 말한다. 이 유형에서의 NCC는 인쇄자료의 목차에 상당하는 파일을 의미한다. 국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DTB가 여기에 속한다.
- ③ **음성전용 DTB(NCC와 일부 텍스트 포함)**: 상술한 구조와 일부 텍스트를 추가한 유형을 말한다. 추가된 텍스트 구성요소는 색인이나 용어집 등 키워드 탐색이나 직접 접근이 필요한 곳에 포함되어 있다.
- ④ **음성 및 전문 텍스트로 구성된 DTB**: 구조와 텍스트 전체, 그리고 음성이 내장된 유형으로 '멀티미디어형 데이지 자료'로 지칭된다. 가장 복잡한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음성과 텍스트가 일체화되어 있어 강력한 접근·검색기능을 제공한다.



- ⑤ **전문 텍스트에 일부 음성이 포함된 DTB**: 구조와 전문 텍스트, 그리고 일부 음성이 포함된 유형으로, 통상 발음만 음성정보로 제공하는 사전 등에 사용된다.
- ⑥ **텍스트 전용 DTB**: NCC와 구조화된 전자형 텍스트만 포함하는 것으로서, 음성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징

- ①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서 저작 툴과 플레이어어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 ②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점자파일까지 하나의 디지털 포맷으로 저장 가능하며,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개발 목적이다.
- ③ 사용빈도나 보관, 계절에 관계없이 음질이 일정하다.
- ④ 장, 절, 문장, 다른 레벨의 제목, 목록 등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구조화된 정보는 페이지나 장, 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⑤ 북 마크 기능과 메모 삽입이 가능하며, 현재 책의 어느 부분을 듣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 ⑥ 일반 인쇄책이나 잡지 등과 같은 구조를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⑦ CD 1장에 50시간 이상 저장이 가능하다.
- ⑧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고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 ⑨ 유니버설 방식으로 전 세계 자료 교환이 가능하다.
- ⑩ 음성과 함께 이미지, 도표, 원문 큰 글자 TEXT파일, 원문 점자파일까지 제공한다.
- ⑪ MP3 방식으로 압축시켜 일반 MP3 CD플레이어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



[그림 4-13] 데이지(DAISY) 자료의 멀티 저장 가능성

(3) 주요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종류



[그림 4-14] 책마루



[그림 4-15] 빅터

Ⅲ.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 청각장애인은 청각 기능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눈으로 보는 활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청각장애인 중 선천성 청각장애 혹은 조기에 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제약이 활자자료 습득에 영향을 주어 문자로 된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자로 된 자료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사회의 정보자료 제공 현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에 맞는 대체자료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 읽기쉬운도서

(1) 정의

- 1960년대 말 스웨덴이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예비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으로서, 원본의 내용을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 도서를 말한다.



- 현재 국가마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정도로 개념적 정립이 부족한 대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표준자료보다 텍스트의 길이가 짧은 요약형이며, 내용 앞부분의 배경과 지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되고, 표준 언어보다 더 쉬운 언어로 개조되는 특성을 내포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지만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도서를 대상으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게 같은 제목 하에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읽기 쉬운 도서라 할 수 있다.



[그림 4-16] 읽기쉬운도서

(2) 특징

- ①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한 도서를 원도서와 함께 구비한다.
- ② 일반 표준자료에 비해 텍스트의 길이가 짧은 요약형이 대부분이다.
- ③ 내용 앞부분의 배경과 지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추가된다.
- ④ 원본도서의 언어보다 더 쉬운 언어로 개조되는 특성을 가진다.

2 한국수어영상도서

(1) 정의

- 한국수어영상도서는 청각 장애로 인해 인쇄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도서의 내용을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제작한 영상자료이다.
- 한편의 도서를 전부 다 재연한 완역과 줄거리만 짧게 축소한 요약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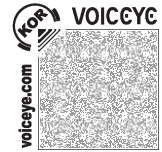
[그림 4-17] 한국수어영상도서

(2) 특징

- ① 문자, 한국수어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 속 상황과 감정을 연기해 한국수어와 함께 영상화한다.
- ②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이용 및 학습에 효과적이다.
- ③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대상 및 주제를 세분화한다.
- ④ 어린이 완역, 어린이 요약, 일반 완역, 일반 요약 등으로 나누어서 제작한다.

(3) 한국수어영상도서 주요 제작기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한국수어영상도서관
- 대구농아인협회 영상도서관
- 배리어프리 디지털도서관



3 한국수어 · 자막영상자료

(1) 정의

-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는 음성 중심의 영상물을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로 통역하거나 자막을 삽입하여 제작한 청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이다.
- 한글 자막이 삽입되어 배포되는 외국영화와는 달리 한국영화나 방송물 등은 자막을 별도 제작을 하여야 하지만 제작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여 많은 자료가 제작·보급되지 않고 있다.
-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한국수어나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테이프나 영화 같은 시각자료를 도서관 장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가 삽입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에서 구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 제작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한국수어자막영상물 : 영화, 방송물(교육, 드라마 등)에 한글자막과 수어를 함께 삽입하여 제작한 영상물
 - ② 한국수어영상물 : 기존 영상물에 한국수어를 삽입하거나 동화 및 법률, 금융 정보 등을 한국수어영상물로 제작한 영상물
 - ③ 자막영상물 : 기존 영상물에 한글자막을 삽입하여 제작한 영상물



[그림 4-18]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

(2) 특징

- ① 일반적으로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는 별도 제작이 요구되므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 ② 외국영화는 한글 자막이 삽입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구비하여 놓을 수 있으나, 한국영화는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가 삽입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3)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 주요 제작기관

- 한국농아인협회
- 청음회관
-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IV.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체자료

-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와 주로 중복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용되는 대체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아날로그 녹음도서

- ▶ 111페이지의 '아날로그 녹음도서' 참조

2. 읽기쉬운도서

- ▶ 122페이지의 '읽기쉬운도서' 참조

3. 큰글자도서

- ▶ 113페이지의 '큰글자도서' 참조



V.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동용 도서와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쉬운 단어로만 쓰여진 자료가 주류를 이루었다.
- 시각장애인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점자를 필요로 하듯 발달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언어로 구성된 글과 자료가 필요하다.
- 이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들의 생활연령과 인지능력에 맞추어 글자체, 부연 설명, 삽화, 만화적인 요소, 관심사, 자존감까지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1 읽기쉬운도서

- ▶ 122페이지의 '읽기쉬운도서' 참조

2 촉각도서

- ▶ 114페이지의 '촉각도서' 참조

3 큰글자도서

- ▶ 113페이지의 '큰글자도서' 참조

4 그림 및 만화도서

(1) 정의

- 그림도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그림을 담은 책을 말한다.
-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언어로써만 기술하기보다는 그림을 병행하여 기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어서 최근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위해 그림도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만화도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연속적인 그림과 글의 조합으로써 제작한 책을 말한다.
- 만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장된 인물화를 캐리커처(caricature)라고 하며, 한편 시사만화나 한 장면만으로 구성된 만화는 카툰(cartoon), 네 컷 이상이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만화를 코믹스(comics) 또는 코믹 스트립스(comic strips)라고 한다.



[그림 4-19] 그림책



(2) 특징

- ① 발달장애인의 학습단계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그림도서 또는 만화도서를 고를 수 있다.
- ② 발달장애인이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인의 문학활동과 정보습득을 높이기 위해 적당하다.
- ③ 펼칠 때마다 입체가 되거나 동물의 눈·코 등 특별한 부분만을 입체화한 것,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색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미완성으로 되어 있어서 색칠을 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도서 또는 만화도서가 있다.

(3) 그림 및 만화도서 주요 제작기관

- 그림도서 : 각종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
- 만화도서 : 각종 만화책 전문 출판사
- 발달장애인용 전문도서 : 피치마켓

VI. 대체자료 수서와 활용

1 구입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시중에 있는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없으며, 장애인도서관이 개별 도서관의 수서 정책과 이용자 요구에 따라 가능한 예산과 인력 활용 범위에서 매체별로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구입은 제작기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도서 제작기관은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중 규모가 크거나 오랫동안 도서 제작을 해 온 기관에서 주로 보급하고 있다.

- 보급되는 도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도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므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각 제작기관 별로 조사해야 한다. 도서를 외부에 공급하는 제작기관은 현재 극히 제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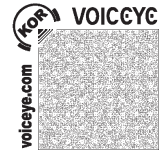
(2) 자막이나 한국수어가 포함된 자료

-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한국수어나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테이프나 영화 같은 시각자료를 도서관 장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지만 외국영화는 한글자막이 삽입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구비하여 놓을 수 있으나, 한국영화는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가 삽입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
- 한국영화 자막자료는 몇몇 기관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하여 특수학교, 단체 등에 무상 배포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3) 대체자료 구입 절차

[표 4-1] 대체자료의 구입 절차

구분	절차	특이사항
사전 고려사항 검토	소장공간 및 예산 고려 희망도서 신청분 종합	•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는 일반도서에 비해 5~10배 정도의 소장공간을 더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료구입 시 소장공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의 제작비는 인쇄자료에 비해 최대 4~6배 정도가 소요되므로 자료구입 시 예산을 고려해야 함 • 대체자료 구입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희망에 의해 원하는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공급기관 접촉	대체자료의 기관별 단가 문의 및 목록 요청	• 녹음도서는 책당 4~8개 테이프 분량으로 제작됨 • 점자도서는 책당 점자 2~5권 분량으로 제작됨
↓		
주문	목록 검토 후 발주	• 대부분 대체자료는 주문 후 제작하는 방식으로 2~4주 기간이 필요함 • 목록을 검토할 때 저자, 출판사 및 출판일자, 제작일자, 목차, 점자교정, 제본방식 등을 함께 검토함



입수	제작 완료된 자료는 택배 또는 직접 입수	• 해당 자료의 MARC 목록을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	------------------------	--------------------------------------

(4) 대체자료 선정 기준

- 자료 특성상 많은 자료가 출판되지 않으나 가능한 최신성을 유지
-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을 대체자료 수서에 적극 반영
- 녹음(CD-ROM)·점자도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
- 장애인 유관기관을 통해 자료목록 확인 후 신간자료 우선 수서
- 신문, 방송 및 출판사 서평과 광고 등을 참고하여 자료 선정 필요

2 대체자료 보급기관

(1)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녹음도서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녹음도서
- 한국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녹음도서

(2) 자막이나 한국수어가 포함된 대체자료

- 한국농아인협회 : 수능 방송물, 한국수어영상도서, 각종 한국수어 및 자막 삽입자료
- 청음회관 : 각종 한국수어 및 자막 삽입자료
-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한국수어영상도서, 한국수어영상도서관
- 도움나라 : 한국수어로 읽어주는 동화, 한국수어영상도서
- 한국농아방송 : 한국수어로 읽어주는 동화, 한국수어영상도서(www.idbn.tv)

(3) 발달장애인 대상 대체자료

- 피치마켓 : 발달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스토리 재구성, 문장, 단어, 글자체, 디자인을 맞춤식으로 개발한 자료

3 대출 및 열람

(1) 대출

- 녹음도서와 점자도서 대출을 위해서는 우송용 케이스와 주소 카드가 필요하다.
- 녹음도서 우송케이스는 카세트테이프 8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편배달 시 테이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점자도서 우송용 가방은 점자책 2~3권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송용 가방에는 '무료우편'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주소카드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 도서대출 방법 : 무료우편을 통한 대출은 도서를 받은 후 반납 시 어려움이 있다. 도서를 반납하려면 시각장애인이 직접 우체국 또는 우편함까지 가야만 보낼 수 있어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방법은 무료우편 방법보다는 택배나 가정방문 전달서비스가 보다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2) 열람

- 도서대여 기간은 보통 3주 이상을 부여한다.
- 1인당 도서대출 한도는 보통 5~10권 정도를 책정한다.
- 녹음도서의 대출과 반납 시 테이프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다.
- 도서분실 및 사고처리 : 녹음도서(카세트테이프, CD)는 소모성으로 이용횟수 및 플레이어에 따라 훼손될 수도 있고 자료 배송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명확한 분실 및 사고 책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고는 도서관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37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개요

- 137 1. 정보서비스
- 140 2. 독서·문화프로그램

144

II.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44 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145 2. 시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47 3. 시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47 4. 서비스 사례

148

III. 청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48 1.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149 2. 청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1 3. 청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2 4. 서비스 사례

153

IV. 지체·뇌병변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3 1. 지체·뇌병변장애인 정보서비스
- 154 2. 지체·뇌병변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4 3. 지체·뇌병변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5 4. 서비스 사례

156

V.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6 1. 발달장애인 정보서비스
- 156 2. 발달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157 3.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158 4. 서비스 사례

159

VI.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 159 1.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중요성
- 159 2. 제공 시 고려사항
- 160 3. 서비스 사례

162

VI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

- 162 1. 서비스 이용 평가 방안
- 162 2.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170 3. 서비스 평가 결과보고



제5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제5장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프로그램 개요

- 도서관은 장애인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정보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공평하게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장애인서비스는 대출서비스, 정보서비스, 정보화교육,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유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정보서비스

- 장애인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도서관의 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대표적인 서비스로 대출반납서비스, 이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상호대차, 정보검색, 확대문자서비스, 녹음, 점역, 한국수어통역, 자막지원 등이 있다.

(1) 대출반납서비스

-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서비스, 택배서비스, 직접방문서비스, 이동도서관 등으로 이용자의 대출반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우편서비스 및 택배서비스는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무료우편 및 택배를 이용하여 대출반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전화나 우편, 온라인을 통하여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읽은 도서는 다시 우편으로 반납 받는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해 ‘책나래서비스’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을 통해 2011년 7월 1일 시작하였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 직접방문서비스는 도서관 직원이 정기적으로 이용자 거주지역의 자택 및 직장을 방문하여 이용자가 도서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 자료의 대출반납은 도서관 담당직원과의 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목록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도서관은 선택된 자료를 준비하여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다 효율적인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간도서의 빠른 보급 및 목록제공, 전화사서함을 통한 신간도서 목록안내, 지속적인 자료 확충, 대체자료 플레이어의 지원 및 보급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이동도서관

-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의 유형이다.
-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차량에 책을 싣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 최근의 이동도서관은 기존의 대출반납 기능 외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책읽기프로그램, 이동영화관, 녹음기기 대여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 필요한 기관에 도서를 장기 대여하는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체자료의 제공, 주제에 따른 비치, 주기적인 장서의 교체, 장애인이 스스로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사인 판넬의 제공, 장서의 최신성 유지, 도서관 게시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디지털도서관

-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검색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대출 및 상호대차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의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배 및 우편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이용자에게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물리적 자료의 대출반납서비스와 병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대체자료의 제작·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도 증가추세이다.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3.5. 기준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과 앱스토어에 66개 애플리케이션 등록 - 장보성, 남영준 2014.)
-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경우, 디지털음성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디지털음성도서관은 ‘책 읽어주는 도서관’(http://voice.lg.or.kr)이다. 웹에 접속하여 음성도서관 메뉴를 통해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추천도서들을 선택하여 듣거나 책 읽어주는 도서관의 전용 휴대폰에서 모바일 도서관에 접속하고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음성도서를 다운로드하여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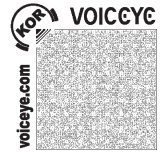
(4) 상호대차

-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일부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대체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대차를 실시한다.
- 상호대차는 개인대출형식이나 기관대출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관대출형식은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에서 대출대상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장애인도서관에 요청하면 회당 일정 수의 도서를 일괄적으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 책바다(국가상호대차) 서비스(<http://www.nl.go.kr/nill/user>)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도서관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목·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한국수어·자막영상물 등)를 대출할 수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액 지원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2 독서 · 문화프로그램

(1) 독서지도

- 장애인을 위한 독서지도서비스는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건강한 정서 및 인격형성, 내면의 치유를 목적으로 제공한다.
- 독서지도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낭독회, 독서클럽, 독서캠프, 독서치료 등이 대표적이며, 책 읽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대면낭독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 독서지도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연령, 직업, 독서능력, 흥미를 고려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텍스트가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한 도서를 선정하고, 독후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독서



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 **대면낭독서비스**는 책 읽기가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콘텐츠인 장서를 낭독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나 작가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대면낭독서비스를 1:1, 또는 1: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면낭독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장서, 대면낭독을 위한 공간, 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인적자원은 작가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 **대면낭독**을 위한 공간은 편하게 앉아 대면낭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독서를 즐기는 마음과 성실함을 지녀야 한다. 대면낭독서비스는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의 매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 **독서특강**은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독과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전문 강사나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도서관사서가 수업진행을 보조하기도 한다.
- **독후활동**은 장애정도와 유형을 고려하고,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시간 역시 집중도를 고려하여 3-40분 내외로 진행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35).
- **독서클럽**은 지정도서를 선택하여 작가초청, 낭독, 강연회 및 토론, 독서퀴즈, 게임, 북콘서트, 자작시 낭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도서 선정 시 장애인의 인지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며, 지정도서를 여유 있게 선정한다. 선정된 도서를 필요에 따라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문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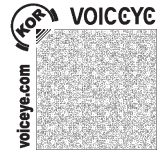
- 도서관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의 주요 안건 등을 다룰 수 있는 오락, 계몽,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공간적·신체적인 제약으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전 연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프로그램의 예로는 교양강좌(생활스포츠, 영화상영, 북아트, 생태체험프로그램, 문화유적답사),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장애체험교육, 장애이해교육), 부모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있다.
- 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3분의 1 이상은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정연경, 김성진 2008).
-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인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응력을 향상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새로운 배움과 학습을 통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대체자료, 보조기기 활용교육, 도서관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정보활용 및 도서관 활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제공한다.
-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분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활용교육, 대체자료 및 보조기기 활용교육 등이 포함된다.
- 이용자의 지적·사회적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
-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식과 절차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8)의 전반적인 제안 사항을 참조하여 공통적으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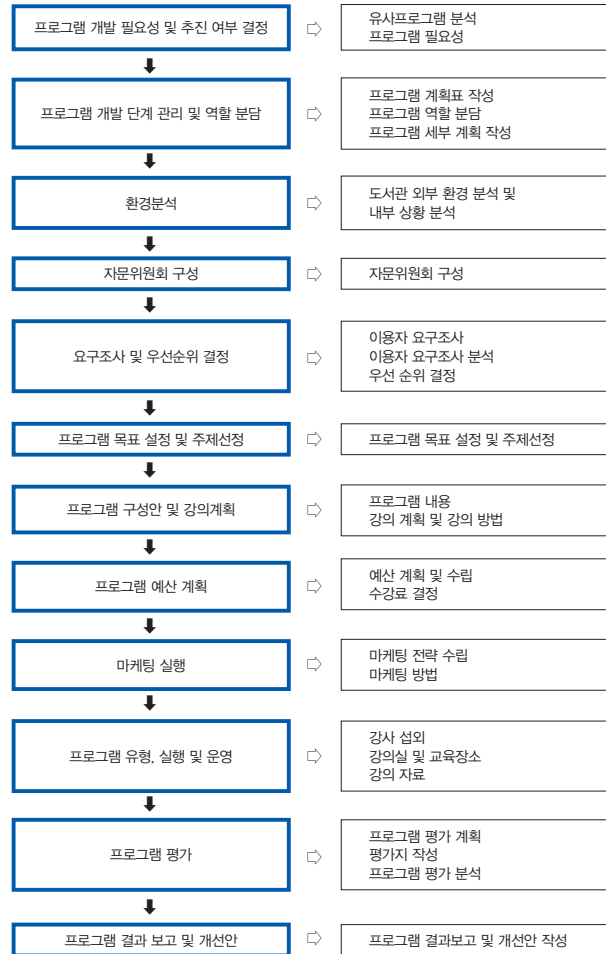
명한다.

-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크게 5가지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과정을 거치며 상세 단계는 전체 12개로 나눌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및 추진여부 결정, 2) 프로그램 개발 단계 관리 및 역할분담, 3) 환경분석, 4) 자문위원회 구성, 5) 요구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6) 프로그램 목표설정 및 주제선정, 7) 프로그램 구성안 및 강의계획, 8) 프로그램 예산계획, 9) 마케팅 실행, 10) 프로그램 유형, 실행 및 운영, 11) 프로그램 평가, 12)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개선안.



[그림 5-1] 문화프로그램 개발모델 (문화체육관광부 2008)

- 각 개발 단계는 활동으로 더욱 세분화되는데, 활동의 내용은 [그림5-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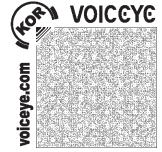


[그림 5-2] 문화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문화체육관광부 2008)

II.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국내 도서관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책나래서비



스, 우편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방문대출서비스, 순회문고서비스, 기관대출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거의 모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오선경 2015 발췌)

[표 5-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방문대출서비스 (채택서비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매주 수요일) 수원시내와 인접지역을 자택 및 직장으로 찾아가서 도서대출과 반납을 함
우편대출서비스 (우편서비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	수원시외지역으로 도서관과 거리가 있어 채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무료우편으로 대출과 반납을 함
도서목록안내 제작 및 배포이용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점자·녹음도서 목록과 이용안내를 직접제작(점자, 목자혼용)하여 배부 홈페이지에도 제공
북(book)소리 버스	한국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북(book)소리 버스를 활용하여 책(북)을 읽고 장애아동을 찾아가 이야기(소리)를 들려주는 이동도서관 서비스
BookstoGo	Brooklyn Public Library	시각읽기 · 장애노인	요양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시각읽기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해 시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장서 영어와 다른 언어로 된 책(큰활자본 포함), 'Bi-Folkal Kits', 주요기사물, 비디오, 오디오북 등을 대출
Home Reader Service · BookBuddies	Regina Public Library	시력 · 중증지체 장애인	레지나 지역의 건강이나 장애로 3달 이상 집을 떠나지 못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공. 시력장애나 책을 들거나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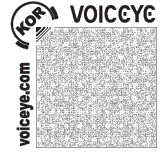
2 시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문화 프로그램, 낭독회,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검색교육, 장애인가족 교육 등의 이용교육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로 그 수가 미비하며 점자 교육^(7.6%)에 대한 요구보다 컴퓨터활용법교육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교육^(29.3%), 녹음테이프보급^(23.4%), PC·프로그램 보급^(12.5%), 정보제공서비스^(10.3%) 등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강숙희 2011).
-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12a; 오선경 2015 발췌).

[표 5-2]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시각장애인 문화유적답사	수성도서관	시각 장애인	바깥외출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시각장애인실 우수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에 동기를 부여하고 시각장애인실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함
찾아가는북콘서트	한밭도서관	시각 장애인	시각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의집'에서 '책, 음악 그리고 우리 함께'의 주제로 동화구연, 작가·독자·낭독자의 선정도서 낭독, 작가와의 대화, 독서퀴즈, 소그룹별 대면낭독, 시낭송, 음악으로 변주되는 책, 작은 음악회 실시 '대전맹학교'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의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 선정도서 부분낭독, 선정도서 음악으로 듣기, 작곡가와의 대화, 마음에 남는 '안녕, 사바나 얘기' 등을 실시
찾아가는 도서낭독회	한밭도서관	시각 장애인	'한마음의 집'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동화낭독, 모듬별 낭독, 독후활동, 독서퀴즈, 게임, 음악회 등을 실시
사랑방이 두런두런	한밭도서관	시각 장애인	'대전산성종합복지관'에서 매주 2회 2시간 장애인의 독서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돕기 위해 실시. 도서 낭독(매월 도서 한 권씩 선정. 1개월간 낭독), 신문기사, 시사주간지, 건강 및 사회 유머에 관한 글을 낭독
찾아가는 웃음 테라피 프로그램	고성도서관	시각 장애인	'고성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건강한 웃음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게 함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	시각 장애인과 자녀	작가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물론 직접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글자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제공될 수 없는 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상상력과 언어구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
꿈자람 북놀이		시각 장애 학생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업의 일부로 점자라벨도서를 선정하여 순회문고 형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선정한 도서를 읽고 발표하기, 쓰기 등의 활동 수행



책과 함께 숲으로 놀러가요	국점자도서관	시각장애아동 및 가족	5~10세 시각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책과 함께 소풍을 떠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	--------	----------------	--

3 시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시각장애인의 경우 85.3%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하므로 방문자서비스를 더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저시력 이용자들을 위해 보조공학과 목자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점자 이외 청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강숙희 2011).

4 서비스 사례

[표 5-3] 시각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출처
시각장애 체험(점자, 안내견)교실		초등학생	흰 지팡이와 안내를 이용한 시각장애 체험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하는 예절과 안내방법, 점자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봉사활동에 동기 부여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도 제5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장려상. 63-64.
노인독서 프로그램	화도진 도서관	노인	노인 문해 교육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력의 저하로 인해 독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는 '북메이킹', '인천 개항 및 동구의 역사 알아보기', '전래동화 빛그림 인형극', '재미있는 책 읽기-낭독법'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2012년도 제5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장려상. 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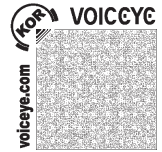
Ⅲ. 청각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0)에서 밝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도서관의 모든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커뮤니티회원은 서비스나 장서개발, 자문위원회, 서비스 조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계획과 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한국수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도서관은 읽을 능력이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역의 문자습득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이 후원하는 문자습득 프로그램이 개별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와 참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의 청각장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도서관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청각장애에 관련된 전자적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청각장애인은 다른 종류의 장애에 비해 저조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 방법 차이로 인해 도서관 및 자료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각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방안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 한국수어 사용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도서관에 한국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하게 제시하였으며, 한국수어통역서비스와 더불어 청각장애인 전용 정보검색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8b).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초조사와 요구조사를 시작으로 시행과 평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청각장애인 직원 및 한국수어통역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농커뮤니티와 청각장애 특수학교와의 연계 시스템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 ‘책나래서비스’, ‘우편택배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방문대출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회문고서비스’, ‘기관대출서비스’, ‘질의응답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정보검색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다양하다.

[표 5-4] 국립중앙도서관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사례

서비스명칭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청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 한국수어대면낭독서비스	청각장애인이 책을 선택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하면 한국수어통역사가 한국수어로 낭독해주는 서비스이다. 평일 오전이나 오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수업은 물론 1:1 수업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및 예약은 문자, 일반 전화, 영상전화,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거점도서관 '청각장애인 한국수어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 전국 거점도서관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한국수어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주1회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수어영상자료, 문자도서를 함께 읽고 책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며,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여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부산도서관, 한밭도서관, 도계도서관, 삼척도서관이며, 농아인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갖춘 강사와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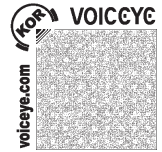
2 청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유형으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찾기에 부담 없는 도서관’, ‘읽기에 즐거운 도서관 자료’,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는 3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 3대 요소에 부합하는 각급 도서관의 역할은 [표5-5]와 같다.

[표 5-5]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3대 요소와 각급 도서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2013)

3대 요소	각급	도서관의 역할
찾기에 부담 없는 도서관	국립장애인 도서관	▶ 도서관 환경 개선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거점 도서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개발과 시행 ▶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 도서관 알리기
	지역도서관	▶ 거점도서관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시행 ▶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 도서관 알리기
읽기가 즐거운 도서 자료	국립장애인 도서관	▶ 한국수어동화 제작 및 배포 ▶ QR코드를 이용한 two-way book 제작과 보급 ▶ 한국수어 영상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자재 구입 및 활용 방안 수립 ▶ 청각장애인용 e-book을 제작하여 각 학교나 농커뮤니티와 공유
	거점 도서관	▶ 청각장애인이 관심이 있는 주제 도서 한국수어번역 자료 비치 ▶ 만화나 웹툰 같은 시각적 읽기 자료 다량 배치
	지역도서관	▶ 지역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담당자와 농커뮤니티 관계자의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책 읽어주는 날 운영: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선생님, 친구, 어머니 등등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국립장애인 도서관	▶ 청각장애인 대상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 청각장애인 대상 한국수어 구연가 양성 ▶ 청각장애학생의 연령별(수준별) 어휘 표준화 작업 ▶ 농학교 독서담당 교사협의체 지원
	거점 도서관	▶ 한국수어동화 구연가 배치-독서 동아리 지원(장소 및 통역사) ▶ 청각장애인 도서 축전 개최 예) 책과 함께하는 골든벨, 책으로 보는 농문화 등 ▶ 지역별 또는 전국 청각장애인 정보검색대회
	지역도서관	▶ 한국수어동화 구연가 배치 ▶ 읽기 공부방 운영 ▶ 그림동화, 영화와 함께하는 이야기, 나만의 독서 기록장(줄업까지), 병아리 작가 교실-직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의 큰 흐름은 전술한 [그림 5-2] 문화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만의 특징을 고려한 영역별 개발 방안이 [표5-6]와 같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



[표 5-6]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영역별 개발 방안

영역	개발 방안
1.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계획	청각장애인 기초조사 - 문식성 수준 파악, 선호하는 의사소통양식조사, 컴퓨터 사용수준 조사 청각장애인 요구조사 - 선호하는 도서 및 정보 조사, 선호하는 매스미디어와 매체 조사 청각장애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와의 연계 및 협조 농커뮤니티와의 연계 및 협조
2.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평가 및 피드백	기대효과달성 여부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 평가에 따른 서비스 강화 평가에 따른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3.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제공	문화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정체성 및 역할 프로그램
4.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준비 및 제공	영상자료의 자막 삽입 제공 한국수어영상자료 제작 및 제공 쉬운 책의 제작 및 제공
5. 청각장애인 사서 및 인력	청각장애인사서 채용 한국수어통역사 홈페이지의 한국수어 번역 제공
6. 청각장애인 지원서비스 홍보	청각장애학교를 통한 홍보 농아인종교단체를 통한 홍보 농아인협회를 통한 홍보 농아인대학생 연합회를 통한 홍보
7. 청각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설치	보청기나 유도루프 등의 비치 및 대여 필답 기기 비치 및 제공 시각 경보등과 같은 음성정보의 시각화

3 청각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의사소통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수어통역서비스나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안내게시판이나 카운터 앞에 필답이나 한국수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해력이 없거나 약한 청각장애인도 문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어교육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 시 한국수어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각적인 경고시스템 즉, 피난구 유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서비스 사례

[표 5-7] 청각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출처
청소년 농학생(청각장애인),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 수업	서대문도서관	청소년 농학생(청각장애인), 지적장애학생	청각장애인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진로개발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구분하여 시각적 자료와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등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청소년 농학생(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아 이후에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고,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책으로 쓱쓱 크는 우리, 책과 함께 톡톡, 생각 쓱쓱(독서 체험 및 독후 활동)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2014년도 제7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장려상, 76-86.



IV. 지체·뇌병변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지체·뇌병변장애인 정보서비스

-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운동발달과 더불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편대출서비스, 녹음서비스, 보조공학기 대여, 대면낭독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순회문고서비스, 기관대출서비스, 스캔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거동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비방문서비스와 방문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다. 가능 이동지원서비스는 이동보조 서비스^(도서관 내에서의 이동보조, 자료실 및 열람실로의 이동보조), 찾아가는 서비스^(이동식도서관 및 방문서비스) 등이 있다.
- 도서관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해외 사례는 [표5-8]과 같다.

[표 5-8]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사례 (오선경 2015 발췌)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Library Beyond Walls	Marin County Free Library	재택 장애인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집으로 한 달에 한번 방문하여 도서관자료를 배달하고 전자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줌
Books by Mail	New York Public Library	재택 장애인	브롱크스, 맨하탄, 스탠포드 아일랜드지역의 재택장애인에게 책과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우편으로 제공. 신청 시 나이, 선호자료유형, 선호언어를 선택해야 함. 'Please select items for me'를 선택하면 신청자료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관심 주제 분야의 다양한 아이템을 보내줌
Reference Services	Plymouth Public Library	재택장애인	도서관 개관 시간에 전화, TTY, 팩스, 이메일로 참고서비스 (온라인목록탐색, 서가확인, 장소예약, 상호대차신청, 예약서비스 등)를 신청 .무료 우편으로 대출반납가능
AssistiveTechnology Collections	Lee County Library	노인·장애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기 서비스.대체자료와 함께 우편 배달 방식으로 서비스
HomeDeliveryServices	투스도리현립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에 직접 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배달서비스

2 지체·뇌병변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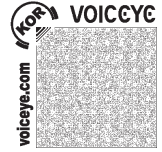
- 지체장애인은 대다수가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므로 편의시설의 설치, 보조공학기기의 제공 등 지체장애인들의 도서관 방문 및 이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강숙희 2011)
- 지체장애인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도서, 저자, 문학과 관련되어 책과 가까워지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문학기행, 역사기행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다양한 문화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가족,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표윤희 외 2013)
-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오선경 2015 발췌)

[표 5-9]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례 (오선경 2015 발췌)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장애어린이와 자원봉사자 1:1책읽어주기프로젝트	울산남부도서관	장애아동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의 독서 흥미 증진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월 4회 장애 어린이 보육시설에 정기적으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를 파견
장애아동을 위한 체력증진요가교실	부산광역시립 구포도서관	장애아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샘터장애어린이집' 장애 아동의 체력 및 신체유연성, 타인과의 친화력, 집중력 등을 증진
장애 성인을 위한 집중력 향상 교실	부산광역시립 구포도서관	장애성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소테리아하우스' 회원의 정신지체 증상 경감과 성취감·자존감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치료 레크레이션', '난타', '도자공예', '노래교실' 프로그램 진행
Servi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Brooklyn Public Library	장애어린이	장애 어린이가 비장애 어린이처럼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문학에 기반을 둔 연극프로그램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3 지체·뇌병변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지체장애인은 대뇌의 손상 때문에 신경, 근육, 신체골격의 손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정



상적인 운동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발달의 속도가 느리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운동능력의 저하는 언어 기술의 저하로 이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지체장애인은 잦은 수술이나 입원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정기적인 병원 치료 또한 이들의 성격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지적인 특성을 보인다(국립중앙도서관 2012b).

- 지체장애의 경우, 도서관의 희망 프로그램은 이동도서관 서비스^(29.66%), 우편대출/회수^(27.54%), 컴퓨터교육^(10.59%) 순으로 나타났다(정연경, 김성진 2008).
- 지체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독서교육 유형으로는 체험형 독서활동이 25.6%^(3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서활동이 20.0%^(25명), 독서행사가 19.2%^(24명), 독서이해 심화활동과 독서 프로그램이 각각 16.8%^(21명)로 나타났다(국립중앙도서관 2012b).

4 서비스 사례

[표 5-10]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출처
행복꾸러미 장애인서비스	김해 도서관	장애인	김해도서관은 이 지역 장애인들의 독서생활 및 심신단련, 생활의 활력을 불어주고자 행복꾸러미 장애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장애인 독서회 '다솜' - 관내 장애인 재활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독서회를 운영하였으며, 작가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②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거동인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기초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단순하고 익히기 쉬운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의 체력 단련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었다. ③ 찾아가는 장애인 자연문화체험 - 장애인의 자연물을 이용한 생태·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2011년도 제4회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 장려상 52-68.

V.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1 발달장애인 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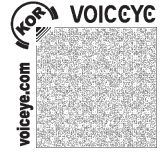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동반한 복합적인 장애를 겪고 있거나 낮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가안내, 정보서비스 등에서 일대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을 받은 특수프로그램과 도우미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나 장애인가족을 활용하거나 특수교육전문가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다. 영유아기(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발달촉진), 학령전기(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 문화프로그램), 학령후기(진로지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 성인기(사회성 증진, 취업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오선경 2015 발췌).

[표 5-11] 국내외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지적 장애인 대상독서 치료프로그램	남산도서관	지적장애인	'은평 기쁨의 집'의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지적장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독서치료수업으로 독서활동과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갖도록 함
찾아가는장애인 스포츠댄스	김해도서관	지적·발달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인 '도림원'에서 일반인(강사, 봉사자)과 장애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아픔의 상처를 치유함은 물론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냄. 장애인들의 자신감 고취와 정서적 안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에 도움



장애인평생 교육프로그램	반송도서관	성인 지적장애	'윤봉복지관'에서 매주 1회 원예치료, 치유요가, 지적장애 독 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반송복지관'에서 매주 2회 성인문해 프로그램과 매월 2회 영화상영 프로그램(지체장애인)을 실시
꿈을 빛는 장애아 도예반	노원 평생학습관	발달 장애 아동	중계2,3동 주민센터에서 소근육이 약한 발달장애아동에게 흙을 통한 소근육 발달과 자존감 향상 및 협동심을 향상시키 는 학습치료 프로그램
방문독서코칭 '책친구'사업	안중도서관	장애아동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실시
장애아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고덕 평생학습관	장애아동 청소년	'서울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 으로 '클레이아트' 프로그램과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동화구연 '책으로 말해요' 프로그램을 실시. '한국구화학교'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인성북아트' 프로그램 과 '오늘은 나도스타!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실시
피치마켓 독서 및 삽화가 프로그램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발달 장애	피치마켓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및 활동을 위한 단 체로, 2016년도에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 아카데미 및 삽화가 과정을 추진 서대문구립도서관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홍보하고, 모객 및 장소를 담당하였고 피치마켓은 모객 과 함께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 피치마켓의 발달장애인 독서 아카데미는 1기에 5주간 활동하 며 '쉽게 읽는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방법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1 한 조로 구성하여 총 15조가 참여

3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발달장애 이용자들은 독서치료^(56.25%)를 가장 희망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손꼽을 만큼
(정연경, 김성진 2008) 그동안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다.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문자보다는 시각이나 음성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외견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다.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라는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 ② 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③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의 주의를 확실히 끌고 쳐다보게 한다.
- ④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하지 마” 보다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 등의 구체적인 행동용어를 사용한다.
- ⑤ 너무 길지 않게 두세 마디로 나누어, 간단명료하게 단계적으로(예: 첫째, 둘째) 내용을 전달한다.
- ⑥ 시각자료를 활용하며, 물리적인 환경(소음, 조명, 실내온도)을 조절한다.

- 이와 함께, 함께 일하는 전문가 및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4).

4 서비스 사례

[표 5-12] 발달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출처
함께 떠나는 힐링 문학기행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발달장애아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며, 책을 통한 더 넓은 세상과의 조우를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현장 강의와 체험 활동을 통해 시인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 제8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최우수상, 13-16.
상상과 치유의 힘, 빛그림 동화	가평군립 조종도서관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흥미를 돋우고 선정된 그림책을 스캔하여 글씨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그림과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빛그림책 제작을 시작하였다. 그림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장애인 스스로의 감각을 자극하여 치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 후 연극공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3년도 제6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우수상, 28-38.



Ⅵ.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 누구나 장애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교육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조태근, 김용욱, 우정환, 김경일 2014).

1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중요성

- 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도서관에 반영하여 서로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통합교육 속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은 강조되며, 통합서비스의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여 보다 질적인 통합서비스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 통합형서비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교육하는 서비스이다. 통합형서비스는 비장애인에게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전인적 인격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2 제공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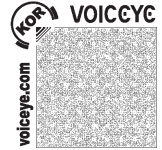
- 통합형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민천식 2013).

- ①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한 소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시에도 '장애' 등의 용어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 ② 통합교육은 모두를 위한 인성교육임을 강조한다. 통합형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통해 서로 돕고 유대감(Rapport)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존중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③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비장애인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④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 ⑤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가 중요하다. 참여여부의 확인, 대체자료의 우선배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⑥ 성공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은 물론,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통합서비스 제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통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권위적 태도, 접촉 시 긴장, 무조건적 거부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및 담당자가 장애인에 대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서비스 사례

[표 5-13]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출처
'모두 함께, 도서관 1박2일' 운영	서대문 이진아도서관	장애/비장애 아동	한국점자도서관과 서대문이진아도서관은 한국 점자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도서관 직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봉사가 6명이 함께하였으며, 총 20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1박2일로 이루어졌으며, 주제 및 도서를 선정하여, 책을 읽고 책과 관련한 촉각 및 신체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짝공을 이루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 체험, 짝공 소개, 친구찾기, 도서관 체험 연극, 독서퀴즈, 체험, 퀴즈,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 제4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장려상. 80-82.



장애인 체험교실	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	초등학생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은 2004년부터 장애인의 날(4월 20일), 흰지팡이의 날(10월 15일), 점자의 날(11월 4일) 등 년3회에 걸쳐 장애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지팡이와 안대를 이용한 시각장애 체험, 장애인과 안내견을 대하는 예절, 점자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총 17회에 걸쳐 376명의 비장애인이 참여하였다	2013년도 제6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장려상. 76.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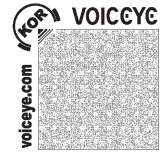
[표 5-14] 해외 사례

서비스명칭	대상	내용
Scotland –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장애인 이용자	– http://www.ed.ac.uk/schools-departments/information-services/services/help-consultancy/accessibility – Edinburgh 대학 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보조기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자료 접근법과 같은 정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도서관 문서들은 대체 파일 형식으로 이용가능하다. 도서관 전체적으로 다양한 보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고 교내 모든 PC에 특정 독서장애인을 위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 매년 도서관 사서들은 독서 장애를 다루는 장애 인식 훈련과정에 참여하며, 장기 대출 제도나 도서관 내 장애인 정보 안내소 등을 두는 등 장애 학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USA – The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아동	– http://www.therapyanimals.org/Read_Team_Steps.html – R.E.A.D.(The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프로그램은 동물을 활용한 독서라는 강력한 방법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아동의 독서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킨다. R.E.A.D는 아동의 독서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책과 독서를 즐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물을 이용한 치료법을 최초로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 Salt Lake City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USA – Reading Rockets	아동 및 청소년	– http://www.readingrockets.org/reading-topics/dyslexia/ – 워싱턴 DC의 Reading Rockets는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떻게 읽기를 학습할 수 있는지, 왜 그토록 어려워하는지와 보호자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자원들을 제공하는 국립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협회이다. 교사, 부모, 사서 및 아동이 실력 있고 자신감 있는 독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를 토대로 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한다.
USA, Queens Library Mail-A- Book Program	전체 이용자	Queens 도서관 사서들은 사람들에게 도서, 영화, 음악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는 시도를 하였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10명에서 17명 사이의 사람들이 전화로 참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전화 수업을 제공해주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간호사가 있고, 빙고게임, 수다 떨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Queens 도서관 사서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전화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서로 어울리게 하며 기본적으로 외롭다는 생각을 없애주고 명석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Ⅶ.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

1 서비스 이용 평가 방안

- 서비스 이용 평가 방안은 이용실적 평가, 질문지, 이용자 포럼/피드백 등이 있다.
- 자원, 인력, 업무실적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도서관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통계 정보는 의사 결정을 위한 계획, 벤치마킹 서비스의 수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그들은 비슷한 도서관의 관리 영역과 비교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일부 통계는 도서관의 목적, 목표를 지원하고, 더 많은 예산이나 사용자 동향을 파악하는 가치를 지닌다.
-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 평가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도서관의 평가는 시설, 자료, 직원, 봉사, 예산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봉사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다.
 -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여부
 - 시설의 규모 및 적절성
 - 자료의 양과 질적 가치, 주제별 분포
 - 자료보존의 환경과 기준의 적절성
 - 도서관의 직원 수와 그들의 업무능력
 - 예산의 계획 및 실행의 적절성
 - 도서관의 정보화 및 접근 가능성
 -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과의 협력정도
 - 교육 · 문화 · 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기대효과
 - 기타



• 모니터링 효과

- 평가 요구와 함께,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관 서비스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설문 조사는 이용자들의 응답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사용자의 경험을 자세히 듣는 일 또한 새로운 또는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 통계를 활용하여 장서의 이용이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장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를 활용한다.

2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본 절에서는 최종 정리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지표’를 소개하여 각 장애인 기관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평가지표’는 1)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운영평가 표준지표를 공고하여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및 자체 평가를 지원하고, 2) 개별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되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0).

[표 5-15]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지표 총괄

영역	세부평가지표	배점
I. 계획 (100)	장애인서비스 업무매뉴얼 유무	100
II. 이용자서비스 (250)	장애인 대출 서비스 유형	100
	정보이용 서비스 유형	100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50
III. 전자서비스 (100)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100
IV. 장서 및 기기 (100)	장애인용 인쇄자료의 주제별 구성	50
	대체자료(시청각자료) 소장 여부	50
V. 인적 자원 (100)	전문성 높은 사서 배치와 자원봉사자 활용 정도	100
VI. 공간 및 시설 (150)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의 편리성	50
	장애인 전용 자료실 설치 여부	50
	장애인용 자료제작과 이용 서비스실 설치 여부	50

Ⅶ. 장애인용 장비 및 보조공학기	장애인용 이동보조 및 컴퓨터 접근용 보조공학기 보유 여부	50
	매체접근용 보조공학기 보유 여부	50
Ⅷ. 교류, 협력 (100)	장애인도서관과 상호협력 실시 여부	100
8영역	14개 지표	1,000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평가지표 문항은 총 14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장애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업무 매뉴얼 이용	장애인서비스 업무 매뉴얼 유무	가. 장애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없다.
		나. 장애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있으나 3년 이내에 개정되지 않았다.
		다. 장애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있으며, 3년 이내에 개정되었다.

〈2-1〉 장애인 이용자에 적합한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대출 서비스 유형	장애인 대출서비스 유형	가. 방문대출
		나. 우편대출
		다. 택배서비스
		라. 단체대출
		마. 온라인서비스
		①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다.
		② 1가지만 실시한다.
		③ 2~3가지를 실시한다.
		④ 4~5가지를 실시한다.



〈2-2〉 장애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봉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정보이용 서비스 유형	정보이용 서비스 유형	가. 대면낭독
		나. 한국수어통역
		다. 정보검색서비스
		라. 녹음
		마. 점역서비스
		바. 확대문자서비스
		① 1가지만 서비스한다.
		② 2~3가지를 서비스한다.
		③ 4~5가지를 서비스한다.
		④ 6가지 모두 서비스한다.

〈2-3〉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독서·문화 프로그램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 장애인 찾아가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①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다.
		② 1가지만 실시하고 있다.
		③ 2가지만 실시하고 있다.
		④ 3가지를 모두 실시한다.

〈3-1〉 도서관 웹페이지를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았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지 않았다.
		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았다.
		① 가
		② 나

〈4-1〉 도서관 장서 중 장애인용 인쇄자료의 주제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통계치)

구분	장서 수	구성비율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4-2〉 장애인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대체자료(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서의 적합성	대체자료 (시청각자료) 소장 여부	가. 테이프녹음도서
		나. 오디오 CD도서
		다. MP3 녹음도서
		라. 슬라이드 자료
		마. 녹음된 연속간행물
		바. 화면해설비디오
		사. 한국수어영상도서
		①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② 1가지만 보유하고 있다.
		③ 2~3가지만 보유하고 있다.
		④ 4~7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5-1〉 장애인봉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장애인서비스에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애인서비스 인력 개발	전문성 높은 사서 배치와 자원봉사자 활용 정도	가. 장애인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나. 장애인서비스 교육을 받은 사서가 장애인 자원봉사자에게 장애인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①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다.
		② 1~2가지를 실시하고 있다.
		③ 3가지 모두를 실시하고 있다.

〈6-1〉 장애인이 도서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도서관 접근성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의 편리성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나. 출입문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고 문턱이 없다.
		다. 출입문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호출전화기(혹은 벨)가 설치되어 있다.
		라. 보안검색대는 휠체어를 타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1가지만 설치되어 있다.
		③ 2~3가지만 설치되어 있다.
		④ 4가지가 다 설치되어 있다.

〈6-2〉 장애인 전용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애인 전용 자료실	장애인 전용 자료실 설치 여부	가. 장애인 전용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장애인 전용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다.
		① 가
		② 나

〈6-3〉 장애인을 위한 자료제작과 이용 서비스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애인용 자료제작	장애인용 자료제작과 이용 서비스실 설치 여부	가. 점자도서제작실
		나. 녹음도서제작실
		다. 대면낭독실
		라. 한국수어영상제작실
		①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1개지만 설치되어 있다.
		③ 2~3개지만 설치되어 있다.
		④ 4개지 모두 설치되어 있다.

〈7-1〉 장애인용 이동보조 및 컴퓨터 접근용 보조공학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애인용 보조 공학기	장애인 이동보조 및 컴퓨터 접근용 보조공학기 보유 여부	가. 장애인용 의자
		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리프트
		다. 보조대
		라. 장애인용 검색대
		마. 장애인용 마우스
		바. 대형모니터
		①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1~2개지만 설치되어 있다.
		③ 3~4개지만 설치되어 있다.
		④ 5개지 이상 설치되어 있다.



〈7-2〉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접근용 보조공학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장애인용 보조 공학기	매체접근용 보조공학기 보유 여부	가. 독서확대기
		나. 화면확대 프로그램
		다. 화면낭독 프로그램
		라. 점자출력기
		마. 점자정보단말기
		바. 보청기
		사. 실내용 휠체어
		아. 녹음기
		자. 화상전화기
		차. 페이지 넘기기
		카. 보이스아이
		①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1~2가지만 설치되어 있다.
		③ 3~4가지만 설치되어 있다.
		④ 5가지 이상 설치되어 있다.

〈8-1〉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도서관과 협력하여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상호협력	장애인도서관과 상호협력 실시 여부	가. 대체자료 제작협력
		나. 상호대차서비스
		다. 정보서비스 제공
		① 하나도 서비스하지 않는다.
		② 1가지만 서비스하고 있다.
		③ 2가지만 서비스하고 있다.
		④ 3가지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다.

3 서비스 평가 결과보고

-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는 조사보고서로 작성되는데, 조사보고서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결과 발견한 사항들과 이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조사문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책임자나 학계 등에 제시하는 문서이다^(박영준, 김문근 2015).

- 조사보고서는 표제, 목차, 개요·초록, 서론, 본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으로 구성된다.
- 조사보고서의 본문은 조사의 목적, 문제와 가설, 이론적 배경,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설계, 자료수집방법, 표본추출, 통계적 자료분석방법, 조사결과) 등이 포함된다.



175

I. 독서보조기기 개념

178

II.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78 1.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178 2.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1

III. 청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81 1. 청각·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181 2. 청각·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4

IV. 지체·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84 1. 지체·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184 2. 지체·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88

V. 독서보조기기 추천

188 1. 지역도서관

190 2. 지역대표도서관

191 3.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

191

VI. 독서보조기기 지원 방법

191 1.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193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95 3. 기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6장 독서보조기기



제6장 독서보조기기

- 도서관은 신체장애,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독서보조기기는 비록 투입되어야 할 예산과 비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 도서관에서 간단한 독서보조기기의 활용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문제조차도 어떤 독서보조기기가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의 독서 및 정보탐색 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해야하며 더불어 장애인서비스 담당 사서를 배치하여 독서보조기기의 종류 및 활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여 정보를 적절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I. 독서보조기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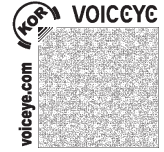
- 독서보조기기의 개념은 ‘독서 장애(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하위 지침을 준용한 시각장애인,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인과 지식정보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지식정보 접근과 독서 이용 환경을 돕는 보조기기의 개념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2장 제8조부터 제14조에 명시된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제품들을 포함하는 다음 분류와 같은 제품들로 규정할 수 있다.

[표 6-1]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지침에 따른 독서보조기기 분류

설계 지침 영역	대상 장애 유형	관련 독서보조기기 유형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제8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자세보조장치,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모니터 이동보조기, 원고홀더, 터치스크린, 경사각 작업테이블, 입력보조장치, 컴퓨터 입력 S/W, 필기구 홀더, 스위치 등
반응시간의 보완(제9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컴퓨터 입력 S/W, 스위치 등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제10조)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확대경, 휴대용 독서확대기, 탁상용 독서확대기, 데이지 플레이어, 바코드리더기,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점역S/W, 문서인식 S/W 및 H/W, 점자프린터, 점자정보 단말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제11조)	시각장애	휴대용 독서확대기, 탁상용 독서확대기, 화면확대S/W
청력의 보완 및 대체 (제12조)	청각장애	소리증폭장치(보청기), 화상전화기, 골도전화기, 신호장치 *언어기능의 보완 대체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음성입력의 대체 (제13조)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입력보조장치, 입력 S/W
인지능력의 보완 (제14조)	지적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터치스크린, 스위치

- 독서보조기기는 다시 해당 장애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장애 유형 별로 정보접근과 관련된 보조기기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 분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하여 고시하는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6-2] 장애 유형별 독서보조기기와 유관 지원 사업 품목의 분류

대상 장애 유형	관련 독서보조기기 유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14년 기준)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4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분류 수준)
지체/ 뇌병변 장애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모니터 이동보조기, 원고홀더, 터치스크린, 경사각작업테이블, 입력보조장치, 컴퓨터 입력 S/W, 필기구 홀더, 스위치 등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선택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 S/W,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경사각작업테이블, 휠체어용작업테이블, 책장넘기는 도구, 수화기홀더, 팔지지대, 물건집게, 필기보조고도구, 원고홀더	05 30 입력 장치 및 제품 취급 훈련용 보조기구 18 03 탁자 18 10 자세보조용구 액세서리 22 12 그리기 및 쓰기 보조기구 22 36 컴퓨터 입력 장치 24 09 작동 및 조종 기구용 보조기구 24 18 팔, 손, 손가락 및 다른 복합기능 대체용 보조기구
시각 장애	확대경, 휴대용독서확대기, 탁상용독서확대기, 데이지플레이어, 바코드리더기,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점역S/W, 문서인식 S/W 및 H/W, 점자프린터, 점자정보 단말기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 S/W, 점자라벨기, 점자프린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확대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독서확대기, 문서인식 S/W 및 H/W, 대형모니터	22 03 시각 보조기구 22 30 읽기용 보조기구 22 39 컴퓨터용 출력 장치
청각/ 언어 장애	소리증폭장치(보청기), 화상전화기, 골도전화기, 신호장치 *언어기능의 보완 대체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AAC)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문자전화기,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22 06 청각 보조기구 22 18 시청각 정보의 기록, 재생, 표시용 보조기구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기구 22 24 전화 및 무선 정보 전달용 보조기구
지적 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터치스크린, 스위치, 컴퓨터 입력 S/W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05 03 의사소통 치료 및 훈련용 보조기구 05 06 보완·대체 의사소통 훈련용 보조기구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기구

Ⅱ.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①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 시각장애인들은 글씨 크기를 조절하거나 확대경 등을 통해 일반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저시력’과, 시각적 기능으로는 독서를 할 수 없어 음성정보를 통해 독서를 해야 하는 ‘전맹’으로 구분하여 독서보조기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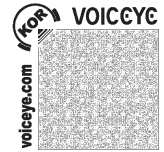
②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 시전맹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시각적 기능으로는 독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자, 음성정보 등의 대체된 정보 접근 수단으로 독서를 해야 하는 전맹의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는 다음과 같다.

[표 6-3] 전맹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음성 독서기	데이지 플레이어 	제품소개: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콘텐츠인 데이지(DAISY) 파일을 다운로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 사용법: DAISY 또는 TXT 형태의 전자도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음성으로 재생하여 청취 가격수준: 50만원~9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화면 낭독 S/W	스크린리더 S/W 	제품소개: 전맹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사용법: 스크린리더(화면낭독)S/W와 음성출력기기(스피커 또는 헤드폰)가 설치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와 함께 사용 가격수준: 40만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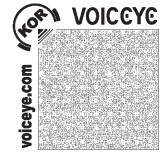
점자 정보 장치	점자프린터 	제품소개: 컴퓨터, 점역S/W와 함께 사용하여 전자 문서 파일을 점자 용지 위에 타공하여 출력 사용법: 점역S/W를 통해 변환된 txt 문서 등을 점자프린터로 출력하여 점자 용지에 출력하여 보존 및 활용 가격수준: 300만원~6,0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중앙 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도서관(공동활용 불필요)
	점자출력기 	제품소개: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함께 사용하여 전자 문서 파일을 가변형 점자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장치 사용법: 컴퓨터, 스마트 폰 등과 연결하여 화면으로 출력되는 내용을 가변형 점자디스플레이 부분에 한 줄씩 출력하여 독서를 지원 가격수준: 150만원~3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점자정보단말기 	제품소개: 가변형 점자 디스플레이로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 사용법: 인터넷, 전자문서 파일(페이지, txt, 워드프로세서, 오피스, PDF 등), 네비게이션 등의 출력을 화면 대신 점자로 한 줄씩 읽을 수 있도록 표시 가격수준: 500만원~6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점자라벨기 	제품소개: 장소, 물건 등의 이름을 점자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출력장치로 도서 표지나 계산 핸드레일에 부착 가능 사용법: 점역S/W를 실행시켜 장소, 물건의 이름을 한글로 작성하여 자동 점역되어 인쇄된 라벨지의 출력물을 붙여서 사용 가격수준: 80만원~13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문서 인식 S/W 및 H/W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제품소개: 책, 출력물 등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텍스트파일로 변환(OCR) 시켜주는 S/W와 스캐너, 카메라와 음성낭독 S/W를 통합한 장치 사용법: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촬영 한 후 OCR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txt 파일로 변환하고 음성낭독 S/W를 이용해 음성으로 출력 가격수준: 80만원~4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바코드리더기 	제품소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책, 출력물 등을 전용 리더기로 인식시켜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시켜 주는 장치 사용법: 컴퓨터 또는 전용 스캐너와 단말기에 음성출력기기(스피커, 헤드폰)를 연결하여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음성으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출력 가격수준: 80만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기기(지역대표도서관)

(2) 저시력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대상물의 확대, 색상 대비 증폭 등을 통해 독서를 할 수 있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는 다음과 같다.

[표 6-4] 저시력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독서 확대기	휴대용 독서확대기 	제품소개: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 하여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작은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 확대 기기 사용법: 아래쪽에 장착된 카메라가 독서 대상물을 비출 수 있도록 제품을 위치시킨 후 위 쪽의 액정화면(7인치 내외)에 배율(약 20배 이내)과 색상(고대비)을 조절하여 사용 가격수준: 70만원~15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탁상용 독서확대기 	제품소개: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 하여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큰 모니터로 구성된 영상 확대 기기 사용법: 아래쪽에 장착된 카메라가 비출 수 있도록 독서 대상물을 위치시킨 후 위 쪽의 모니터(27인치 내외)에 배율(약 100배 이내)과 색상(고대비)을 조절하여 사용 가격수준: 150만원~3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이동용 독서확대기 	제품소개: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 하여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영상 확대 기기 사용법: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여 원거리/근거리에 있는 독서 대상물을 위치시킨 후 위 쪽의 모니터(27인치 내외)에 배율(약 100배 이내)과 색상(고대비)을 조절하여 사용 가격수준: 300만원~4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화면 확대 S/W	화면확대 S/W 	제품소개: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컴퓨터 화면의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화면 상에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사용법: 화면확대 S/W가 설치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와 함께 사용, 화면상에서 보기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50배 이내에서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 가격수준: 5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Ⅲ. 청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 청각 · 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 청각 · 언어장애인들은 시각적 정보를 인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독서 자체 보다 는 관련된 의사소통에서 독서보조기기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은 청각에 의한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언어장애는 발화 및 표현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기능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2 청각 · 언어장애인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청각적 기능으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 촉각 등의 대체된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6-5]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신호 장치	신호, 경보 장치 	제품소개: 빛의 신호와 진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확인해야 하는 소리를 청각장애인이 인지하도록 함 사용법: 음성이나 소리의 신호를 감지할 위치에 발신기를 놓고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수신기에 정보의 전달, 긴급 상황의 경보 등을 빛과 진동 신호로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지원 가격수준: 30만원~7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화상 전화기	화상전화기 	제품소개 :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농인)이 화상통화를 통해 상대방과 한국수어로 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사용법 : 화상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한국수어로 통화를 하거나, 한국수어통역센터 등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하여 건청인, 음성전화 사용자와 통역 및 통화 기능으로 사용 가격수준: 60만원~80만원 내외 도서관 여건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화상통화 장치(웹캠)로 대체 가능

(2) 난청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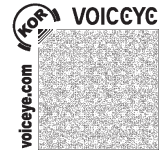
- 음성의 증폭, 음색의 조절 등에 의해 청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난청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는 다음과 같다.

[표 6-6] 난청 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소리 증폭 장치	(공용보청)음성증폭장치 	제품소개: 공공장소에서 난청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장치 사용법: 수화기처럼 생긴 제품을 귀에 대면 마이크를 통해 수집되는 음성이 증폭되어 들림 가격수준: 5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강의,강연 청취기 	제품소개: 무선 송수신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송신부가 수집한 음성정보(강의, 회의 등의 소리 또는 전자기기의 음성출력부와 연결된 신호)를 수신장치가 증폭시켜서 전달 사용법: 음원(강의자, 강연자, 회의석상, 전자기기의 음성출력부)에 송신장치를 두고, 사용자가 수신장치에 연결된 헤드폰을 끼고 증폭된 음성을 청취하여 사용 가격수준: 70만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기기(지역대표도서관)
골도 보청 장치	골도헤드셋 	제품소개: 청신경이 손상되지 않은 고막 손상의 청각장애인이 뼈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용 사용법: 골도헤드셋을 귀 뒤쪽에 착용하면 골전도의 원리를 이용하여 휴대폰, 음향기기 등과 연결하거나 일상생활의 보청기 기능으로 사용 가격수준: 10만원~8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기기(지역대표도서관)

(3) 언어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표현언어, 발화 등의 어려움을 가진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보조기기는 다음과 같다.



[표 6-7] 언어장애인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보완 대체 의사 소통 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제품소개: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중증의 지체장애 등)이 화면상의 어휘를 선택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전용 단말기 장치) 사용법: 화면상에서 필요한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시킨 후 음성으로 출력 가격수준: 30만원~3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연계활용기기(지역협력기관)
	보완대체의사소통용 애플리케이션 	제품소개: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중증의 지체장애 등)이 화면상의 어휘를 선택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로서 태블릿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 사용법: 화면상에서 필요한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시킨 후 음성으로 출력 가격수준: 0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기기(지역대표도서관)

IV. 지체 · 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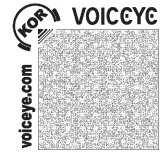
1 지체·뇌병변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용특성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독서보조기기 사용 특성은 현행법의 장애 판정 및 등록 기준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정의보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제한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신체 부위의 절단, 기능의 마비 등으로 인해 상지 또는 하지의 기능적 움직임, 체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독서보조기기 활용에 다른 특성을 지닌다. 하지 쪽 기능에 절단이나 마비가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동과 자세유지에 제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높낮이조절책상, 경사각 조절 책상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반면 하지 기능에 제한이 없이 상지 기능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조작, 입력, 쓰기 등의 기능을 돕는 독서보조기기가 요구된다.
- 상지와 하지 기능이 동시에 제한된 경우에는 몸통의 자세 정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앞서 언급한 상지, 하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의 적용이 요구될 수 있다.

2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의 비치와 활용

(1) 조작, 입력 등 손과 팔의 기능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지체 및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잡기^(쥐기), 누르기, 넘기기와 같은 손 또는 팔의 기능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컴퓨터 조작, 필기, 책의 파지와 책장 넘김 등을 돕는 독서보조기기들로 주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표 6-8] 조작, 입력 기능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특수 마우스	조이스틱 마우스 	제품소개: 마우스를 쥐고 정교하게 이동시키는 손기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사용법: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신체 기능적 부위(손, 팔, 발, 뺨 등)로 밀어서 작동. 조이스틱을 미는 방향과 강도, 유지하는 시간에 상응하여 컴퓨터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이동. 내/외부 스위치로 클릭 가격수준: 10만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트랙볼 마우스 	제품소개: 마우스나 조이스틱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밀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사용법: 받침판에 들어있는 공(볼)을 신체 기능적 부위(손, 팔, 발, 뺨 등)로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서 회전시켜 작동. 공이 회전하는 방향, 거리에 상응하여 컴퓨터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이동. 내/외부 스위치로 클릭 가격수준: 10만원~1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헤드마우스 	제품소개: 상지 기능의 마비 등으로 인해 대체 마우스 조작을 위한 기능적 신체 부위가 머리(얼굴 및 목의 움직임)로 제한된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사용법: 머리나 얼굴의 움직임 또는 해당 부위에 부착된 반사 스티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 마우스 커서 위치를 이동. 외부 스위치, 또는 드웰클릭(한 자리에 2초 이상 대기)으로 클릭 가격수준: 100만원~150만원 내외
	입술마우스 	제품소개: 상지 기능의 마비 등으로 인해 대체 마우스 조작을 위한 기능적 신체 부위가 머리(목의 움직임) 또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제한된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사용법: 조이스틱 작동부분을 입술로 물고 머리나 얼굴의 움직임 또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컴퓨터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이동. 불가·빨기 기능 또는 외부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클릭 가격수준: 150만원~250만원 내외
	안구마우스 	제품소개: 상지 기능의 마비 등으로 인해 대체 마우스 조작을 위한 기능적 신체 부위가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제한된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사용법: 모니터 하단에 제품을 설치 후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기 원하는 모니터 상의 부분을 응시하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마우스 커서 위치를 이동. 눈감빡임, 드웰클릭(한 자리에 2초 이상 대기) 등으로 클릭 가격수준: 900만원~1,500만원 내외
특수 키보드	확대키보드 	제품소개: 정교한 입력동작이 어려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 버튼의 크기와 버튼간 간격 등을 크게 만든 키보드 사용법: 사용 대상 컴퓨터에 연결 후 자판을 타자하여 입력, 입력 실수 방지를 위한 키가드(자판 모양 구멍이 뚫린 투명 상판)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음 가격수준: 40만원~9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미니 키보드 	제품소개: 손의 운동 능력이 제한된 근육장애인 등 마비성 장애인이 적은 범위와 힘의 손동작만으로 키보드를 입력하도록 작은 크기와 가벼운 터치로 입력되는 키보드 사용법: 사용 대상 컴퓨터에 연결 후 자판을 타자(터치)하여 입력 가격수준: 1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터치 스크린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제품소개: 손의 운동 능력, 시지각 협응, 인지기능의 부족 등으로 마우스의 조작과 커서의 이동을 연계시키기 어려운 지체, 뇌병변, 지적 장애인을 위한 터치식 입력 기능이 있는 모니터 사용법: 화면상에서 입력을 원하는 부위를 손(또는 터치펜)으로 접촉하여 입력 가격수준: 7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입력 보조 장치	키보드 입력보조기기 	제품소개: 손가락 기능의 제약으로 키보드를 타자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입력 보조 도구 사용법: 손에 감아 고정시킨 후 원하는 자판을 타이핑 팁 부분으로 눌러서 입력 가격수준: 10만원 이내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필기구 홀더	필기구 홀더 	제품소개: 손 기능의 제약으로 필기구를 쥐고 쓰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입력 보조 도구 사용법: 손에 감아 고정시킨 후 원하는 펜을 끼우고 손과 팔을 움직여서 필기 가격수준: 1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스위치	스위치 	제품소개: 컴퓨터의 클릭, 또는 의사소통기기 등 전자 기기의 조작 스위치를 외부로 연장해서 기능적 신체부위에 가까이 위치시키고 작동시키도록 돕는 스위치 사용법: 스위치 연결 잭(컴퓨터의 경우 대체마우스 또는 USB 포트)에 연결한 후 기능적 신체 부위로 터치하여 스위치를 작동 가격수준: 5만원~3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공동활용보조기기(지역대표도서관)
원고 홀더	원고홀더 	제품소개: 이용자의 자세, 시선의 각도 등에 맞춰 책을 고정시키고 볼 수 있도록 돕는 원고 고정 장치(책상 위에 놓는 북 스탠드도 가능) 사용법: 손으로 책을 잡지 않고 이용자의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시선 각도에 맞춰 거치대에 책을 위치시킨 후 독서 가격수준: 5만원~3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페이지터너 	제품소개: 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전동 기계장치가 책을 한 장씩 넘겨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북스탠드 장치 사용법: 손으로 책을 잡지 않고 이용자의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시선 각도에 맞춰 거치대에 책을 위치시킨 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스위치를 조작해서 독립적으로 독서 가격수준: 약 400만원~500만원 내외



(2) 휠체어의 접근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 신체적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책상의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제안은 다음과 같다.

[표 6-9] 휠체어의 접근을 지원하는 독서보조기기

품목	주요제품	활용 지침
휠체어	수동휠체어 	제품소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 대용으로 이동의 수단을 제공 사용법: 알루미늄의 가벼운 재질로 보관 시에 접어서 수납하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제공 시 발받침대를 접어서 앉기 쉽도록 제공 가격수준: 30만원~9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독서보조기기(지역도서관)
휠체어 작업 테이블	높낮이, 경사도조절 책상 	제품소개: 일반 이용자에 비해 약간 높은 책상 높이가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책상 사용법: 휠체어 사용자, 일반 의사 사용자, 기타 신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수동 또는 전동으로 책상 상판의 높낮이를 조절 가격수준: 40만원~30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모니터 이동 보조기	모니터이동보조기 	제품소개: 자세에 따라 모니터를 상하좌우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보조기기 사용법: 모니터 거치대에 일반 PC모니터 또는 터치모니터를 고정하고, 책상 상판에 부착 위치 옆으로 끼워 고정 나사를 조여 고정시켜 이용자 시야 위치 및 거리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격수준: 10만원~2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팔 받침대	팔받침대 	제품소개: 상지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자세 유지 등이 어려운 장애인이 팔을 지지하여 안정적으로 타이핑, 마우스, 필기 작업을 수행 사용법: 책상에 클램프를 고정한 후 받침판에 팔의 상완부위를 얹고 지지해서 사용 가격수준: 20만원 내외 제안 배치단위: 필수보조기기(지역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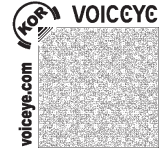
V. 독서보조기기 추천

- 도서관 규모 및 예산 등의 제반 운영 여건에 따라서 비치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의 유형은 다를 수 있다.
- 지역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 별로 배치해야 할 독서보조기기를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는 필수보조기기로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으로 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독서보조기기를 의미한다.
- 지역대표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는 공동활용 보조기기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해당 기기를 구비한 뒤, 해당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들과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독서보조기기를 의미한다.

1 지역도서관(필수보조기기) : 16종

[표 6-10] 지역도서관 필수보조기기 목록

장애유형	품목	주요제품	제품 개요
지체·뇌병변 (조작, 입력 등 손과 팔 기능 지원)	특수 마우스	조이스틱 마우스	마우스를 쥐고 정교하게 이동시키는 손 기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10만원~100만원 내외
	입력보조 장치	키보드 입력보조기기	손가락 기능의 제약으로 키보드를 타자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입력보조기기 10만원 이내
	필기구 홀더	필기구 홀더	손 기능의 제약으로 필기구를 쥐고 쓰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입력보조기기 10만원 내외
	원고홀더	원고홀더	이용자의 자세, 시선의 각도 등에 맞춰 책을 고정시키고 볼 수 있도록 돕는 원고 고정 장치(책상 위에 놓는 북 스탠드도 가능) 5만원~30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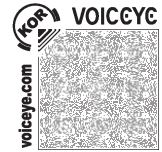


지체·뇌병변 (휠체어 접근 지원)	휠체어	수동휠체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이동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며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 대응으로 이동의 수단을 제공 30만원~90만원 내외
	휠체어 작업 테이블	높낮이, 경사도조절책상	일반 이용자에 비해 약간 높은 책상 높이가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책상 40만원~300만원 내외
	모니터 이동보조기	모니터 이동보조기	자세에 따라 모니터를 상하좌우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보조기기 10만원~20만원 내외
	팔받침대	팔받침대	상지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자세 유지 등이 어려운 장애인이 팔을 지지하여 안정적으로 타이핑, 마우스, 필기 작업을 수행 20만원 내외
시각장애 (전맹) 시각장애 (전맹)	음성독서기	데이지 플레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콘텐츠인 데이지(DAISY) 파일을 다운로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 50만원~90만원 내외
	화면낭독 S/W	스크린리더 S/W	전맹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40만원~100만원 내외
시각장애 (저시력)	독서 확대기	휴대용 독서확대기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 하여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작은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 확대 기기 70만원~150만원 내외
		탁상용 독서확대기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 하여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큰 모니터로 구성된 영상 확대 기기 150만원~300만원 내외
		이동용 독서확대기	저시력 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확대, 색상 변환하여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영상 확대 기기 300만원~400만원 내외
	화면확대 S/W	화면확대 S/W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컴퓨터 화면의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화면상에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50만원 내외
청각언어장애 (농인)	신호장치	신호, 경보장치	빛의 신호와 진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확인해야 하는 소리를 청각장애인이 인지하도록 함 30만원~70만원 내외
청각언어장애 (난청)	소리증폭 장치	(공용보청) 음성증폭장치	공공장소에서 난청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장치 50만원 내외

2 지역대표도서관(공동활용보조기기) : 13종

[표 6-11] 지역대표도서관 공동활용보조기기 목록

장애유형	품목	주요제품	제품 개요
지체· 뇌병변 (조작, 입력 등 손과 팔 기능 지원)	특수마우스	트랙볼 마우스	마우스나 조이스틱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밀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10만원~100만원 내외
	특수 키보드 특수 키보드	확대키보드	정교한 입력동작이 어려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 버튼의 크기와 간격 등을 크게 만든 키보드 40만원~90만원 내외
		미니키보드	손의 운동 능력이 제한된 근육장애인 등 마비성 장애인이 적은 범위와 힘의 손동작만으로 키보드를 입력하도록 작은 크기와 가벼운 터치로 입력되는 키보드 10만원 내외
	터치스크린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손의 운동 능력, 시지각 협응, 인지기능의 부족 등으로 마우스의 조작과 커서의 이동을 연계시키기 어려운 지체, 뇌병변, 지적 장애인을 위한 터치식 입력 기능이 있는 모니터 가격수준: 70만원 내외
	스위치	스위치	컴퓨터의 클릭, 또는 의사소통기기 등 전자 기기의 조작 스위치를 외부로 연장해서 기능적 신체부위에 가까이 위치시키고 작동시키도록 돕는 스위치 5만원~30만원 내외
시각장애 (전맹)	점자정보 장치 점자정보 장치 점자정보 장치	점자출력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함께 사용하여 전자 문서파일을 가변형 점자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장치 150만원~300만원 내외
		점자정보 단말기	가변형 점자 디스플레이로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인용 휴대용 컴퓨터 500~600만원 내외
		점자라벨기	장소, 물건 등의 이름을 점자로 정보 제공 할 수 있는 출력장치로 도서 표지나 계단 핸드레일 등에 부착 가능 80만원~130만원 내외
	문자인식 S/W및H/W 문자인식 S/W및H/W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책, 출력물 등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OCR)시켜 주는 S/W와 스캐너, 카메라와 음성낭독S/W를 통합한 장치 80만원~400만원 내외
		바코드리더기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책, 출력물 등을 전용리더기로 인식시켜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시켜 주는 장치 80만원~100만원 내외



청각언어장애 (난청)	소리증폭 장치	강의, 강연 청취기	무선 송수신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송신부가 수집한 음성정보(강의, 회의 등의 소리 또는 전자기기의 음성출력부와 연결된 신호)를 수신장치가 증폭시켜서 전달 70만원~100만원 내외
	골도보청 장치	골도헤드셋	청신경이 손상되지 않은 고막 손상의 청각장애인이 뼈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용 10만원~80만원 내외
청각언어장애 (언어)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용 애플리케이션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중증의 지체장애 등)이 화면상의 어휘를 선택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로 태블릿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 0원~100만원 내외

3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공동활용 불필요) : 1종

[표 6-12]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목록

장애유형	품목	주요제품	제품 개요
시각장애 (전맹)	점자정보 장치	점자프린터	컴퓨터, 점역S/W와 함께 사용하여 전자 문서 파일을 점자 용지 위에 타공하여 출력 300만원~6,000만원 내외

Ⅵ. 독서보조기기 지원 방법

1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1) 지원계획

- 신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 주최: 시·도 및 교육청

－ 주관 : 관할지역 공공도서관

• 지원규모 : 연간 총 200백만 원 / 20여 개관

※ 1개관 당 3백만 원에서 10백만 원 또는 15백만 원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추진

• 지원사업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조성과 장애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비·확충 지원

예) 시각장애인용 : 휴대용·이동용·탁상용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화면낭독 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등 / 지체장애인용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높낮이조절책상 등 / 청각장애인용 : 공공이용보청기, 무선음성증폭기 등

※ 경상보조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지원비, 소모품 등은 제외

• 선정평가기준

－ 장애인이용자 수, 장애인서비스 운영 실적 및 계획 유무, 장애인서비스 담당직원 지정여부, 장애인자료실 설치 유무 등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기여도 및 향후 계획 고려

－ 지원조건인 지방비 50% 확보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장애인서비스 운영지원 담보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고려

－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실효성 및 구체성, 예산활용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 전반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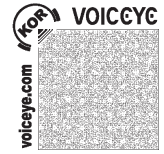
－ 지자체 규모, 재정여건 및 기타 지역안배 등

(2) 추진체계

• 기관별 수행역할

[표 6-13]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기관별 수행역할 정의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광역시·도 및 교육청	관할 지역 도서관
역할	· 사업계획 수립·통보 ·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서접수·심사·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교부 · 현장컨설팅 · 사업관리·점검 · 정산확정·통보	· 관할 지역 도서관 대상 사업계획 통보 · 사업신청서 취합·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 사업추진 (독서보조기기 선정 및 구입)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그림 6-1]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추진절차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 사업소개

-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한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사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중 상시)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활용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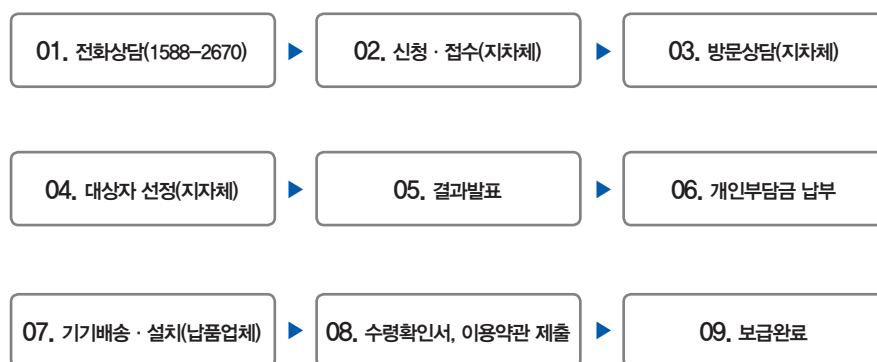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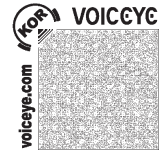
–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 무상수리기간 이 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2) 보급절차



[그림 6-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절차



(3) 보급품목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 디스플레이,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소프트웨어, 점자라벨기,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모니터이동보조기, 독서보조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골도음향기기,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등 68종

3 기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표 6-14] 국내 보조기기 지원 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장애인 시각, 청각장애는 등급무관,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등급) (+근육병증 등 포함)		18개 품목 지체, 뇌병변, 심장 - 욕창 예방용 방석, 외상용 욕창예 방 보조기구 지체, 뇌병변 - 자세보조용구(의사의 진단 필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 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 기, 목욕의자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 대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청각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 장애 등)	기초생활 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의지 보조기 : 팔/다리/골반 등 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전동스쿠터용 전지, 지팡이,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 78개 품목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요양보험 제도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인 자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식,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국민건강 보험공단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상단의 표 내용 참고)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품목 192종 전액지원	근로복지공단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보훈처 보훈의료과)	전산군경, 공산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상지의지-어깨관절, 팔, 손의지 등 하지의지-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지 등 기타-전자익수, 목발, 인공후드, 독서확대기 등 269종 전액지원	보훈상담센터
보조공학 기기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직업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사업주	사업주(단체의 장)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고용 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품목 : 정보접근-점자프린터, 독서확대기 등 , 작업기구-테이블, 특수작업의자 등, 의사소통- 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등, 사무보조-음성메모기, 수화기홀더 등 161종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학생 지원사업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시·도 지역 및 기관 마다 대상이 상이	유·초·중·고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주로 기본교육, 치료와 연계한 교육과정, 전공과, 직업교육, 치료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통학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지원, 교재교구 확충 등 담당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 운영,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 학습·평가지원, 생활지원, 진로지원, 장학지원, 교수자에 대한 지원 등 담당	특수교육 보조공학 지원시스템



201

I. 도서관에서의 웹 접근성

- 201 1. 웹 접근성 개념
- 203 2. 웹 접근성 원칙
- 207 3. 웹 접근성 적용
- 211 4. 스마트폰 앱(app) 접근성

214

II. 유니버설 디자인

- 214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및 배경
- 215 2.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7장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제7장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I. 도서관에서의 웹 접근성

1 웹 접근성 개념

(1) 개념

- 웹 접근성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장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비단 장애를 가진 이용자뿐만 아니라 웹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웹을 인식하고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접근성’이라고 한다.
- 다음은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법과 조직에서 정의하는 웹 접근성의 개념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2조(용어정의)

1. “정보 접근”이란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W3C Introduction to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인식, 이해, 탐색하고 웹과 상호 작용하고 웹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웹 접근성은 노화로 인해 능력이 변화하는 노인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 Wikipedia –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접근할 때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포괄적인 일들을 의미한다. 웹 사이트가 정확하게 디자인되고, 개발되고, 편집되었다면 모든 이용자들이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2) 배경

- 이러한 웹 접근성의 개념은 국내에서 관련 법 조항이 생성되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문화예술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은 2010년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은 2013년 4월 11일 이후부터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래는 웹 접근성에 대한 관련법과 조항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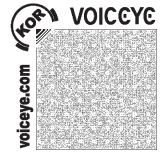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 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



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 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웹 접근성 원칙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표준의 체제는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항목(requirement)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은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견고성(robust)이 있다.

(1) 인식의 용이성

-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7-1] 인식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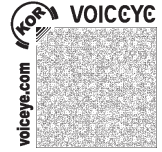
지침(3개)	검사항목(7개)
대체 텍스트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한국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준수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②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③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한국수어)을 제공해야 한다.
- ④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

-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7-2] 운용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지침 (4개)	검사항목 (9개)
입력장치 접근성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명료성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원칙을 운용의 용이성 준수를 위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④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 ⑥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⑦ 새 창(팝업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

-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7-3]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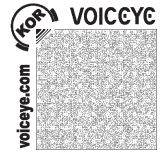
지침 (4개)	검사항목 (6개)
가독성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입력 도움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은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 ②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 ④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4) 견고성

- 견고성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여,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2가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7-4] 견고성에 대한 지침과 검사항목

지침 (2개)	검사항목 (2개)
문법 준수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에서 견고성은 ‘기술적 진보성’이라고 불리며, 관련하여 2개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①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 스크립트만으로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3 웹 접근성 적용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장에서는 웹 페이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단계적인 계획 수립, 제작, 평가 등-을 정리하여 안내한다(류영일, 하성필, 김혜일, 성영한, 박수만 2013).

(1) 웹 접근성 개선 계획

-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의미하며,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 한계, 예산 부족인 경우 단계적 개선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시기와 개선 대상을 기록한다.
- 실제 세워진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의 문제나 기술적 한계 등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소명’의 효과가 있다.

(2) 현황 분석

-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각종 콘텐츠, 솔루션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할 때 이처럼 웹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 웹사이트 : 웹사이트를 목록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특히 페이지 수와 일일 방문자 수의 정보는 추후 전체 개선 계획을 세울 때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콘텐츠 : 전자문서나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포함하여 콘텐츠 현황을 분석한다. 콘텐츠의 유형 종류와 수량,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 솔루션 : 웹사이트 내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솔루션 적용 현황을 분석한다.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와 유지보수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웹 접근성이 지원되는지 여부 등을 정리한다.

(3) 우선순위 분석

-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떤 수준이고, 어떤 유형이며,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시급한 것인지, 개선하는 데 어려운 정도 등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 우선순위 분석의 3가지 기준
 - 중요도 : 비즈니스적인 가치,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의 중요도 평가(고객)
 - 시급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하여 진정 위험측면을 고려하여 시급도 평가(컨설턴트)
 - 난이도 : 콘텐츠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개선 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난이도 평가(컨설턴트)

(4) 실행 계획 수립

- 아래와 같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 1) 월별/연도별 개선 로드맵 수립 : 다양한 계획과 발주 단위 설정, 순차적인 방안, 자체적 운영 방안 조직 순으로 로드맵을 설정한다.



- 2) 사이트별 개선 로드맵 수립 : 웹사이트, 별도의 콘텐츠, 솔루션 등의 단계적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3) 단계별 개선 로드맵 수립 : 예산이나 인력의 수준, 개선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발주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 4) 사이트, 웹 콘텐츠, 솔루션의 웹 접근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 전문가를 직원 중에서 양성하거나 그룹이나 팀에서 웹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웹 접근성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중 일부를 전문가로 양성하고 기술/관리적 권한/책임 부여
 - ② 웹 표준과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지보수계약서 변경
 - ③ 정기적인 웹 접근성 유지 관리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한 형태로 전사적인 운영체제 개선
 - ④ 외부 고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전략 수립
 - ⑤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 관리 주기 체계 수립

(5) 사용성을 포함하는 적용 기준 설정

-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사용성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 국내 사용성 기준으로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Web Content Usability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있다.

(6) 웹 접근성 평가

- 웹 접근성 평가는 크게 자동 평가와 수동 평가로 나뉜다. 자동 평가는 검사 도구에 의해 자동으로 확인되는 평가인 반면 수동 평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수동 평가는 또 다시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로 나뉜다. 전문가 평가는 웹 접근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을 테스트해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이며, 사용자 평가는 실제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이 직접 웹 콘텐츠를 이용해 보고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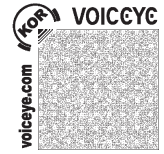
[표 7-5] 웹 접근성 평가의 종류와 구성

종류	평가형태	검사내용	사용도구
자동평가	사전평가	일부항목 자동 검색	웹 접근성 자가진단 서비스(http://accessibility.kr/nia/check.php), N-WAX
수동평가	전문가 평가	22개 검사항목 수동 검색	Open-wax, WAT, 브라우저 개발자도구 등
	사용자 평가	장애유형별 과업 검사	화면낭독기(센스리더, 죠스) 화면확대기 등

- 자동 평가 도구는 현재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전 평가나 기초 평가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역에 대한 검증관리, 대형 사이트에서 초벌 수준 평가를 원할 때 사용한다.
- 수동, 전문가 평가는 웹 접근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검사항목을 직접 평가한다.
- 수동, 사용자 평가는 웹 접근성의 대상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다양한 장애 유형의 사용자가 평가할 사이트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과업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달성하는지를 바탕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 : 이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과업 성공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웹와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등 총 3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그림 7-1] 웹 접근성 품질인증



4 스마트폰 앱(app) 접근성

-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2011년 발행되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접근성 준수사항^(표 6-6 참조)과 접근성 권고사항^(표 6-7 참조)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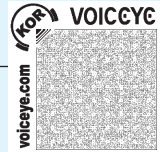
[표 7-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종류	내용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막, 한국수어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한국수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표 7-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권고사항

종류	내 용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서의 ‘모바일 기기’는 1)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2)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3) 운영체제를 갖는 전자책 기기를 일컫는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접근성 진단’을 명문화하였다.
- 구글의 안드로이드 환경과 애플의 iOS 환경에서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 1.0」^(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행되어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평가를 지원한다.



·우수사례 : 해밀도서관 - 음성도서 앱 서비스 (2015)

‘스마트폰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음성도서를 재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도서관에서 자체제작한 음성도서 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밀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NFC기능을 추가 개발하였고,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15. 『2015년도 제8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p.107-108.



[그림 7-2] 해밀도서관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1



[그림 7-3] 해밀도서관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2



[그림 7-4] 해밀도서관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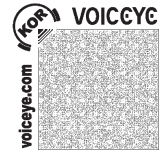
[그림 7-5] 해밀도서관
음성도서 앱 서비스 모바일 화면 4

Ⅱ. 유니버설 디자인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및 배경

(1) 개념 및 배경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 이용자가 가진 개별적 특수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이 법은 1997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공원과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은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 안내표시 기준,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규칙은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① 유니버설 디자인의 4원리와 7원칙

-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능 지원성, 수용가능성, 접근성, 안전성이라는 4가지 디자인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표 7-8] 유니버설 디자인의 4원리

4원리	내 용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장치(물리적, 심리적, 사용성 등)가 마련되어 있되, 정확한 기능 구현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수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신체적, 문화적 등)와 관계없이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며, 거부감, 위화감 등이 없이 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요 주창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이 수립되었다.
- 원칙 1 :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 디자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구매가치가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시 : 연령, 성, 언어 등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 방법을 제공하라. 가능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하라.
 - ▶ 어떤 사용자든 차별하지 않도록 하라.
 - ▶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 모든 사용자들에게 마음이 끌리도록 디자인하라.
- 원칙 2 : 사용상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용법은 각자 고를 수 있게)
 - 디자인은 광범위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 예시: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도 기능에 문제없는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 ▶ 원손·오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라.
- ▶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하라.
- ▶ 사용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라.

• 원칙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법은 누구라도 알기 쉽게)

– 디자인의 사용은 사용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 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예시: 단순하고 쉽게 사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
- ▶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 디자인하라.
- ▶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 하라.
- ▶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
- ▶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 중이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하라.

• 원칙 4: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ble information, 사용자가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게)

–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주어야 한다.

– 예시: 사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드(그림, 언어, 촉감 등)를 사용하라.
- ▶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하라.
- ▶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 ▶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즉, 지시하거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쉽게 하라).
- ▶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을 제공하라.

• 원칙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사고나 위험 가능성이 적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 고려하지 않았거나 우연히 한 행동에 의한 역효과와 위험을 최소화 한다.

– 예시: 사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대부분 이미 사용된 요소, 접근 가능한 것으로 하되,



-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고, 분리시키고, 막아 놓을 것)
- ▶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라.
- ▶ 안전성이 실패할 것(fail-safe)을 대비하라.
- ▶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

• **원칙 6 :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하지 않고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 디자인은 피로를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기능을 구현하는데 신체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 ▶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reasonable operating forces)을 사용하라.
 - ▶ 되풀이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 ▶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 **원칙 7 :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가 확보될 수 있게)

-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기동성(mobility)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닿고,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이즈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예시: 충분히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반영된 디자인
- 가이드라인
 - ▶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 있는 사용자나 서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
 - ▶ 모든 물건이 앉아 있는 사용자나 서 있는 사용자들 전부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
 - ▶ 손이나 손잡이의 크기에서 변동(variations)을 고려하라.
 - ▶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라.
 - ▶ 모든 사용자들에게 마음이 끌리도록 디자인하라.

② **공공도서관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3원칙**

- 공공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이들이 자신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이용자 중심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표 7-9]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3원칙 (문화체육관광부 2014)

3원칙	내 용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출입구, 내부시설, 위생시설, 열람실, 자료실, 전시실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에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알기 쉬운 도서관 안내정보	고령자, 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도서관 시설내의 안내사인이나,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인식하는데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유아동반자, 시각장애인, 휠체어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도서관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모차대여, 물품보관 등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3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력 운용

- 224 1. 인력 유형
- 225 2.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 230 3. 인력 교육

236

II. 자원봉사자 활용

- 236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징
- 239 2.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계획
- 241 3. 자원봉사자 모집
- 242 4. 자원봉사자 선발 및 배치
- 243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 245 6. 자원봉사자 지도 및 감독
- 245 7. 자원봉사자 평가 및 관리
- 246 8. 자원봉사자 인정 및 보상
- 249 9. 도서관 자원봉사 서비스 사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8장 인적자원



제8장 인적자원

I.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인력 운용

- 인적자원은 효율적인 장애인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인적자원을 통해 장서, 이용자, 시설 및 환경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할 때 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장애인서비스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인력배치기준은 「도서관법」(법률 제8069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9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서를 채용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담사서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표 8-1]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상 사서인력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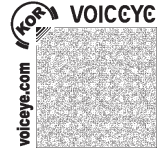
「도서관법」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도서관법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1 인력 유형

-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도서관은 사서, 사회복지사, 점역·교정사를 전부 배치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주로 사서만이 배치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사서와 사회복지사보다 점역·교정사의 배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2급)와 한국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해 배정된 도서관 전담사서의 수는 2명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는 거의 배치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아쉬운 실정이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그에 따른 상이한 요구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장애인 전담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표 8-2]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현황(국립중앙도서관 2015)

구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시각장애인 도서관		청각장애인 복지관	
			응답 기관	평균	응답 기관	평균	응답 기관	평균	응답 기관	평균
정규직	사서직 사서직 사서직	1급	2	1.0	6	1.0	4	1.0	0	0.0
		2급	1	7.0	43	1.2	25	1.6	0	0.0
		준사서	0	0.0	12	1.6	8	1.3	0	0.0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1	1.0	0	0.0	18	1.4	4	11.0
		2급	0	0.0	0	0.0	21	1.9	4	11.5
	점역·교정사 점역·교정사 점역·교정사	1급	1	4.0	0	0.0	5	3.0	0	0.0
		2급	0	0.0	0	0.0	6	2.0	0	0.0
		3급	0	0.0	1	1.0	20	1.4	0	0.0
	한국수어통역사		0	0.0	0	0.0	0	0.0	3	4.7
	청각장애인통역사		0	0.0	0	0.0	0	0.0	2	3.0
	기타 직렬		1	4.0	21	1.3	18	2.3	3	3.0
비정규직			1	16.0	17	1.4	8	3.4	4	5.0



2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1) 사서

■ 법적 자격요건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사서의 법적 자격요건)

■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갖추어야하는 자질(국립중앙도서관 2009; 김혜주 2012)

- ① 장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수어, 점자가독)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②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장서, 인력에 대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이용자 요구분석, 봉사과 프로그램 계획, 관리, 평가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⑤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기 위한 자격증, 학위,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 ⑥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고정관념의 제거로 편견없이 장애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직으로 개발하려는 열정이 필요하다.

■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김혜주 2012)

- 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장애유형 및 연령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대체자료, 보조공학,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체자료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자원봉사/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과의 유연한 협력관계를 성립하고 도서관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 자격요건

- ① 사회복지학 전공자,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사업 경력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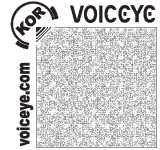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특징

-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2·3급이 있다.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이들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갖춘 뒤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응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후 정신보건시설·보건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으면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2·3급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으면 3급을 취득하게 된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에서 규정된 과목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

- ①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개선점, 보유 자원과 대상자 가족의 지원,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파악한다.
- ② 행정적,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③ 심리 안정, 교육 및 훈련, 정서순화, 대인관계기술 습득, 건강유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기획하고 실시한다.
- ④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상 이용자를 모집한다.



- ⑥ 도서관 직원의 장애 관련 사회복지 교육을 담당한다.
- ⑦ 지역 장애인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해 사업장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을 한다.
- ⑧ 사회복지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환자 이해, 가정내 지원 등에 대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⑨ 장애인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복지 활동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3) 점역·교정사

■ 자격요건

- ①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 점자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사람으로 해당 자격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만을 전문적으로 점역하고 교정한다.
- ② 점정기준: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점자를 점역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점정한다.

■ 점역·교정사의 필요성 및 역할

- ① 올바른 점역과 교정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보다는 청각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많은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 습득을 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영어의 철자를 음성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학의 경우도 수와 식을 말로 풀어 읽어 준다 할지라도 점역한 것만큼의 이해도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각종 논문이나 원서, 음악 악보 등을 듣는 것으로 공부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 ②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정보를 이해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하다.
 - 수학이나 음악 악보 등은 점역사가 점역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며, 한글의 경우도 점역·교정사가 교열을 해 주어야 시각장애인들이 보기 편하게 점역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최근의 정보자료는 표도 많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점역사가 풀어서 점역을 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최근에는 중도 실명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점자를 습득하는 데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점역·교정사들이 점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장애인 이용자 지도에 필요하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대체자료를 제대로 교열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의 대체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자격활용

- ① 자격취득자 우대 : 점역·교정사 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이를 취득한 자는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분야의 채용·승진·전보시 우대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부처소관 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취업 :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단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 우대한다.

(4) 한국수어통역사

■ 자격개요 및 역할

- 정의 :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문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손짓과 표정, 몸짓, 기호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 업무 : 한국수어통역사의 업무는 교육통역, 의료통역, 법률통역, TV 미디어통역, 직업통역, 의식통역 및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등의 일을 수행한다.
- 역할
 -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시설 및 장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통역 역할을 수행한다.
 -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의 한국수어영상도서, 한국수어·자막영상자료 등 대체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격요건

- 한국수어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서 정해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이다.
- 시험과목으로는 1차 필기시험이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한국수어통역의 기초이며 2차 실기시험이 필기통역, 한국수어통역, 음성통역이다.

■ 자격활용

- 자격취득자 우대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이를 취득한 자는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분야의 채용·승진·전보시 우대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부처소관 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활용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은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 등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한국수어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5) 청각장애인통역사

■ 자격개요 및 역할

- 정의 : 청각장애인통역사는 문맹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원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 업무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으로서 통역을 행하는 자의 관련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심사증명을 행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한국수어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역할
 - 청각장애인의 대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 한글을 읽기 힘든 청각장애인의 한글도서 한국수어로 읽어주기, 한국수어영상도서 읽기 지원 등 도서관 대체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격요건

- 공인 평가체제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통역인에 대한 자격 인정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제도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1차 시험일 현재)의 내·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청각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 시험과목으로는 1차 필기시험이 한국어의 이해, 통역의 기초, 일반상식이며 2차 실기시험이 문장통역, 한국수어통역1^(농수어통역), 한국수어통역2^(문장수어통역)이다.

■ 활용

- 활용 :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 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민원^(관공서 이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3 인력 교육

(1) 사서

■ 정규교육

- 국내에서 운영 중인 40여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중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서비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이다.
- 교과목으로 특수서비스론, 독서치료론, 보조공학 이해, 특수매체 제작론, 점자실습, 한국수어 실습, 점자학개론 등의 과목을 개설 중이다. 하지만 주로 시각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폭넓은 교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머지 대학의 경우 주로 ‘정보서비스’ 등 교과목과의 연계형, 기타 교과목 통합형 형태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재교육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는 2010년부터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사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서비스 운영사례, 인력개발, 대체자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0년은 총 14시간^(2일)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과정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소집강의와 사이버강의를 병행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재교육 프로그램 예시

[표 8-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프로그램 회차별 내용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살펴보기	15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2	장애의 개념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보이스아이)활용
3	우리나라의 장애인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관
4	장애유형별 이해	18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기기
5	시각장애	19	농아인에 대한 이해
6	청각 & 언어장애	20	한국수어영상자료 제작 I
7	안면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21	한국수어영상자료 제작 II
8	신장 & 심장장애	22	도서관 내 · 외부 물리적접근
9	간질 & 장루요루장애	23	장애인을 위한 자료 : 장서구축
1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4	서비스와 프로그램
11	정신장애 / 장애인등록& 현황	25	웹 접근성과 서비스
12	장애인복지실태	26	유니버설 디자인
1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7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
14	장애인복지 정책	2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는 도서관 내외의 직무교육, 학회참석, 세미나,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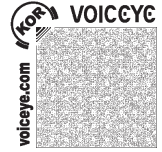
(2) 사회복지사

■ 정규교육

-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600여 곳으로 늘어나기에 이른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한다.
- 2015년 현재 전국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및 유사학과^(사회복지행정과, 가족사회복지, 노인사회복지, 사회복지재활과, 아동복지보육과, 케어사회복지 등)는 대략적으로 280여 곳에 이른다.
- 교과목으로 사회복지개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등의 과목을 개설 중에 있다.

■ 재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보수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직무향상 및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구성한다.
- 사회복지 개념, 원리, 연구, 이론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지식·기술·태도 등으로 구성한다.
- 교육 실시기관은 아래의 7가지 교육영역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기준의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8-4]와 같다.

[표 8-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기준 예시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영역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영역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영역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영역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영역
- 사회복지인권(Social Work Human Rights) 영역
- 특별분야(Special Field) 영역

■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서관 내외의 직무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점역·교정사

■ 정규교육

- 3급의 경우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와 1·2급의 경우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므로 정해진 정규교육 과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재교육

- 점역·교정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인 5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점역·교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점역·교정사에게 공고를 통하여 보수 교육 계획을 알려 이수하도록 한다.
-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관련 공고는 장애인 관련 신문이나 홈페이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망 등 3곳 이상에 공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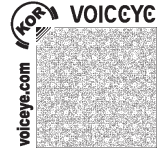
■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역·교정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서관 내외의 직무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 점역교정사가 제공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4) 한국수어통역사

■ 정규교육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므로 정



해진 정규교육 과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재교육

- 한국수어통역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인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및 외부교육기관(시도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최소한 30시간 이상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통역사 보수교육 관련 공고는 농아인 관련 신문이나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국가공인 한국수어통역사 시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고 있다.

■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통역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서관 내외의 직무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 한국수어통역사가 제공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시도 농아인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청각장애인통역사

■ 정규교육

- 만 19세 이상인 청각장애인 내·외국인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므로 정해진 정규교육 과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재교육

- 청각장애인통역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인 5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중앙회 15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5년에 20시간(중앙회 15시간 이상)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및 외부교육기관(시도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통역사 보수교육 관련 공고는 농아인 관련 신문이나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인정시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고 있다.

■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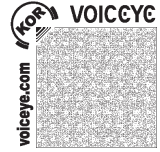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각장애인통역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서관 내 외의 직무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제공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시도 농아인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II. 자원봉사자 활용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징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의 필요성(국립중앙도서관 2009)

- ① 개인적 측면에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업무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낭독봉사, 점역·교정, 녹음자료 제작, 정보검색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인적자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③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원봉사자 집단이나 은퇴한 전문가 그룹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업무를 개발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서비스를 홍보하고 도서관 이미지 개선의 협조자가 될 수 있다.
- ⑤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개별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 ⑥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아만족감을 얻고, 지역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 자원봉사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 ⑦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의 특성(문화체육관광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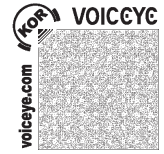
- ①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실현성의 특징을 가진다.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타인을 위해 또는 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 ②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자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이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하며, 이웃이라는 연대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 ③ 자원봉사활동은 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봉사활동이라는 비대가성의 특징을 가진다. 즉,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보람과 만족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 그 자체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관리차원에서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④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는 이

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성이란 각 개인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통성을 가졌다고 의식하고 집단에 소속감을 느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숙의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⑥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으로 공익성을 들 수 있다. 공익성이란 자원봉사 활동이 특정 개인, 직장, 단체 혹은 정당의 이익이나 목적을 초월하여 이웃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번영을 위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자발성에 바탕을 둔 행위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복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의 영리나 어느 특정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권을 지지하는 목적 하에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⑧ 민주성이란 원하는 누구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발휘되도록 하며,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공동 목표를 이루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 ⑨ 자원봉사활동은 개척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지속성은 자원봉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로 꾸준히 실천되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의 복된 삶을 누리는 시민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자적 사명의식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 ⑩ 조직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성과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의 지속성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재원을 확보하며,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활용기관과 수혜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수적이다.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의 4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유형과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5] 장애유형과 자원봉사 활동분야(국립중앙도서관 2009)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도서관서비스 종류	자원봉사 활동 분야
시각장애 (시각장애)	물리적서비스	방문대출, 우편대출, 택배서비스, 이동보조 서비스 등
	자료적서비스	워드입력, 점역, 교정, 녹음, 대면낭독, 정보검색지원, 보조기기 이용지원 등
청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료적서비스	동영상 자막제작, 한국수어대면낭독, 정보검색 지원 등
	의사소통서비스	한국수어통역
지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등)	자료적서비스	방문대출, 우편대출, 택배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이동보조 서비스 등
	의사소통서비스	대필, 의사소통지원 등
지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물리적서비스	방문대출, 우편대출, 택배서비스, 이동보조 서비스 등
	의사소통서비스	대필, 의사소통 지원 등

2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계획

(1) 기획 및 역할 분담

-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기획과 역할 분담이다. 이것은 막연한 생각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 도서관 또는 지역사회 의 준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사전에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 경험, ② 자원봉사자 유치 및 활용에 대한 태도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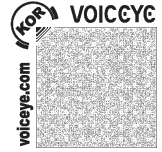
- 목표는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쉽게 표현하고, 매년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매 분기마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3) 프로그램 기획

- 자원봉사 활용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도출된 목적 및 목표, 주요 업무의 실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획을 실시한다.
- 기획은 현재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산, 장소, 자원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홍보방안을 고려하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용의 합리성, 목적, 사명감 등을 기관 정책과 절차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4) 행정처리

-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실무 담당 결정 및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 전 직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따른 경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할 교통비나 식비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완성 일자와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과업을 명시하되,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별로 측정, 관찰, 달성 가능한 업무를 설정한다.
- 이를 위해서는 업무에 따른 역할 배정, 업무명세서^(job description), 업무일지^(record-keeping system) 및 각종 문서 양식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자원봉사 응모 신청서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경, 취미, 특기,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유무, 자원봉사 동기 그 밖에 자원봉사 시간, 횟수, 도서관과 연락처 등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자원봉사자 선정을 위한 면접과정에서 신청자들의 특성과 능력 비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의 모집에서는 모집내용의 홍보가 주된 활동이다. 홍보를 위해서는 우선 홍보원칙을 세워야하며, 홍보내용을 작성하고, 모집 홍보활동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1) 홍보원칙 수립

- 홍보원칙을 세울 때는 모집의 목적과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 홍보내용 작성

- 홍보내용 작성 시에는 자원봉사자의 업무를 우선 분장하고, 홍보시기부터 공지한다.
-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공지 사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 자원봉사자의 자격 조건, 교육 내용,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교통비 및 식비 제공, 행사 초대, 무료 강좌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3) 모집 홍보활동

-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는 자원봉사자의 업무, 자격요건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모집 방법은 지역사회 모든 계층, 연령,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며, 도서관 홈페이지, 지역 방송, 지역 신문, 홍보물(플래카드, 전단지 등), 운영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한다.

- 홍보 전략을 세울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과 보상 방안 또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표 8-6]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방법 예시

- 홍보는 지역 내 배포되는 주요 신문들, 지역사회 신문들에 게재
- 간단한 광고지와 포스터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의 게시판에 부착
- 지역신문에 뉴스로 기사화하여 게재
- 지역케이블 TV의 삽입광고 활용
- 직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기관과 사회기관에서 홍보
- 이미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구두로 광고
- SNS를 통한 모집 광고

4 자원봉사자 선발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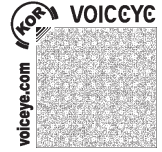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배치활동에서는 면접, 심사, 배치활동이 수행된다.

(1) 면접

- 면접양식을 준비하고 지원자에게 가능한 활동, 책임,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의무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면접자가 선호하는 업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술, 재능, 흥미에 관한 정보 파악한다.
- 장기적 책임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업무의 경우 견습기간의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면접 후 배치까지 시간은 짧은 것이 좋다.

(2) 심사

- 선발 및 배치활동 시 자원봉사자를 직원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요구, 의욕 정도에 따라 본인이 헌신적, 도전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적절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3) 배치

- 만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다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장기적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 견습의 필요성을 공지하고 견습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요구보다는 자원봉사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특수하고 독특한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에 배정한다.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 선발된 자원봉사자가 적절한 업무에 배치되면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훈련활동에는 오리엔테이션, 직무 교육, 업무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한 훈련 등이 있다.

(1)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고 자원봉사자가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 선임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기여에 관한 주제를 반드시 다루고 실제 활동 시 겪게 되는 경험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공유 내용은 문서화를 통한 공식화 과정을 하여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지침서로 활용하는 것도 체계적 자원 활용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무교육

- 직무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학습과정이며,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 직무교육 또한 직원과 봉사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양자 모두를 동시에 교육·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상호간 팀워크와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지도·감독을 통한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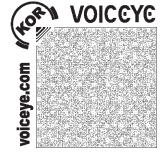
- 지도·감독을 통한 훈련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기능으로 도서관에서 경험과 지위가 있는 직원이 자원봉사자 업무수행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지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도·감독을 통한 훈련에는 동기부여와 의사소통의 개념도 포함된다.

(4)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지침

-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는 다음 [표 8-7]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표 8-7]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지침

- 도서관과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봉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행해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은 조직 구조, 프로그램, 실천 내용, 정책, 목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조직의 위치 등에 대한 개념적인 개관과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은 자원봉사자에게 성장과 도전, 보람, 참여, 발달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의 구체적인 절차, 서비스, 책임,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의 방법은 워크숍, 세미나, 현장훈련, 강의, 회합, 모집, 면접, 강습회 그리고 지역사회 훈련, 자원 등의 활용을 포함한다.
- 교육 및 훈련은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프로그램 또는 도서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 지도 및 감독

(1) 개념

- 지도·감독은 직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의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동기부여 및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지도와 감독의 역할을 부여 받은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지도·감독

- 첫째, 업무에 관해서는 완벽한 지시를 하고 어떤 질문에도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 둘째, 도서관이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셋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인정과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
- 넷째, 자원봉사자의 욕구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3) 방법 및 도구

- 지도·감독을 실시함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는 코칭, 인정, 조언, 발전의 기회제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이다.
-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 및 도구를 통하여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원봉사자 평가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평가는 지도·감독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동기화의 요인으로서 자원봉사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1) 평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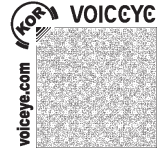
- 평가에는 먼저, 비공식적 평가와 공식적 평가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지도·감독에 기본으로 작용한다.
-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종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와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기술 및 업무진행사항의 평가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2) 평가의 기준 및 행동지침

- 첫째, 자원봉사 프로그램(volunteer program) 평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수행, 즉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이때의 평가는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그들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된다.
- 둘째,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 기술 및 업무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기술과 진행의 기준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 이때의 평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잠재력, 요구, 만족감 그리고 도서관과 이용자서비스에 대한 공헌 등을 세부지표로 삼아 봉사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8 자원봉사자 인정 및 보상

- 자원봉사에서 인정과 보상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 추상적 그리고 구체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자원봉사자는 경제적 보상이 배제된 환경에서 명시적으로는 보상이나 인정은 기대하지 않지만, 인정·보상은 동기부여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자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봉사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인정·보상의 요소

-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따른 인정·보상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표 8-8]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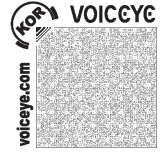
- 특정한 기술(skill)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 특정한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
- 미래의 고용 준비를 위한 업무 훈련의 기회
- 가능한 자신의 경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 개인이 특히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
- 기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
- 대인관계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
- 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교환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
- 사회적 개입기회 제공(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 충족)
-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여는 욕구 충족
-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감사를 받는 경험(지역사회 봉사상 추천)
- 공식적 행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연말 자원봉사자 만찬 또는 파티에서의 감사장 전달)
- 어떤 표식이나 자격증을 받는 기회(장기 자원봉사자 명단에 기록 및 게재)
- 뉴스레터, 신문 또는 다른 대중매체에 이름이나 관련기사가 오르는 것

(2) 인정·보상의 방법

- 인정·보상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무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얻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은 다음의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표 8-9]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의 방법

- 비공식적 일상적인 칭찬방법으로 적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자원봉사자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편함을 설치해 주는 것
-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는 근무 일정이 없어서 결근했다가 출근했을 시에는 그 동안의 안부와 기관이 아쉬워했다는 말을 전하는 것
-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나 상황들을 반드시 전달하는 것
- 자원봉사자들을 직원회의, 직원 훈련 프로그램 및 사교행사에 참여시키는 것
- 자원봉사자들을 점심 또는 커피 모임에 동반해서 참여하는 것
-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새로운 자원봉사자 훈련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
- 자원봉사자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
-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능력의 영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
- 자원봉사자가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했을 때 상환해 주는 것
- 자원봉사자의 생일에 카드를 보내거나 기관 내에서 생일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하는 것
- 자원봉사자의 직위 및 업무와 관련된 훈련과정 참여 비용을 제공 하는 것
- 직원과 같이 승진과 같이 장기 자원봉사자에게 역할 갱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9 도서관 자원봉사 서비스 사례

[표 8-1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자원봉사 사례

서비스 명칭	주체	내용	출처
전자점자도서 (원문파일) 제작	한밭도서관	전자점자도서 제작은 학습 자료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인 도서 원문 파일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제공 서비스 영역으로 장애인서비스 관련 도서관에서 대부분 수행중인 업무이다.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부행정망에 자원봉사활동 안내를 게시하였고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자원한 봉사자들은 내부행정망을 통해 작업방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였고 작업 후 완성 파일을 메일로 도서관측에 전송한 후 원문파일 교정 작업까지 참여하였으며, 마감 후 자원봉사실적이 인정되었다.	2012년도 제5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우수상. 49-52.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 프로그램	화도진도서관	화도진도서관의 '소리빛 사랑회' 봉사자들은 십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낭독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수년간의 낭독봉사자교육과 낭독 경험, 스토리텔링 봉사활동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드리고 동요를 같이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2012년도 제5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장려상. 62-63.
대면 낭독 프로그램	부산시립 시민도서관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정보 누리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었고 혼자 책 읽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대면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이상인 일반인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동질감을 조성하고 소통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전 교육을 받았는데, 장애인의 기본 특성에서부터 대면 낭독의 실제까지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사는 인근 사회복지관의 장애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초청했으며, 자원봉사 신청서에 기재한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원봉사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도 제6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장려상. 90-94.
찾아가는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 운영	고성도서관	고성도서관은 도서관 내 웃음 테라피 강좌 수강생들로 구성된 '웃음천사' 동아리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용하여 '찾아가는 웰빙 기체조 & 웃음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시 환원됨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도 제7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우수상. 58-61.

253

I. 도서관과의 협력

- 253 1. 국립장애인도서관
- 256 2. 장애인도서관
- 258 3. 공공도서관
- 260 4. 도서관 전문단체

261

II.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 261 1. 장애인단체
- 265 2. 장애인복지관
- 267 3. 특수학교

269

III. 협력 프로그램 유형

- 269 1.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 271 2. 자료제작 및 통합검색 지원
- 273 3. 서비스 지원
- 275 4. 도서관-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사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9장 대외협력



제9장 대외협력

I. 도서관과의 협력

-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발, 정보자원 확대, 시설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많은 제도적 과제 등을 남겨두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고 장애인들의 독서욕구가 다방면으로 표출되면서, 공공도서관들도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협력체계가 모색되고 있으며, 그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 2006년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독서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주목받게 되면서 2007년 5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개소된 이래, 2012년 국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발전 및 확장을 담고 있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1) 주요 업무

- 도서관법상 부여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②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③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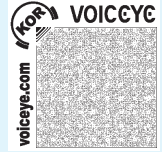
- ④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⑥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 ⑦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⑧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⑨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⑩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2)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대인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등)과 청각장애인^(한국수어영상자료 및 자막영상자료 등)을 대상으로 학업, 직무, 자기계발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받아 다양한 매체의 대체자료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 그 대체자료 제작의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을 위한 일반도서 및 박사학위논문
 - ② 악보, 교본, 음악이론서, 음악교과용도서 등 악보가 포함된 저작물
 - ③ 학습 및 교양관련 영상물
- 그 대체자료 제작이 신청 가능한 대체자료 매체는 다음과 같다.
 - ① 시각장애인: 대인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등
 - ② 청각장애인: 한국수어영상도서자료 및 자막영상자료 등

(3) 책나래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을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무료 책 배달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거주지와 가까운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 포함)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다.



- 회원 가입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자료 신청·제공 받을 수도 있다.

[표 9-1] 책나래서비스 소개

■ 사업 목적

-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도서관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구분	지원대상	증명서
등록장애인	• (1-6급) 시각 • (1-5급) 청각, 지체, 신장, 심장, 뇌병변, 간, 뇌전증, 안면, 언어, 자폐성, 장루·요루, 정신, 지적, 호흡기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1-5급)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증 • 지원대상자확인원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1-5등급)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 지원 내용 : 자료 대출·반납에 따른 왕복 우체국 택배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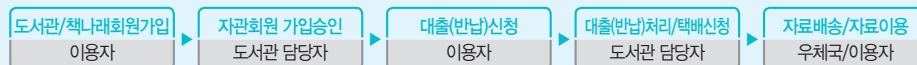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정산 처리함)

- 대상자료 : 도서관에서 관외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도서관법 제2조)로써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 녹음물) 및 일반도서, 비도서 등(*제공도서관의 규정에 따름)
- 대출권수 및 기간 : 제공도서관의 대출규정에 따름

■ 기관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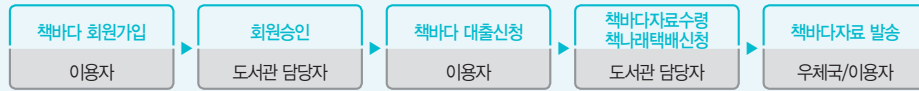
- 책나래 홈페이지 접속 (<http://cn.nl.go.kr/>) ➡ 책나래 업무 ➡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으로 제출

■ 서비스 절차



■ 책바다 서비스 연계 업무절차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책바다 서비스 연계 제공



(4)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소개

- 드림(DREAM : Direct Rapid Easy Accessible Material Service)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빠르고 쉽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 서비스이다.
- 드림은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들이 보유한 장애인 대체자료 목록을 수집하여, 보다 빠르게 대체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장애인 이용자가 쉽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정보서비스를 홈페이지(<http://dream.nl.go.kr/>)에서 제공한다.

2 장애인도서관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

구분	내용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제작	–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대체자료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 위주의 장서개발정책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용 자료수집과 매체변환을 강화해야 한다. – 개발대상에는 인쇄자료, 시청각 자료,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와 디지털 녹음자료, 전자자료, 대활자 및 촉각자료, 음성파일, 디지털 점자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체자료의 정리 및 DB 구축	– 도서관이 대체자료를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운영의 핵심메뉴로 삼을 경우에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DB를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 다만 개별도서관이 제작 또는 수집한 대체자료를 공유하려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DB에 통합검색 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직접서비스의 제공과 지원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메뉴는 직접서비스이다. - 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 또는 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요청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상호대차서비스, 우편택배서비스, 방문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강화와 다양화	- 도서관 협력망을 통하여 제공할 평생학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된 가치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이해와 같은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활용능력, 노동기회 확대와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서비스용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 도서관이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수집하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제작된 대체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전국 협력망의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 그러나 국내에서 장애인용 정보접근 보조기기의 개발과 및 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주도하고 있다. - 장애인서비스용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대체자료의 제작 및 공동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제작을 위해서는 비용, 시간, 시설 투자와 제작방법의 경험 등이 필요하며,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의 점자도서관 등 대규모 장애인도서관에서 군소 장애인도서관들과 협약하여 자체 제작 대체자료를 보급한다.
- 시각장애인전문도서관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정적 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정보교환, 도서기증, 기타업무의 협력사항들을 긴밀하게 진행한다.

구분	내용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 내 점자도서관	대구, 울산, 경북, 수원 등 지방에 있는 7~8개소의 장애인도서관들과 약정을 맺어 자체 제작하는 신간도서들을 10~20종씩 월별로 일정하게 동시에 지방 점자도서관에 보급
	고품질의 음성도서를 장애인도서관에 지속적으로 보급
	경남점자정보도서관과 음성정보 서비스(ARS, Automatic Response System)를 공유
한국점자도서관	군소 장애인도서관에게 점자도서 기증사업 추진

3 공공도서관

(1) 기관 상호대출

- 먼저, 도서관 자료이용에 있어서 상호간 기관회원 지위를 부여한다.
- 둘째,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관간 자료 대출은 협약 공공도서관 관장의 명의로 일괄 취합하여 상호 대출 신청
 - ② 기관간 도서관 실무자들은 상호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고, 협조 기관에서 '도서관이용(회원)증'을 발급 이용
 - ③ 장애인도서관은 협약 공공도서관의 점자도서 관련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 회원의 신상정보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
 - ④ 협약 공공도서관들은 실적을 공유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
- 기관회원이 대출한 자료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과 변상의 의무는 이용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표 9-2]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출 협력사례

경남점자정보도서관

■ 사업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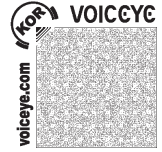
- 경남점자정보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2013년 11월 경남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던 점자도서 266권을 장기대출형식으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 위탁 대출을 약정하면서 시작되었다.

■ 협약 체결

- 이때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도서의 점역, 녹음기한을 확보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마산합포도서관, 김해의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과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 이행

-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의 김해시 이용자 명단을 공유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무상지원하며, 상호간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용 콘텐츠를 장기대출 혹은 인쇄 복사형태로 제공해주기로 협약을 맺고, 이후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 연계 프로그램 진행

-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영역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다.
- 비장애인 교육대상자들이 장애인의 독서형태 및 문화프로그램 향유 형태 등을 간접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된다.
-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문화프로그램: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 장애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장애성인 지원 프로그램
 - ② 장애인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방문 독서코칭 '책친구' 사업
 - ③ 장애학생의 도서관 체험 및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표 9-3]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 협력사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사업 연혁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과 고덕평생학습관의 협력으로 『시각장애인과 일반 통합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 사업 목적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참여로 진행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통합교육을 통한 상호간의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사업 진행 -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서와 강사에게 시각장애인 에티켓과 강의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와 정보를 교환하고, 독서치료 시각장애인용 교재는 점자도서관에서 녹음자료와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회원에게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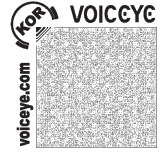
4 도서관 전문단체

(1) 한국도서관협회

-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산하에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 공의 활성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 및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대해서 한국도서관협회에 서 수행중인 각종 자체사업 또는 용역사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2)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시각장애인도서관들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각장 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도서관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1986년 창립되어 2013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위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 전국 40여 개의 회원기관을 둔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창립 이후 30여 년간 세 미나 및 간담회 개최, 전국점자도서관 종합목록 발행, 소장자료 9만 여권 종합목록 구축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 점자의 날 기념식 및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 점자규격과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시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활 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 등에 대해서 협력한다.



II.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1 장애인단체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개설

-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격상시키고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 현황

- 전국에 17개 지부, 187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15개소, 복지시설 13개소, 맹학교 13개소, 복지관 15개소 등 56개의 회원단체와 연계하고 있다.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있으며, 산하 시설로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장애인방송접근센터,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곰두리체육센터, 학습지원센터, 서울점자도서관, 그룹홈 4개소, 인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 기능 및 역할

-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인증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을 점검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장애인방송접근센터에서는 화면해설방송물보급사업, 영화관람지원사업을 통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방송 등 각종 영상물 콘텐츠에 화면해설을 삽입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영상물에 대한 화면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다.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중도실명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발굴하여 점자, 보행, 컴퓨터, 일상생활기술 등의 재활훈련과 안마, 침 등과 같은 직업훈련 등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으로 1990년도부터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2012년부터는 서울시립곰두리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점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점자도서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기타 학습지원센터, 그룹홈, 인쇄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협력방안

-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인증**: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자도서관의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인증에 관해서 협력한다.
- **화면해설영상물 보급**: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방송 등 각종 화면해설영상물 콘텐츠를 수서하여 서비스하는데 협력한다.
-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 활용 지침 마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올바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조기구 활용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시설 및 보조기구 운영에 관해서 협력한다.
- **점자자료 인쇄 및 보급**: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서적, 전문서적, 직업재활서적 등의 점자자료를 점역하여 제작하여 보급하는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 **시각장애인서비스 대상 독서프로그램 실시**: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협회 산하 관련 단체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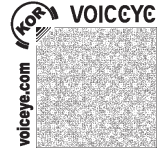
(2) 한국농아인협회

• 개설

- 우리나라 농아인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농아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1948년에 설립된 대한농아협회가 1980년에 재편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 현황

- 전국 16개 시도협회 및 49개 시·군지부를 두고 있으며, 1959년 농아인의 교육과 복지 및 권익 옹호를 위한 범세계적 대회를 제창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농아인연맹(WFD, World Federation of the Deaf)에 가입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7년 5월에는 세계수화통역사협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스페인에서 열린 제15회 세계농아인연맹 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산하기구로는 한국농아인청년회·한국농아인노인회·한국농아인부녀회·기우회·한국농아악극단·농미회 등이 있으며, 각 시도협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모임이 활동 중이다. 전국 16개 시도협회에 부설기관으로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회에는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별도의 기구로 한국농아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



• 기능 및 역할

- 주요 사업으로는 농아인복지정책의 연구와 건의, 한글자막방송관련 연구 및 모니터활동과 자막수신기 보급, 한국영화 및 영상물에 한글자막을 삽입하여 보급하는 영상사업, 일반 상담 및 취업체를 발굴하여 알선해주는 상담지도사업, 표준수어 및 교재 연구, 한국수어교육사업, 한국수어통역자격인정시험실시, 한국수어통역사를 관리하고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농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청인에게는 농아인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하여 계간『열린소리』를 비롯하여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홍보사업, 각종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등이 있으며 복지행사사업으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전국농아인수화경연대회(제17회), 전국농아인바둑대회(제18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제19회), 전국농아인대회(제4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농아인과 건청인의 교량구실을 하는 한국수어를 보급하기 위하여 일반 중·고등학교 특별활동반과 대학 한국수어서클에 한국수어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정부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무원 한국수어교육, 농아인을 위한 운전면허교육,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을 16개 시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 사업의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정보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정보지원, 방송접근을 위한 자막지원센터설치 촉구,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 완전한 공적 한국수어통역서비스의 확보, 교육 및 직업재활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과 시행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협력방안

- **청각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실시**: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협회 산하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수어강사의 확충**: 각종 도서관의 청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국수어강사 확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수어영상도서 보급**: 문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어영상도서를 제작·보급하는 활동과 연계하여 도서관에서 수어영상도서를 수서하여 서비스하는데 협력한다.

(3)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개설

-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교육, 지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일반의 이해와 협조를 촉진하여 지적장애인의 발생 예방에 공헌하며,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1968년에 설립된 대한정신박약인복지협회가 2007년 재편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 현황

- 전국에 26개소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5개 시·도 협회 및 8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7월 4일을 '지적장애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 1969년 5월 20일에는 국제정신박약연맹에 가입하였고, 1983년 6월부터 1986년 9월에 걸쳐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여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1986년 12월 12일에는 정신지체인복지관을 개설하였다. 1995년 11월 11일에는 아시아정신지체인복지대회를 개최하였다.

• 기능 및 역할

- 주요 사업으로 정신지체인 권익옹호 사업, 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를 통한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 정신지체인 애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 전국지적장애인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지적장애인합창단이 1991년에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2년 5월부터는 지적장애인 부모대학이 운영되어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지적발달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복지관·특수학교 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개선,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위탁운영, 고용 및 취업알선 시행 건의, 생활편의정책 시행 건의, 대국민 홍보, 관련도서 출판, 문화·예술·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지적발달장애인 교사와 보육사 등의 종사자 재교육, 부모대학 운영, 장애 조기발견 및 훈련,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보호작업장 운영, 각종 관련 세미나 및 체육대회 개최, 지역복지 서비스 확대 및 후원 결연, 무료 순회진료 서비스, 재가(在家) 지도, 그룹홈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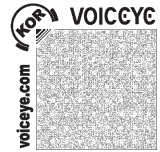
• 협력방안

- **지적발달장애인 정보제공 지침 마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도서관의 지적발달장애인을 정보의 제공 지침 마련에 관해서 협력한다.
- **지적발달장애인서비스 대상 독서프로그램 실시**: 도서관에서 지적발달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협회 산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개설

-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활 및 자립 도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한국지체장애자연합회가 1993년 재편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 현황

- 조직은 1국(복지사업국), 3실(기획조정실, 조직행정실,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1센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2~31개의 지회가 있다. 장애인인권위원회와 장애인복지개발연구원을 별도로 운영한다.
- 1990년 1월 3일 장애인 취업상담실을 설치하고 1991년 10월 1일에는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다. 1998년 3월 21일 산하에 한국장애인의회정치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5월 9일 부설기구로 장애인보장구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 기능 및 역할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결연·계몽 및 조사연구,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사업과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 등 각 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을 위한 활동과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장애인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지체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사업,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문화·여가·체육활성화 및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및 각종 예술인 발굴양성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협력방안

- **장애인 이용시설 및 보조기구 활용 지침 마련**: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및 보조기구의 활용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지체장애인을 시설 및 보조기구 운영에 관해서 협력한다.
- **지체장애인서비스 대상 독서프로그램 실시**: 도서관에서 지체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협회 산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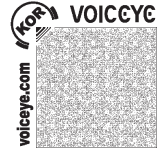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관과 도서관의 협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공간을 통해 강좌나 공연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이 이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장애보호자들이 편한 상태로 만나 교류하고 교육받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애보호자들의 도서관 이용 문턱도 훨씬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한다.

(1)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장애인복지관과 도서관 사서직원이 협의하고 도서관은 세부계획과 지역 내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한다.
-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등 참여대상을 결정하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선정한다.
-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단체와 연결하여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강연회 섭외 시 장애를 가진 강사를 초청하거나, 장애나 차별이 주제가 되는 영화상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내용 중 장애체험코너 진행 등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간다.

(2)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동 진행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장애인 이용자 참여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파견강사 등 비장애인 참여대상은 도서관에서 각각 선정하고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이용자가 책을 친근하게 여기고 독서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성이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승계한다.
- 향후 장애 관련 자료를 다양한 장르와 형태별로 나누고 목록을 개발하여 복지관에 추천 도서로 제공하고, 도서관이 소장한 대체자료를 복지관 장애인 이용자에게 홍보하는 등 도서관의 기본인 자료제공을 통한 서비스 확장을 꾀한다.



(3) 도서관 시설 대관 및 장애인사업장 물품 구입

- 장애부모 강좌, 복지관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 복지관 주관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도서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협력한다.
- 도서관은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고 협력한다.
- 사서직원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이용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현실 및 과제, 장애인서비스 관련한 도서관 차원의 협력부분 등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고민할 수 있다.

3 특수학교

(1)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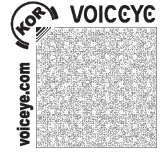
-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이다.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열거하고 있다.

(2) 현황

- 2015년 기준 전국 특수학교는 155개교가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의무 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이 중 정신지체 특수학교가 94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교가 각각 18개교이며, 시각장애 학교가 12개교, 정서장애 학교가 8개교이다.
- 최근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 정도는 중도 및 중복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연혁 및 변화

- 우리나라 특수학교는 19세기 말 이후로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된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특수학교는 1946년 4월 대구에서 설립된 대구맹아학원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구 영화학교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구 광명학교의 전신이다.
- 특수학교는 초창기부터 대부분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150개교 중 국립 5개교, 공립 55개교, 사립이 90개교로서 사립 의존도가 높다.
- 장애인서비스 전반에서 사회통합 및 통합교육 강조 추세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 수의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 및 전개 시기에 보여주었던 특수학교 중심의 특수교육 발전 추진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 통합교육의 지속적 강조로 이미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 숫자에 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 숫자가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4) 협력방안

-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이 책을 친근하게 여기고 올바른 독서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책읽기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장애학생의 도서관 체험 교육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특수학교의 학생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체험과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나 사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체자료를 도서관이 없는 특수학교에 기관 대출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향후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관련 자료를 장르와 형태별로 나누고 목록을 개발하여 특수학교에 추천도서로 제공하는 등 도서관 대체자료 활용을 통한 독서지도 및 상담 서비스 확장을 꾀한다.

Ⅲ. 협력 프로그램 유형

1 독서 · 문화프로그램 지원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평생학습 기회 및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지원 및 협력활동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지원·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유효한 장치로 생각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공통된 가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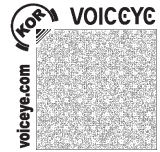
-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공통된 가치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컴퓨터 활용, 미디어 활용과 같은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활용교육,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와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역량 개발,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사회 교육, 정신적 상처 및 트라우마 등을 치유하기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2)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정보검색서비스, 원격대출서비스, 온라인참고서비스, 자료입수방법, 디지털 녹음도서(DAISY)의 이해 등 다양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활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내용은 기본적인 웹서핑에서 고급 웹 탐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심신장애 경감 프로그램 지원

- 심신장애의 경감과 보완 또는 극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지원·제공되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애아동 프로그램, 자주적인 성인생활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고용·주거·재정·여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성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독서서비스나 음악감상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처리 영화상영, 정신장애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을 개설·제공해야 한다.

(4) 자기결정권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위험을 차단할 프로그램과 자기결정 및 자기주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제공이 필요하다.
- 성공적 학습, 직업적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법률상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지원·제공되어야 한다.

(5) 비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 자원봉사자에게 장애인 관련 특수지식과 능력을 교육시키는 장애인 도우미 프로그램, 수어 및 점자제작, 책 읽어주기, 독서요법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2 자료제작 및 통합검색 지원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대체자료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서관이 대체자료를 제작한 후에는 자료목록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용 대체자료 DB가 통합검색 되도록 해야 한다.

(1) 개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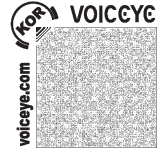
- 장애인 대체자료의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도서관에서의 비장애인 위주의 장서 개발정책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용 대체자료 수집과 매체변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대체자료 개발 대상에는 인쇄자료, 시청각 자료, 점자도서, 디지털 녹음자료, 전자자료, 대활자 및 촉각자료, 음성파일, 디지털 점자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대체자료 제작

- 일선 도서관은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제약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장애인 이용 대상자료 중에서 일선 도서관이 직접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비율은 극히 낮다.
 - ① 도서관이 장애인의 이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해야 할 대체자료의 포맷은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 ② 또한 대체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제작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특정 포맷의 경우에는 일반 자료의 제작 예산에 비해 약 4~6배에 달하기도 한다.
 - ③ 대체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통상 일반도서의 6배에 달하는 저장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이용자 서비스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선 도서관은 대체본을 소장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공공도서관 등 일선 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시설이 미비한 현실을 감안하여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업체 및 점자도서관을 활용하여 대체포맷을 수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3) 대체자료 통합DB 구축 및 검색 지원

- 도서관이 수집한 대체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자료를 정리하고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일선 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협력 중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정보검색을 위한 별도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어 대체포맷을 제작·수집하여 대체자료종합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개별도서관이 제작 또는 수집한 특수자료를 공유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체자료종합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 단위도서관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한 대체자료에 한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주관 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업로드하며, 이들을 수합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역시 자체 수집하거나 제작한 자료를 정리하여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 모든 장애인은 대체자료종합목록DB에 접근하여 검색·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 대체자료의 경우 이용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비전자 대체자료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상호대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3 서비스 지원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도서관서비스의 직접 제공 및 지원이다.
- 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 또는 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요청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상호대차서비스, 우편택배서비스, 방문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1) 운영 모형

- 장애인의 도서관 대체자료 검색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등으로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의 공공도서관 OPAC을 검색할 때 지역종합목록DB 및 대체자료종합목록DB가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이 서지정보를 검색하여 정보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도서관은 다층 구조의 협력망에서 소장처를 확인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형 대체자료일 때는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의뢰하고 우편대출, 택배서비스, 자택방문, 온라인 파일송부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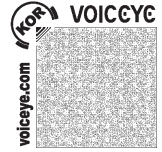
-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소속된 모든 도서관, 즉 어떤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처리한다.



[그림 9-1]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 구조도

(2) 직접 서비스의 확대

- 장애인의 직접적인 도서관 방문 접근 및 자료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거리 처리 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인 국가대체자료공유 시스템 등 상호대차시스템을 활용해야만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서비스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도서관 이용 카드의 대리발급,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봉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관 운영 등의 온라인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3) 아웃리치서비스

- 특히 자택보호 장애인을 위한 택배서비스, 가정방문 대면낭독서비스,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아웃리치서비스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전략적 방안으로 접근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도서관-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사례

[표 9-4] 도서관-장애인 유관기관 협력 사례

서비스명칭	주체	대상	내용
피치마켓 독서 및 삽화가 프로그램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	발달장애인	- 피치마켓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및 활동을 위한 단체로, 2016년에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 아카데미 및 삽화가 과정 추진함 - 서대문구립도서관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모객 및 장소를 담당하였고 피치마켓은 모객과 함께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함 - 피치마켓의 발달장애인 독서 아카데미는 1기에 5주간 활동하며 '쉽게 읽는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총 2회를 진행함. 진행 방법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1 한 조로 구성하여 총 15조가 참여하였는데, 본 행사에서 읽은 책은 '오 헨리 이야기'로 이 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엮은 책이며 삽화도 발달장애인이 직접 그린 것이었음 - 이 독서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2016년 9월에는 서대문구 북페스티벌인 『책으로 축제』에서 '100인의 느린 학습자의 책 읽기'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이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독서 멘토가 함께 '오 헨리 단편선' 중 '마지막 잎새'를 읽고 독서 퀴즈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됨 -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과 피치마켓이 협력하여 개설한 발달장애인 삽화가 과정 9명에게 책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이 그림을 『서대문 책으로 축제』포스터 및 리플릿에 활용하였음. -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삽화가에게 그림을 외주 제작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서관은 포스터에 발달장애인의 그림을 활용함으로써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279

-
- 279 1. 전국 장애인도서관 목록
 - 282 2. 전국 장애인복지관 목록
 - 295 3. 장애인 단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부록



1 전국 장애인도서관 목록(2016.12.31. 기준)

(1) 시각장애인도서관(41개관)

지역	도서관명	개설 연도	운영주체	주소	전화번호
서울 (14)	강북점자도서관	1992	(사회복지법인) 한빛맹아원	서울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02-985-3664
	강서점자도서관	2005	(사)한국복지목회 협의회	서울 강서구 공향대로 8길 77-24	02-2661-2278
	마포점자도서관	1992	(사)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24-12	02-338-0180
	산소망녹음도서관	1990	산소망중도실명자 선교회	서울 광진구 광장로7길 13	02-455-3050
	새날도서관	1992	한국장애인복지 정책연구회	서울 광진구 자양로50길 84	02-454-7646
	서울점자도서관	1992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35	02-935-9696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1992	사회복지법인 대한맹인복지회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가길 20	02-923-4555
	실로암점자도서관	2000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530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2011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26-10	02-393-4568
	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	2000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	서울 송파구 마천로 61길 26	02-422-6070
	하상점자도서관	1982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1983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645	02-440-5200
	한국점자도서관	1969	(사)장애인과사랑 나눔본부	서울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02-3426-7411
	한국학생점자도서관	2010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31-1	02-738-0891
부산 (1)	부산점자도서관	1983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부산지부	부산 사상구 덕상로72번길 9	051-302-9010
대구 (2)	대구점자도서관	1996	(사)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4	053-256-8877
	대구달구벌점자도서관	2009	대구시각장애인 복지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번지	053-526-9988

지역	도서관명	개실 연도	운영주체	주소	전화번호
인천 (1)	인천송암점자도서관	1999	(사)인천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032-876-3504
광주 (1)	광주점자도서관	1999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 남구 천변좌로382번길 6	062-672-9535
대전 (1)	대전점자도서관	1999	(사)대전점자도서관	대전 중구 서문로 10	042-252-0055
울산 (1)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2006	(사)울산광역시시각 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 남구 중앙로 151	052-256-3308
강원 (2)	강원점자도서관	2002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강원도지부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1층	033-262-1920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 점자도서관	2005	(사)강원도장애인 재활협회	강원 춘천시 중앙로 67-1 춘천시민복지회관 4층	033-253-8513
경기 (5)	경기시각장애인도서관	2003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경기도지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35	031-213-7722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도서관	2003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031-465-0950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2006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경기도지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4	031-871-0445
	부천시해밀도서관	2008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4	032-650-4600
	한마음점자도서관	2011	사회복지 법인분당우리복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27	031-725-9570
충북 (1)	(충북시각장애인도서관) 무지개도서관	1997	(사)충북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층	043-237-5544
충남 (1)	충남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2002	(사)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02	041-578-4181
전북 (3)	군산점자독음도서관	1997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군산지회	전북 군산시 거석길 9	063-445-6361
	전북점자도서관	2001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학산길 26-3	063-288-0046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2000	(사)헬렌켈러복지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26-24	063-288-9083
전남 (2)	전남시각장애인도서관	2005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전남지부	전남 목포시 입암로4번길 21	061-283-6969
	전남점자도서관	2001	(사)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전남지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061-284-6333
경북 (2)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1981	학교법인 영광학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053-850-5481
	경북점자도서관	1999	(사)경북시각장애인 연합회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0	054-277-2998



지역	도서관명	개실 연도	운영주체	주소	전화번호
경남 (2)	경남점자정보도서관	2003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경남 마산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	055-241-0023
	소리작은도서관	2010	소리작은 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4번길 7	055-314-3657
제주 (2)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004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 제주시 아복로 433	064-710-1200
	제주도문화정보접자 도서관	2000	(사)제주도문화정보 접자도서관	제주 제주시 동광로 31	064-723-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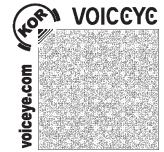
(2) 청각장애인복지관(도서관서비스 제공, 6개관)

지역	도서관명	개실 연도	운영주체	주소	전화번호
서울 (3)	삼성소리샘복지관	2001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서울 동작구 양녕로30길	02-824-1414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2007	지자체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02-3156-6699
	청음회관	1985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	02-556-3493
대전 (1)	손소리복지관	2015	(사)한국농아인협회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08	042-345-9900
대구 (1)	대구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2003	지자체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053-527-0351
제주 (1)	제주도농아복지관	2005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제주 제주시 우령서로16길 19	064-711-9094

2 전국 장애인복지관 목록(2016.04.01. 기준)

(1)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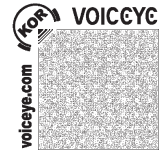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강남구	사복)하상복지회	청음회관	강남구봉은사로50길6	02-556-3493 02-555-4241	1985-06-12
2	강남구	사복)자애종합복지원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02-459-4377	1993-03-10
3	강남구	사복)한국청각 장애인복지회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05	02-445-8006 02-445-7010	2009-01-01
4	강남구	사복)충현복지재단	충현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98길 16	02-2192-0600 02-2192-0696	1995-05-25
5	강남구	사복)하상복지회	성모자애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757길 35(율현동 110)	02-3411-9581 02-3411-9584	2000-12-18
6	강동구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700 02-440-5780	1982-12-17
7	강동구	재)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성분도복지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10	031-799-0300 031-762-7285	1987-07-02
8	강동구	사복)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02-440-5200 02-440-5219	1982-09-09
9	강북구	대한불교조계종사회 복지재단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오현로 189 (번동)	02-989-4214-8 02-989-4219	1998-04-01
10	강서구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02-2662-3491 02-2662-2700	2008-08-28
11	강서구	사복)기쁜우리월드	기쁜우리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0	02-3665-3831 02-3665-3292	1997-07-01
12	강서구	사복)성요한복지회	늘푸른나무복지관	강서구 허준로 5길 37	02-3661-3401 02-3661-3764	1999-12-01
13	관악구	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500 02-887-1120	1998-12-29
14	광진구	사복)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커힐로 93	02-446-1237 02-454-2144	1975-10-31
15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 길 84-35	02-2611-1711-1 02-2615-0212	2000-05-09
16	구로구	재)성프란치스코수녀회	성프란치스 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구로구남부순환로 105라길25-10	02-830-6500 02-830-1544	2002-12-09
17	금천구	사복)상금복지회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17	02-6912-8000 02-6912-8001	2006-11-28
18	노원구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다운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478 (공릉동)	02-3296-2114 02-3296-2113	2003-07-03
19	노원구	사)한국뇌성마비 복지회	서울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 길98 (상계동771)	02-950-0114 02-934-8069	2003-04-13
20	노원구	사복)다운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 길96 (상계동771)	02-932-4411 02-932-4413	1990-12-15
21	노원구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 길92 (상계동771)	02-2092-1712 02-951-4280	1997-11-08
22	노원구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 길73 (상계동771-2)	02-935-6375 02-938-1252	1988-12-31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23	노원구	사복)성민	성민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상계동)	02-931-7970 02-931-7976	2009-11-13
24	동대문구	재)제철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동문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벚꽃로 7길 5	02-2244-3100 02-2244-8833	2009-07-27
25	동작구	사복)SRC	서울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02-829-7100 02-829-7105	1986-12-12
26	동작구	사복)삼성농아원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33	02-840-1503 02-840-1569	1986-12-12
27	동작구	사)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02-824-1414 02-826-5044	2001-04-20
28	마포구	재단)감리회태화 복지재단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02-302-6212 02-302-6215	2002-05-01
29	서대문구	사)한국농아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02-3140-3000 02-3140-3003	1998-10-10
30	서대문구	사복)한국재활재단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 4가길 23	02-3156-6699 02-3156-6667	2007-01-25
31	서초구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 (서초동)	02-2055-0909 02-2055-2727	2009-10-09
32	서초구	사랑의복지재단	사랑의복지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5길 19(서초동)	02-540-6500 02-3482-5867	1997-03-21
33	성동구	재)성모성심수도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06	02-2290-3100 02-2290-3181	1996-01-18
34	성북구	사복)대한맹인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구 동소문로25가길 20 (동선동4가 279-1)	02-923-4555 02-928-6565	2000-12-30
35	성북구	사복)승가원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구 화랑로130(하월곡동)	02-915-9200 02-915-9207	2007-07-11
36	송파구	재)기독교대한감리회	방이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1길 68	02-3432-0477 02-2202-0175	1998-09-11
37	송파구	사복)선한목자재단	서울시각장애인복지과	송파구 삼학사로19길 27(삼전동)	02-422-8108 02-416-4093	1991-05-18
38	송파구	사복)다산복지재단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61길 26	02-431-8881 02-430-6228	2000-01-01
39	양천구	재단)양천사랑 복지재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9	02-2061-2500 02-2061-2525	2004-10-06
40	영등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02-3667-7979 02-3667-0877	2008-03-17
41	용산구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02-707-1970 02-707-1974	2009-09-25
42	은평구	사복)은평천사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02-351-3982 02-351-3987	1994-02-23
43	종로구	재)푸르메재단	종로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02)6395-7070 6395-7080	2012-05-04
44	중구	사복)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중구장애인복지관	서울 중구 퇴계로 460	02-2235-8630 02-2235-1329	2013-03-08
45	중랑구	사복)유린보은동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02-438-2695	1991-12-28

(2) 부산광역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금정구	부산광역시금정구 장애인협회	금정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7	051-523-0100 051-523-0024	2011-01-12
2	기장군	한성복지재단	기장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42-15	051-727-3088 051-727-3090	2006-12-01
3	남구	부산광역시남구 장애인협회	남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11번길 38	051-626-6990 051-626-6992	2007-06-04
4	남구	나사함복지재단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70	051-627-8521 051-623-8521	2009-08-28
5	동구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오늘	동구장애인복지관	망양로 748 (수정동)	051-469-9756 0303-3261-0022	2009-07-01
6	동래구	(사)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협회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	051-522-1650 051-522-1654	2009-01-23
7	부산진구	빛과소금복지재단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	051-808-8190 051-808-8473	2010-05-19
8	북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246 (금곡동)	051-333-3888 051-333-0297	2003-06-02
9	북구	북구장애인협회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45	051-362-7755 051-363-4477	2009-08-11
10	북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길 38 (구포동)	051-338-0017 051-341-1346	1992-12-01
11	사상구	(학)박영학원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 모라로192번 길21 (모라동)	051-302-5533 051-302-5524	2004-10-01
12	사하구	사하구장애인협회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68번길 65	051-262-2461 051-261-1267	2000-12-02
13	연제구	양덕사회문화원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150번길15 (연산동)	051-790-6100 051-868-3518	1993-12-17
14	영도구	학교법인 고려학원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051-403-6060 051-403-6400	2010-11-22



(3) 대구광역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달서구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용산동)	053-527-0350 053-527-0353	2002-08-31
2	달서구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100	053-527-0223 053-527-0229	2002-08-14
3	달서구	사)대구광역시시각 장애인연합회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053-526-9988 053-568-9001	2002-10-01
4	달성군	사)대구지체장애인 협회 달성군지회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053-616-0260 053-616-0263	2006-10-30
5	북구	상록뇌성마비복지회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대구 북구 연암로42길 77	053-382-0960 053-382-0963	2002-10-01
6	수성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 수성구 파동로 51길 26-17	053-763-1011 053-762-0040	1984-08-27

(4)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강화군	강화군 직영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63	032-934-8464 032-934-8082	2014-04-20
2	계양구	노틀담수녀회	노틀담복지관	계양구 계양산로 35번 길12-37	032-542-3711 032-541-7377	1998-02-14
3	남구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인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14 (관교동)	032-426-1382 032-426-1386	2007-08-09
4	남구	사단)인천광역시시각 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032-876-3500 032-876-6633	1999-09-13
5	남동구	인천교구천주교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만수동)	032-472-4004 032-472-4005	1996-08-30
6	부평구	송암복지재단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25 (일신동)	512-9200 512-9864	2003-11-01
7	서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광역시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서구 드림로 284-8	032-569-1240 032-569-1243	2006-02-21
8	연수구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30	032-833-3051 032-833-3053	1994-07-01
9	중구	기아대책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중구 매소홀로 10 (신흥동3가)	032-880-2400 032-891-0533	2008-04-28

(5)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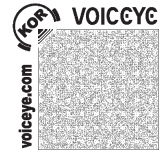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6	062-943-0420 062-943-0728	2003-03-07
2	남구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시각 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6	062-652-2200 062-652-2411	2009-12-01
3	남구	가톨릭광주 사회복지회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33	062-611-1900 062-361-7711	2015-03-06
4	동구	광주광역시동구 행복재단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98번길 7	062-229-9700 062-229-9704	2014-01-17
5	북구	광주복지재단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062-513-0977 062-513-4700	1988-01-01
6	북구	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복지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0번길 38	062-524-7701 062-526-2799	1985-10-25
7	서구	세석밀알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7	062-710-3020 062-710-3024	2011-12-28

(6) 대전광역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대덕구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77	042-637-2259 042-637-8852	2007-12-27
2	동구	밀알	밀알복지관	대전 동구 우암로 48 (삼성동)	042-627-0900 042-627-0950	2004-08-28
3	서구	기독교연합봉사회	행복한우리복지관	대전 서구 계백로 1093-32 (가수원동 840)	042-331-1155 042-331-1154	2013-02-01
4	유성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042-822-3637 042-822-3635	2004-12-17

(7) 울산광역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남구	울산광역시시각 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14번길 3	052-256-5244 052-256-5247	2003-02-01
2	동구	로사리오 카리타스	동구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3-1	052-710-5991 052-710-5990	2014-10-14
3	울주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중평1길 15	052-229-9440 052-229-9479	2009-05-19
4	중구	로사리오 카리타스	울산광역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60	052-242-1778 052-242-1781	2005-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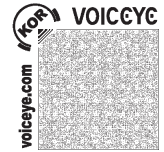
(8) 세종시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세종시	세종충남가톨릭 사회복지회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평안로 11	044-865-3325 044-865-3326	2012-10-31

(9) 경기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가평군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기 65-19	031-581-9785 031-581-9779	2011-12-28
2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031-929-1400 031-929-1429	2004-04-02
3	과천시	푸르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과천시 문원로 40	02-2185-8000 02-3418-3500	2011-05-20
4	광명시	성모성심수도회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 목감로 120	02-2616-3700 02-2616-3368	2000-10-19
5	구리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 이문안로 86-1	031-562-0068 031-562-0078	2000-08-31
6	군포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시 청백리길 18	031-396-3108 031-398-7432	1999-11-30
7	김포시	천주교회 인천교구 유지재단	김포시장애인복지관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	1855-3001 031-996-5013	2013-01-02
8	남양주시	대한성공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홍유릉로273-1	031-592-7150 031-592-8150	2013-03-04
9	동두천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동두천장애인종합복지관	동두천시 상패로 64	031-867-0080 031-867-0081	2006-09-11
10	부천시	인천교구천주교 유지재단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	032-670-1236 032-681-0799	1991-10-23
11	성남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	031-733-3322 031-733-6166	1994-11-07
12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27	031-725-9500 031-728-9510	2011-05-12
13	수원시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 255	031-207-1501 031-207-1504	2006-07-20
14	수원시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031-893-2100 031-893-2179	2014-11-24
15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불미니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7-1	031-431-9114 031-431-9124	2004-04-09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6	안산시	밀알복지재단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031-403-0078 031-405-1092	1999-04-01
17	안산시	동산복지재단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2	031-409-0000 031-409-2200	2013-10-29
18	안양시	성민원	안양시관악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32 (안양동)	031-472-7774 031-8039-4669	1995-05-26
19	안양시	돕는사람들	안양시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안양동)	031-465-0950 031-465-0960	2003-11-05
20	양평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6-1	031-773-9080 031-773-9093	2014-03-28
21	여주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여주시 청심로 105	031-883-2100 031-883-2130	2010-05-03
22	용인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용인시처인가장애인복지관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031-320-4800 031-320-4899	2005-06-17
23	용인시	양지바른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94	031-895-3200 031-895-3203	2005-10-14
24	용인시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0310-270-0200 031-270-0202	2012-02-13
25	의왕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의왕시 오전로 27	031-477-8510 031-477-8511	2011-06-01
26	의정부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160	02-850-5300 02-853-8921	2004-07-22
27	이천시	승가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이천시 남천로 31길	031-637-6720 031-6376725	2009-06-22
28	파주시	주내자육원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33번길 63	031-959-7020 031-959-7022	1998-04-22
29	평택시	에바다복지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447	031-692-2362 031-692-2361	2014-03-18
30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북부장애인복지관	평택시 서정로 295 2층	031-615-3975 031-615-3998	2013-01-11
31	화성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나래울장애인복지관	화성시 여울로 2길 33	031-8015-7300 031-8015-7310	2011-01-11



(10) 강원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강원도	월드비전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춘천시 사우로 27	033-255-2491 033-255-2494	2012-01-13
2	강릉시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강릉시장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68	033-643-1801~4 033-643-1805	2015-07-01
3	속초시	월드비전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분관)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033-636-2491 033-636-2493	2012-01-13
4	원주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 동부순환로 9-8	033-766-5990 033-766-5994	2003-10-01
5	철원군	월드비전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분관)	철원군 서면 외수로 136번길 5	033-458-2493 033-458-2493	2012-01-13
6	춘천시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춘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춘천시 영서로 1925-21	033-262-0035 033-262-6341	2000-06-30
7	태백시	흥이회	태백시장장애인 종합복지관	태백시 금천길 179	033-582-7048 033-582-7047	2003-12-12
8	평창군	월드비전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분관)	평창군 평창읍 중앙로 67	033-333-4993 033-333-4994	2012-01-13
9	홍천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천군장애인 복지관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7	033-435-7031 033-435-7043	2006-11-16
10	횡성군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횡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23	033-345-7341 033-345-7338	2009-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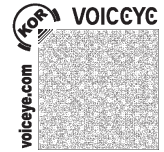
(11) 충청북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괴산군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61	043-832-0862 043-832-0863	2013-04-01
2	단양군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단양군 단양읍 별곡5길 5	043-420-6300 043-420-6301	2007-04-24
3	보은군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	043-544-5446 043-544-5449	2006-04-01
4	영동군	영동군장 애인협의회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17	043-743-1500 043-743-0142	2009-09-04
5	옥천군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9	043-733-2500 043-761-6513	2003-12-05
6	음성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09번길 43-6	043-883-2900 043-883-2913	2005-02-01
7	제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043-652-0900 043-652-0904	1998-10-01
8	증평군	(재)증평복지재단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	043-835-4288 043-838-1292	2011-09-29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9	진천군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	043-534-4455 043-534-4456	2014-04-18
10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 교구사회복지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1	043-275-7411 043-275-7410	2014-12-01
11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회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21번길 60	043-295-2505 043-295-2502	1996-12-09
12	충주시	송덕원	충청북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043-856-1100 043-856-1103	2011-10-14

(12) 충청남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공주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041-856-7071 041-856-0270	1999-03-23
2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다락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0-4433 041-751-6524	2004-08-10
3	당진시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시장장애인복지관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8	041-360-3049 041-354-3202	2012-12-10
4	보령시	보령학사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041-934-7230 041-934-7242	1991-09-16
5	부여군	부여성심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816	041-836-2157 041-836-2160	2000-11-04
6	서산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서산시지회	서산시장장애인복지관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14로 6	041-668-4744 041-668-4944	2001-03-10
7	서천군	대전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서천군 중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	041-950-1265 041-953-0939	2007-09-01
8	아산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충남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12	041-545-7727 041-545-7757	1999-11-27
9	예산군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예산군 추사고택로 496	041-330-9000 041-334-6521	1999-07-23
10	천안시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51	041-551-0420 041-568-0420	2004-12-13
11	천안시	충청남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	041-413-7024 041-413-7099	2010-02-26
12	청양군	보령학사	충청남도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청양분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041-944-1397 041-944-1398	1993-07-10
13	태안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태안군지회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	041-674-7412 041-674-7417	2007-12-10
14	홍성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홍성군지회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041-634-0267 041-634-0268	1999-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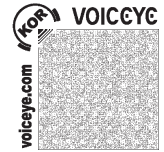


(13) 전라북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북도 군산시 철상안3길 37	063-466-7981 063-466-7983	2000-11-03
2	김제시	시온회	김제시장래인종합복지관	전북 김제시 갈공길 28	063-542-9500 063-542-9505	2007-03-13
3	남원시	한기장복지재단	남원시장래인종합복지관	전북 남원시 이백면 달외안길 87	063-635-1544 063-635-1546	1998-02-18
4	도	동암	전라북도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77	063-222-9999 063-224-4131	1987-08-28
5	무주군	삼동회	무주장애인복지관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	063-322-1252 063-322-1138	2005-12-09
6	부안군	한기장복지재단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063-580-7600 063-580-7601	2006-02-23
7	완주군	사)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22번지	063-261-7801 063-261-7804	2007-04-05
8	익산시	중도원	익산시장래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인북로 21	063-837-7300 063-837-7350	2004-02-24
9	장수군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063-353-8286 063-353-8287	2013-11-05
10	전주시	중도원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0-41	063)229-4114 063)229-0631	2003-03-25
11	정읍시	정읍시 직영	정읍시장래인종합복지관	전북 정읍시 수성1로 58	063-530-0500 063-532-0600	2001-05-03
12	진안군	나누는사람들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1	063-432-8871 063-432-8873	2010-03-16

(14) 전라남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강진군	(사)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37-7	061-433-8861 061-432-9596	2010-08-02
2	고흥군	삼동회	고흥군장애인복지관	고흥읍 신계학림길 41	830-6700 830-6028	2010-09-17
3	광양시	삼동회	광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	061-761-4438 061-761-4437	2005-05-02
4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30	061)783-7605 061)783-7607	2001-11-03
5	담양군	해림복지재단	해림종합복지관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317	380-4548 380-4611	1991-10-29
6	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나주시 내영산1길 67	061-332-4105 061-333-9966	1991-04-01
7	목포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	061-285-2811~4 061-285-2815	2003-07-11
8	목포시	성골롬반복지재단	명도복지관	전남 목포시 산정로 199번길 25	061-279-4879 061-279-4880	1992-06-03
9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무안군 무안읍 공황로 148-18	061-454-4560	2002-12-18
10	보성군	(사북)순천성신원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	852-3091 852-3092	2012-03-02
11	순천시	(사)한국YWCA 연합회후원회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서면 청소년 수련원길 2	061-755-4450 061-755-6639	1999-02-03
12	여수시	은현	여수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여수시 여문2로 124 (문수동)	061)652-5005~6 061)652-5432	2008-08-11
13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번지	061-470-6753 061-470-2583	2005-04-27
14	완도군	사)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30	061-555-5115 061-555-5335	2015-07-01
15	진도군	(사북)임마누엘 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4	061-543-8005 061-543-0328	2007-01-02
16	해남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0	061-536-6311 061-536-6332	1997-10-24



(15) 경상북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경산시	기아대책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산시경청로222길79	053-719-2340 053-719-2339	2008-07-11
2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 유림로5번길 99-11	054-776-7522 054-776-3376	2001-02-01
3	구미시	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미시 공원로 340	054-457-3172 054-457-3177	2000-11-07
4	김천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 환경로 136-6 (대광동)	054-434-2400 054-439-9295	2005-04-19
5	문경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 시청2길 34(모전동)	054-556-0042 054-556-0043	2002-02-01
6	봉화군	안동애명복지촌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4	054-674-3311 054-674-3312	2008-08-01
7	상주시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 만산8길 11 (만산동)	054-534-6933 054-534-6936	1997-11-25
8	안동시	안동애명복지촌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054-858-7283 054-858-7287	1992-04-20
9	안동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동시 옥동1길 21 (옥동)	054-855-7801 054-855-7805	2011-11-21
10	영양군	안동애명복지촌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90	054-683-9501 054-683-9503	2014-09-25
11	영주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054-633-6415-8 054-633-6419	2001-05-24
12	영천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 보목2길 10 (야사동)	054-333-3535 054-333-3536	2004-03-16
13	울릉군	안동애명복지촌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울릉분관	울릉군 울릉읍 저동1길 21-20	054-791-3004 054-791-3007	2014-09-30
14	울진군	지방자치단체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2	054-781-8157 054-781-8158	2015-09-17
15	의성군	안동애명복지촌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의성분관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130	054-833-1442 054-834-1447	2000-04-15
16	청도군	안동애명복지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청도분관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15	054-372-2082 054-372-2084	2008-11-01
17	포항시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 (해도동)	054-282-4079 054-603-0355	1997-05-21
18	포항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포항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 (여남동)	054-231-1117 054-231-1180	2015-05-28
19	포항시	(사)경북시각 장애인연합회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포항시 남구 섬안로175 (대도동)	054-253-5900 054-254-5900	2009-12-03

(16) 경상남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거제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거제시 양정1길 45 (양정동)	055-636-0303 055-636-8992	2010-01-07
2	거창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군살의심터 장애인복지관	거창읍 거안로 1266-1	055945-2018 055-945-2215	2008-06-26
3	고성군	범숙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고성분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길 36	055-674-8266 055-674-8267	2004-07-01
4	김해시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김해시 삼계로 140 (삼계동)	055-314-7114 055-314-7116	2005-12-20
5	남해군	남해복지재단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055-862-0012 055-863-0056	2008-07-30
6	사천시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055-835-2571 055-835-4216	2008-01-02
7	양산시	양산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5	055-367-9655 055-388-3399	2015-03-11
8	진주시	사회복지법인 늘사랑복지재단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진주시 동진로 273	055-763-6677 055-763-6667	2003-08-06
9	창녕군	사)경상남도 장애인협회 창녕군지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055-533-1840	2007-03-28
10	창원시	범숙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7	055-237-6485 055-237-6489	2001-10-01
11	창원시	재단법인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마산장애인복지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 7길 59	055-247-5194 055-247-7004	2003-05-28
12	창원시	천주교마산교구 유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풍호동)	055-540-0400 055-541-0400	2004-06-28
13	통영시	학교법인박영학원	통영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	055-650-9900 055-649-9963	2014-12-05
14	함양군	사회복지법인함양군 복지회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거면강변길25	055-963-8997 055-963-8961	2003-07-02
15	합천군	범숙	경남장애인 종합복지관합천분관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79	055-931-1992 055-931-1993	2001-07-11



(17) 제주특별자치도

일련 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 주소	전화번호 (FAX)	설치신고일
1	제주시	사회복지법인춘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064-702-0295 064-702-0294	1989-11-24
2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2	064-910-9990~2 064-710-9999	2000-02-02
3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삼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 아복로 433 (월명동)	064-710-1200 064-710-1240	2003-10-31
4	제주시	사회복지법인농애원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외도일동)	064-711-9094 064-711-9097	2005-07-28
5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토평동)	064-732-2352 064-732-2355	1999-07-27

3 장애인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이수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405호	02-784-9727
대한안마사협회	이병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38-11	02-584-6363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벨로드롬 1층	02-3434-4500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최한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02-6925-55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7-1 로알 플라자 8층	02-2675-5364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308호	02-739-4804
장애인복지신문	안희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3-2 보라빌딩 3층	02-419-2599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인천 부평구 간석3동 26-3 사회복지회관 708호	032-511-1030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02-461-226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4-2 현대빌딩 3층	02-3437-2081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최경자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방화동 452-5)	02-932-4292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이완수	서울 광진구 위키힐로93(구의동 16-3)	02-455-543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305호	02-6925-1114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재현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22 청원다미소아파트 상가 제업무시설 301호	02-2236-9081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용식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 대륭테크노타운 5차 903-1호	02-853-1884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언항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8층	02-718-1102
한국장루협회	유재희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20-2 제일한의원 2층	02-3675-4771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환	서울 중구 새문안로 32 (충정로 1가 동양빌딩 4층)	02-754-7755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진형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2-4 삼덕빌딩 3층	02-2604-39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02-783-006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02-784-3501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원타워 2차 904호	02-859-828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동익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19 대성빌딩 1층	02-3481-129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서울 마포구 도화2동 삼창빌딩 903호	02-718-9363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13-277 스타키빌딩 3층	02-2678-3131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김광식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579-1 화인상가 203호	02-471-9106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2층	02-457-0427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신일빌딩 2층	02-833-309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상철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90-2 한국제약협회 2층	02-3472-3556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최성중	서울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운2차 705호	02-876-9355
한국재활재단	윤영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11 5층	02-365-5540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김덕래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406호	02-719-0581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원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4층	02-592-5023~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3층	02-796-4280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섭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02-786-8483

편집위원회

강지혜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보일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장)
 민혜경 (하상장애인복지관 문헌정보사업부장)
 신명진 (서울도서관 사서)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차성종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황숙경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사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인 쇄 일 2017년 5월 25일
발 행 일 2017년 5월 25일
발 행 인 박주환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반포동)
Tel 02-3483-8855
Fax 02-590-0656
<http://nlid.nl.go.kr>
ISBN 979-11-5687-372-3 93020 [비매품]

본 매뉴얼은 2016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준 및 매뉴얼 개선」연구(연구책임자: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배경재 교수, 공동연구원: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차성종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지혜 교수)의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